

2022

연구보고서(수시과제) 8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김영택 · 박건표 · 김숙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2 연구보고서(수시과제)-8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저 자 김영택, 박건표, 김숙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 영 택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박 건 표 (본원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 김 숙 영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영택·박건표·김숙영(2022).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직 등에서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부족하였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작업장에서의 위험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건설, 공장 등의 작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에 법 및 제도 보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의 위험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이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적된 작은 위험이 산업재해로 발생할 수 있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생애주기 후반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성별 근로자의 차이점을 찾고 다양한 작업장 환경에서의 위험 노출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남성 근로자와 다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작업장에서의 환경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그 동안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집약적 산업인 서비스 직종의 특징인 소규모 사업장, 열악한 고용조건 및 작업장 환경을 고려하면 서비스 직종 여성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되었고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사업장 확대, 직무분석에 근거한 적정 업무량, 적정인원 배치, 서비스업 여성에 대한 성인지적 위험성 평가 강화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애쓴 연구진과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귀한 자문을 해주신 관계자 및 전문가 분들, 질적분석을 위해 인터뷰에 활발히 참여해 주신 여성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그 동안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연구는 소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됐으나, 실제적인 법 및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요청됨
 - 산업안전 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직 등에서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 안전보건 기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5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근골격계 위험 비율을 살펴보면, 작업장에서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종사자인 경우 여성의 근골격계 위험 비율은 61.6%로 나타난 반면에 서비스직 남성의 근골격계 위험 비율은 55.8%로 나타남. 근골격계 위험뿐만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는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두통/눈/피로, 우울감 발생이 남성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작업장에서 위험의 성별 간 격차 비율이 높은 점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다학제간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 국내 연구는 미흡함
 - 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성별 근로자의 차이점을 찾고 다양한 작업장 환경에서의 위험 노출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함
 -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차이가 임신 및 출산에 인식하여 여성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 연구가 대부분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요한 예방 조직과 교육을 살펴보면, 성인지적인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 근로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주로 남성 근로자의 표준적인 신체를 기준으로 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간과될 가능성이 존재함
 - 성별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성인지적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음
- 이러한 점은 여성 집약적 산업인 서비스 직종의 특징인 소규모 사업장, 열악한 고용 조건 및 환경을 고려하면 서비스직종 여성 근로자의 안전 보건 상황은 심각해 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고찰하고 최근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개선안을 제시함

2.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함
 - III장에서는 여성 집중 직종인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대상(대인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등)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함. 또한 산업재해 후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의 고용상태 및 건강 문제 등을 분석함
 - IV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최근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대상 질적 연구를 수행함
 - 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함

3.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존 문헌을 고찰함
 -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인 최근 6차 자료(2020)를 활용하여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함. 또한 산재보험패널을 2차 코호트 자료 조사(2018)를 활용하여 산업재해 이후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건강 상태 등을 분석함
 -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급식종사자 8명과 콜센터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실시
 - 착수 및 중간 보고회 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의견을 반영함

4. 연구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과 최근 개정안에서는 성별 차이점을 고려하는 내용은 여전히 부재함. 성별 분리 대신 근로자 전체 대상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남성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기준이 아닌 준거 집단인 여성 근로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음(Forastieri, 2010; ILO, 2013; EUOSHA, 2013; EUOSHA, 2018)
- ILO에서 제시하는 성인지적 고려사항을 살펴보았음. 서비스직에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작업장에서의 성인지적 사항은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음
 - 1)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규정 검토 및 수립, 2)현실에서의 젠더 불평 등성을 고려한 OSH 정책 개발, 3)젠더 차이를 고려한 위험관리, 4)젠더 차이를 고려한 OSH 조사 연구 필요, 5)성별 분리 통계에 기초한

OSH 요소 포함, 6)성별로 동등한 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보, 7)OSH를 위한 의사결정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참여권 보장, 8)성인지적 관점에서의 OSH 교육과 훈련, 정보제공 방식 개발, 9)젠더 차이를 고려한 작업보호장비 개발, 10)근로시간 조정 및 일-삶의 균형을 포함하는 10가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함(김영택, 외 2018)

- 서비스직과 같은 여성 집중 산업인 경우 건설 등의 직종인 남성 집중 산업에 비하여 산업안전보건 위험 사항이 적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ILO, 2013: 4)
 - 여성 근로자들의 작업장 위험 사항 및 보건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 수준이 낮고 관련 과학적 연구 조사는 부족하고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가 거의 부재한 것임. 이로 인하여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법 및 제도가 발전되지 못한 원인이 됨

- 최근 논문에 의하면 남성 요리사보다 여성 요리사에게 폐암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Lin 외, 2018)
 - 이 논문은 1984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요리사 대상 추적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통한 나온 결과임
 - 후속 연구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중국 여성 요리사의 유방암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n, 2021). 요리에 사용 되어지는 기름 연기 노출 및 배출 시설(cooking oil fume exposure and fume extractor use)이 중국 여성 비흡연자의 폐암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Lin, 2020) 등의 연구 결과가 존재함
 - 이와 같은 폐암에 이에 대한 국내 조사도 연구가 활성화되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발이 필요함

- ILO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 담당자 대상 성인지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및 책임자, 전문가, 작업장 위험성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만 작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함

-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자 및 전문가들이 성인지적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면 기존의 정책의 문제점 파악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것임

○ 근로환경조사 분석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직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근로 형태의 특성은 아래와 같음

- 타 직종과 달리 60세 이상의 분포가 높음.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200만원 미만의 분포가 58.5%로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임시 근로자 형태의 비율이 28.2%로 타 직종의 여성 임시 근로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사업장 규모가 50명 미만 분포가 87.0%로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환경조사 분석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위험 노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피곤 통증 자세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미용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29.4%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피곤 통증 자세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업무 중 사람 이동 경험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돌봄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9.0%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사람 이동 경험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업무 중 무거운 물건 이동 경험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4.2%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무거운 물건 이동 경험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의 반복 손 팔 동작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63.3%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반복 손 팔 동작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 근로환경조사 분석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직 내 질환 발생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지난 1년 동안 요통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요통 경험 비율이 45.3%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요통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8%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 동안 상지근육통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상지근육통 경험 비율이 50.1%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 동안 하지근육통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혼례/장례/기타 돌봄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하지근육통 경험 비율이 27.8%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 산재보험패널을 2차 코호트 자료 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산재보험 요양종결자 여성 중 단순 노무 종사자를 제외라고 서비스 종사자의 분포가 23.5%로 타 직종 종사자의 분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상해 종류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골절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상해 종류를 살펴보면, 파열/열상이 20.8%, 화상이 11.0%, 요통/근골격계가 4.5%로 나타남

-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안내를 받지 못한 비율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상당 기간'이라고 응답한 성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상당 기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7%로 나타난 반면에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10.9%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통증 느끼는 횟수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일주일에 몇 차례'라고 응답한 비율이 17.5%로 나타난 반면에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14.9%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으로 산재 이후 2018년 현재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성별 서비스직 간 건강 상태 변화가 크게 나타남.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으로 산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면,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 산재 이후 건강회복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아직 건강회복 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아직 회복되지 않은 비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급식종사자 8명과 콜센터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위험요인은 아래와 같음
 -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작업장이 매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 가스, 미끄럼, 화상, 조리흙, 세제, 고열 등 다양한 위험이 곳곳에, 발을 땄 때마다 도사리고 있다고 하였음
 - 학교급식종사자들은 하루에 수백, 수천개의 식판과 식재료를 운반하기 때문에 건설업이나 중공업 못지 않은 무게의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었음. 또한, 물때나 기름때 없이 미관상으로도 청결하게 조리기구를 세척하기 위해 세제를 오남용하고 있었음. 음식 조리하는 열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열사병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였음. 콜센터 근로자들은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한 상담을 하기때문에 근골격계질환과 감정노동, 장시간 상담으로 인한 방광염, 목을 이용한 상담으로 인한 인후염과 성대결절 등을 호소하였음
 -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고강도 압축노동’, ‘전쟁을 치른다’, ‘스스로를 갈아넣는다’, ‘극한 직업’, ‘날아다닌다’ 등의 말로 표현하였음. 콜센터 근로자들도 상담이 길어지다보면 화장실에 제 때 못가 방광염이 생긴다고 하였음

- 질병 및 사고발생경험
 - 근골격계증상은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호소하는 질환임.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중량물 작업이나 반복 작업으로 골병이 든다고 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장시간 컴퓨터작업으로 인한 허리, 목, 어깨, 손목 등 상지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 서비스업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방광염, 인후염과 성대결절,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과 질병을 호소하였음

- 학교급식종사자의 경우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동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하였음
- 안전사고는 사무실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육체노동을 하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많이 호소하였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였음. 안전사고 유형도 미끄러짐, 낙상, 화상, 베임, 끼임 등으로 다양하였음

○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그간 학교급식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고, 현재 작업하는 환경에서 무엇이 건강에 해롭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관리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음. 최근 많이 밝혀지고 있는 폐암도 이전에 어느 누구도 조리과정에서 위험물질이 나온다, 이것이 폐 건강에 안 좋다, 보호장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 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음
- 최근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고용이 각 학교 관할에서 각급 교육청 소속으로 바뀌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어 각 교육청에 보건관리자가 생겨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였음.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가 교육청마다 1~2명이고 그 인력이 각 교육청 소속 수백개의 학교를 관리하니 각급 학교 차원의 세부적인 관리는 어렵다고 하였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콜센터는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보건관리자를 필수로 배치해야 하는 업종이 아님. 이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학교급식종사자나 콜센터 종사자 모두 자신들의 직업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원하였음. 자신들의 업무환경이 얼마나 유해하고 위험한지 연구가 되고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위험하다면 그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음. 현재는 그런 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하였음

- 급식실 종사자들은 규정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작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심해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것임
-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비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를 제기하였음
-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현재의 업무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은 뒷전이고 음식의 맛이나 미관상 청결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였음

○ 개선 방안

- 적정수의 인력 배치: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일인당 적정한 업무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학교 급식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인원은 근로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안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이유라고 하였음. 또한, 결원이 생길 때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음
- 노동자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창구 필요: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된 이후 본인들의 고용조건과 안전보건관련 관리 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였음. 그전에는 자신들의 근무환경 중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렵듯이 짐작은 하였으나 잘 알지 못했고, 요구하지도 못했는데 노조에 가입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하였음
- 작업에 대한 정확한 위험성평가: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음. 본인들 생각에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작업들을, 아주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근로자 건강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한다면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하였음

- 안전장치 강화 및 기구의 자동화: 급식실 여성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장치 강화 및 조리 기구의 자동화를 요구 하였음
- 법적 보호 강화: 콜센터 근로자의 경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이 훨씬 감소하였고, 이번보다 많이 보호받는 느낌이라고 하였음.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업 종사자 보호 규정이 생기며 이런저런 조치들이 취해져 좀 더 보호 받게 된 것 같다고 하였음

5. 정책 개선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사업장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임. 그런데 현재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사업장에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도 일부 업종은 제외됨. 그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를 덜 받는 것임
 - 이렇게 적용 제외되는 사업에는 서비스업과 사무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업무를 ‘덜 위험한 일’이라 여기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 또한 업종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되고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체제 수립 및 안전보건교육 규정에서 제외됨
 - 서비스업,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여성근로자가 많이 취업하는 곳으로 이러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산업안전

보건법 보호 대상 업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성인지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임. 실제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복임, 2020)

○ 직무분석에 근거한 적정 업무량, 적정인원 배치

-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는 적정인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음. 간호사나 보육교사처럼 기준이 있는 직종도 잘 안 지켜지고, 그 기준도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그 업무에 대한 분석 및 한 명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등 그 외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배치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향은 그간 여성근로자가 하는 일, 특히 서비스업 여성근로자가 하는 일을 EU-OSHA(2013)에서 지적한 것처럼 쉽고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일이라고 간주하여 인원이 너무 적게 배치되지 않았는지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정 근로자 수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서비스업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인지적 위험성 평가 강화

-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음(관계부처합동, 202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고 함.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의 초석으로 평가받는 제도이나,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위험성평가는 아직 사업장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 남성 위주 사업장 중심으로 기준이 마련되고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어 서비스업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서비스 업종의 직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하고, 서비스업에서는 같은 직종이라도 성별에 따라 작업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험성평가가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함

연구성과목록 주제분류: 건강

주제어: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 방법 6

II. 국내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7

 1. 국내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9

 2. 국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15

 3. 소결 19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21

 1. 서비스직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현황 23

 가. 분석 자료 23

 나. 분석 결과 25

 2.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산업재해 피해 현황 114

 가. 분석 자료 114

 나. 분석 결과 115

 3. 소결 136

IV. 포커스그룹 인터뷰 139

 1.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141

 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필요성 141

 나. 인터뷰 참여자 142

 다. 인터뷰 내용 143

라. 조사 일정 및 방법	144
2. 결과분석	145
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위험요인	145
나. 질병 및 사고 발생 경험	151
다.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문제점	154
라. 개선 방안	158
3. 소결	161
V. 정책개선 방안	165
1. 정책개선 방안	168
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사업장 확대	169
나. 직무분석에 근거한 적정 업무량, 적정인원 배치	172
다. 서비스업 여성에 대한 성인지적 위험성 평가 강화	173
참고문헌	175
Abstract	179

표 목 차

〈표 II-1〉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안전과 건강규정 13

〈표 II-2〉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국내외 비교 17

〈표 II-3〉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해외 정책사례 19

〈표 III-1〉 서비스직 근로자 종류: 6차 조사(2020) 24

〈표 III-2〉 서비스직 근로자 종류: 판매 서비스직(6차 조사, 2020) 24

〈표 III-3〉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연령 분포(6차 조사, 2020) 25

〈표 III-4〉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교육 수준 분포(6차 조사, 2020) 27

〈표 III-5〉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소득 수준 분포(6차 조사, 2020) 30

〈표 III-6〉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고용 수준 분포(6차 조사, 2020) 32

〈표 III-7〉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6차 조사, 2020) 34

〈표 III-8〉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사업장 규모(6차 조사, 2020) 36

〈표 III-9〉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근속 년수(6차 조사, 2020) 38

〈표 III-10〉 직종별 및 성별 업무가 근로자 건강/안전에 주는 위험 여부
(6차 조사, 2020) 40

〈표 III-11〉 직종별 및 성별 업무가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6차 조사, 2020) 41

〈표 III-12〉 직종별 및 성별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 또는
건강 문제 여부(6차 조사, 2020) 42

〈표 III-13〉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활동 제약(6차 조사, 2020) 43

〈표 III-14〉 질병 또는 건강문제로 일상활동 제약 6개월 이상 지속 여부
(6차 조사, 2020) 44

〈표 III-15〉 질병 또는 건강문제로 일상활동 제약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근무
장소/업무 활동 조정 필요 여부(6차 조사, 2020) 45

〈표 III-16〉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건강 안전 정보제공 정도
(6차 조사, 2020) 46

〈표 III-17〉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수공구 기계 진동 위험 여부
(6차 조사, 2020) 48

〈표 III-18〉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심한 소음 위험 여부(6차 조사, 2020) 51

〈표 III-19〉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고열 위험 여부(6차 조사, 2020) ……	54
〈표 III-20〉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저온 위험 여부(6차 조사, 2020) ……	57
〈표 III-21〉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연기/가루/먼지 흡입 위험여부 (6차 조사, 2020) ……	60
〈표 III-22〉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시너유기용제 흡입 위험 여부 (6차 조사, 2020) ……	63
〈표 III-23〉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화학제품 접촉 위험 여부 (6차 조사, 2020) ……	66
〈표 III-24〉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피곤 통증 자세 노출 여부 (6차 조사, 2020) ……	69
〈표 III-25〉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사람 이동 노출 여부(6차 조사, 2020) …	72
〈표 III-26〉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무거운 물건 이동 노출여부 (6차 조사, 2020) ……	75
〈표 III-27〉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계속 서 있는 자세 노출 여부 (6차 조사, 2020) ……	78
〈표 III-28〉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앉아있는 자세 노출 여부 (6차 조사, 2020) ……	81
〈표 III-29〉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반복 손 팔 동작 노출 여부 (6차 조사, 2020) ……	84
〈표 III-30〉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고객/환자/학생 상대 여부 (6차 조사, 2020) ……	87
〈표 III-31〉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화가 난 고객/환자/학생 상대여부 (6차 조사, 2020) ……	90
〈표 III-32〉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정서적 불안 경험 여부 (6차 조사, 2020) ……	93
〈표 III-33〉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요통(6차 조사, 2020) …	96
〈표 III-34〉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상지근육통 (6차 조사, 2020) ……	98
〈표 III-35〉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하지근육통 (6차 조사, 2020) ……	100

〈표 III-36〉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두통/눈 피로 (6차 조사, 2020)	102
〈표 III-37〉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전신 피로 (6차 조사, 2020)	104
〈표 III-38〉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과 업무상 관련 여부: 요통(6차 조사, 2020)	106
〈표 III-39〉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과 업무상 관련 여부: 상지근육통(6차 조사, 2020)	108
〈표 III-40〉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과 업무상 관련 여부: 하지근육통(6차 조사, 2020)	109
〈표 III-41〉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과 업무상 관련 여부: 두통, 눈 피로(6차 조사, 2020)	111
〈표 III-42〉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과 업무상 관련 여부: 전신 피로(6차 조사, 2020)	113
〈표 III-43〉 성별 및 직종별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2018년	115
〈표 III-44〉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사회인구학적 및 근로환경 특성: 2018년	116
〈표 III-45〉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상해 종류: 2018년 ..	118
〈표 III-46〉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상해 부위: 2018년 ..	119
〈표 III-47〉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등급: 2018년	120
〈표 III-48〉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업재해 유형: 2018년	120
〈표 III-49〉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요양 기간: 2018년 ..	121
〈표 III-50〉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제공 여부: 2018년	122
〈표 III-51〉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항: 2018년	123
〈표 III-52〉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경제활동 유형: 2018년	124

〈표 III-53〉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취업자 업무 적응 정도: 2018년	125
〈표 III-54〉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취업자 업무 적응 장애 요인: 2018년	125
〈표 III-55〉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해사업장 퇴사 이유: 2018년	127
〈표 III-56〉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2018년	128
〈표 III-57〉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통증 느끼는 횟수: 2018년	129
〈표 III-58〉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전 건강 문제: 2018년	130
〈표 III-59〉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전 건강 상태 ...	131
〈표 III-60〉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현재 건강 상태: 2018년	132
〈표 III-61〉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자 만성질환: 2018년	133
〈표 III-62〉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자 대상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134
〈표 III-63〉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자 대상 산재 이후 건강회복 정도: 2018년	135
〈표 IV-1〉 인터뷰 참여자 인적 사항	143
〈표 IV-2〉 FGI 기초질문	144
〈표 IV-3〉 여성 다수 산업에서의 위험요소	146
〈표 V-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제외 법규정	170
〈표 V-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171

그림 목 차

[그림 III-1]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연령 분포(6차 조사, 2020)	27
[그림 III-2]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교육 수준 분포(6차 조사, 2020)	29
[그림 III-3]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소득수준 분포(6차 조사, 2020)	31
[그림 III-4]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고용형태 분포(6차 조사, 2020)	33
[그림 III-5]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근로시간 분포(6차 조사, 2020)	36
[그림 III-6]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사업장 규모 분포(6차 조사, 2020)	38
[그림 III-7]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근속 년수 분포(6차 조사, 2020)	40
[그림 III-8]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요통 (6차 조사, 2020)	97
[그림 III-9]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상지근육통 (6차 조사, 2020)	99
[그림 III-10]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하지근육통 (6차 조사, 2020)	101
[그림 III-11]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두통/눈 피로 (6차 조사, 2020)	103
[그림 III-12]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전신 피로 (6차 조사, 2020)	105
[그림 III-13]	성별 및 직종별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2018년	117
[그림 III-14]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 사항: 2018년	123
[그림 III-15]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경제활동 유형: 2018년	124
[그림 III-16]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취업자 업무 적응 장애 요인: 2018년	126
[그림 III-17]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해사업장 퇴사 이유: 2018년	127
[그림 III-18]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2018년	128

[그림 III-19]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통증 느끼는 횟수: 2018년	129
[그림 III-20]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전 건강 상태: 2018년	131
[그림 III-21]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현재 2018년 건강 상태: 2018년	132
[그림 III-22]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018년	134
[그림 III-23]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 산재 이후 건강회복 정도: 2018년	135
[그림 V-1] 여성과 산업보건에 관한 연구의 악순환	169

II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 동안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연구는 소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됐으나, 실제적인 법 및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었다. 여성 근로자의 고충과 관련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직 등에서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택 외, 2018).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작업장에서 여성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한 이후 콜 센터 노동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밀집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톨 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경우, 한쪽으로 틀어 앉게 되어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리를 뜨기 어려운 물류 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방광염 환자가 많지만 이 역시 남성 노동자와의 차이에 대한 안전의 영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5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근골격계 위험 비율을 살펴보면, 작업장에서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택 외, 2018. 요약 III). 서비스 종사자인 경우 여성의 근골격계 위험 비율은 61.6%로 나타난 반면에 서비스직 남성의 근골격계 위험 비율은 55.8%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위험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는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두통/눈/피로, 우울감 발생이 남성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택 외, 2018. 요약 III). 여성

4 ■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약형 및 남성과 여성 혼합형 산업에서도 요통 경험률은 서비스직인 경우 여성 근로자가 20%에 이르고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상지근육통 경험률은 35.7%인 반면에 남성 근로자는 17.7%로 나타나 성별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택 외, 2018). 이러한 작업장에서의 위험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건설, 공장 등의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의 부주의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에 법 및 제도 보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위험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이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적된 작은 위험이 산업재해로 발생할 수 있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생애주기 후반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작업장에서 위험의 성별 간 격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다학제간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성별 근로자의 차이점을 찾고 다양한 작업장 환경에서의 위험 노출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련 국내 연구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차이가 임신 및 출산에 인식 하에 여성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여성 근로자와 근골격계 작업위험과 태아의 건강 상태(Fenster L 외, 1997; Whelan EA 외, 2007, Florack El 외, 1993; Jens Peter E Bonde 외, 2013; Axelsson 외, 1989) 관련 국외 연구와 여성 근로자의 생식건강과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 노출 관련 국외 연구(Zielhuis 외, 1984; H Taskinene 외, 1986)와 국내 연구로는 여성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생식건강과 관련된 연구(홍윤철, 2007; 전진호 외, 2002; 정진주 외, 2000)등이 존재한다. 이외에 근로자 감정 노동 관련 연구(김수지 외, 2015)가 존재하고 근골격계 질환과 여성 근로자의 삶의 질관련 연구가 존재한다(이영미, 피영규, 2016).

산업안전보건법¹⁾에서 중요한 예방 조직과 교육을 살펴보면, 안전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구성, 안전보건 교육이 존재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 근로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정이 없어 주로 남성 근로자의 표준적인 신체를 기준으로 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간과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작업장 환경에서의 성별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성인지적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김영택 외, 2018).

이러한 점은 여성 집약적 산업인 서비스 직종의 특징인 소규모 사업장, 열악한 고용조건 및 환경(김영택 외, 2006)을 고려하면 서비스 직종 여성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고찰하고 최근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II장에서는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법 및 제도와 정책을 파악하였다.

III장에서는 여성 집중 직종인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대상(대인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등)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재해 피해 경험 후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의 고용상태 및 건강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최근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대상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나. 연구 방법

첫 번째로,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인 최근 6차 자료(2020)를 활용하여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재보험패널을 2차 코호트 자료 조사(2018)를 활용하여 산업 재해 이후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건강 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급식종사자 8명과 콜센터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 착수 및 중간 보고회 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였다.



II

국내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1. 국내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9
2. 국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15
3. 소결	19

II

국내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1. 국내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작업장에서 남성 위주의 안전보건 정책에서 벗어나 성별 근로자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성별 분리된 차이점을 고려한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영택 외, 2013a, 2016a).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직종의 여성 근로자의 차이점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련 연구들이 존재한다(김영택 외, 2013b, 2014, 2016b; 이현주 외, 2017).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사항들이 성별로 분리되는 기준은 여성의 모성보호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주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안전보건 관련 내용이 여성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다. 이러한 법에 따라 정책 또한 성중립적 위치에서 계획되고 집행된다. 그러나 재생산과 관련된 내용만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사한 노동시장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상이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ILO, 2013:9). 특히 서비스직인 경우 성별 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서비스직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여성 근로자는 직장과 가정의 이중 역할로 인한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택 외, 2006).

서비스직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 보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고객 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법 사항이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1항에서 '사업주로서 하여금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41조2항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41조 3항에서 ‘고객응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하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우수한 정책개선 사례이다. 또한 학교 등의 현업종사자를 산업보건법 체계 내에 추가한 것은 학교 공무직 노조 및 여성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우수 성과 사례로 간주된다.

산업안전보건법²⁾을 살펴보면 법 보호대상 확대, 적용의 명확화,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작업증지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그 외 유해 및 위험 방지조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³⁾.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및 책임주체 확대 관련 배경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에 근거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1쪽). 사업장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대표 이사’, ‘건설 공사 발주자’, ‘프렌차이즈 가맹본부’로 확대하여 산업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1쪽).

개정안 중 서비스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존재한다. 외식 업종 및 편의점인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의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79조). 가맹본부에 속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위반 시 가맹본부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 시행일 2020년 1.16일 시행함.
3) 안전보건공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종합) 산안법전면개정 교육교안(종합본)200116.pdf 접속일 2022.12.26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접속일 2022.12.26

구체적인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관련 경영방침 및 계획, 가맹본부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관련 조직 구성 및 체계, 가맹점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 및 대책방안 관련 안전보건 매뉴얼, 가맹점 내 재해 발생 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6-7쪽).

서비스직과 관련이 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477조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원,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에게 노무를 제공 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며 정부는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에 활용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77조 2항 및 3항).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교육 교안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에서 '휴게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무실 청결, 사무용 시설(책상 및 의자 등)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방법 관련 매뉴얼 제공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골프장 캐디, 퀵 서비스, 택배, 대리운전 기사 대상 구체적인 안전보건기준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골프장 내 차량 관한 예방 관련 조치 및 퀵 서비스 기사 대상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 및 이륜 자동차 작동 확인 등과 고객 폭언 등에 대한 대처 관련 지침 제공 등이 존재하고 있다(산안법전면개정 교육교안, 16-18쪽).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⁵⁾ 기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및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가 존재한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유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데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시내외버스 운송업, 화물 운송업, 택배업 등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에 포함하였다. 포함 배경에는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보건관리가 필요한 이유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27-28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최근 개정안에서는 성별 차이점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pdf. 접속일 2022.12.26

고려하는 내용은 여전히 부재하다(표 II-1). 성별 분리 대신 근로자 전체 대상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남성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기준이 아닌 준거 집단인 여성 근로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다(Forastieri, 2010; ILO, 2013; EUOSHA, 2013; EUOSHA, 2018).

〈표 II-1〉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광업,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안전보건책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및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이 포함된다. 위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 되어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⁶⁾.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원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인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과 유사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⁷⁾. 최근 개정 안에 보건관리자 선임이 기존 산업 외에 운송업, 화물 운송업, 택배업을 포함하여 확대된 것이다⁸⁾. 기계, 설비 시설, 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등의 위험요인 예방 차원 및 상시 근로자 적정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배경이나, 여성 서비스직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직종은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영택 외, 2006) 안전보건체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직의 위험 사항은 서비스직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최선을 기울이는 방안일 수 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기준을 서비스직

-
-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8.18.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 1항 관련)
 -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6조 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20조 1항 관련)
 - 8)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pdf. 접속일 2022.12.26

위험 수준에 맞추고 근로자 중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후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취급 관련 책임 수준에서 벗어나 서비스직 내 특이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안전 위험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 대처 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성별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성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몰성인지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ILO, 2013:35).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로 최근 개정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이 부재하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구성원 성별 비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과 남성 근로자 위험의 상이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함은 근로자 전체의 안전 및 보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유사한 배경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구성도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교육에서도 작업장에서 성별 위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I-1〉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안전과 건강규정

주제	내용	성별 고려 필요사항	생애주기
안전관리 담당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 15조), 관리감독자(제 16조), 안전관리자(제 17조), 보건관리자(제18조)를 두도록 함.	성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몰성적인 방식의 안전관리, 주로 남성의 표준적인 신체를 기준으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모든 생애주기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의 실시(제36조)	성별 근로자의 위험성이 상이함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못함	모든 생애주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구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 24조)	한쪽 성별의 비율을 일정정도로 유지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노동 시장에서의 소수성별의 안전이 간과될 수 있음.	모든 생애주기

주제	내용	성별 고려 필요사항	생애주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제29조).	안전교육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인데, 성별로 위해요소와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별 차이에 따른 위험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모든 생애주기

출처: 김영택 외, 2018.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III): 작업장에서의 여성 안전을 중심으로. 17쪽 부분 인용 및 추가 사항 삽입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여성 근로자가 보호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근로산업 측면에서 여성의 직종 제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나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여성의 갱내 근로 금지 및 보건·의료, 보도·취재를 위한 일시적 진입 허용’(근로기준법, 제72조). 근로시간 제한 측면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및 임산부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필요’(근로기준법, 제75조), ‘출산 후 1년 이하의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제71조)’, ‘임신 중인 여성의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근로로 전환(제74조 5항)’을 포함하고 있다. 휴가에 관한 규정 사항에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 허용(제73조)’,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휴가, 둘 이상의 자녀 임신 경우 120일간의 휴가 허용(제74조1항)’, ‘유산 경험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 허용(제74조2항)’,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에 의해 유산·사산 휴가 지급(제74조3항)’,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 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하도록 규정(제74조의 2)’이 포함되어 있다(김영택 외, 2018: 17-19).

그러나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복리

후생 시간제 및 전일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제 및 전일제와 관계없이 복리후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 휴가 제공과 관련하여 시간제 여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 중 91.3%가 생리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전일제 여성 근로자 중 77.1%가 생리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출산 휴가인 경우에는 시간제와 전일제와의 비율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출산 휴가 제공 비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여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 중 89.4%가 출산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동 사업 전일제 여성 근로자 중 62.3%가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김영택 외, 2022:87-105).

2. 국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⁹⁾

ILO에서 제시하는 성인지적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 서비스직에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작업장에서의 성인지적 사항은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1)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규정 검토 및 수립, 2)현실에서의 젠더 불평등성을 고려한 OSH 정책 개발, 3)젠더 차이를 고려한 위험관리, 4)젠더 차이를 고려한 OSH 조사 연구 필요, 5)성별 분리 통계에 기초한 OSH 요소 포함, 6)성별로 동등한 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보, 7)OSH를 위한 의사결정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참여권 보장, 8)성인지적 관점에서의 OSH 교육과 훈련, 정보제공 방식 개발, 9)젠더 차이를 고려한 작업보호장비 개발, 10)근로시간 조정 및 일-삶의 균형을 포함하는 10가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¹⁰⁾.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배경은 성차를 고려하는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프로그램(In Focus Programme on Safety, Health and the Environment SAFEWORK) 제안에 기반하고 있다(Forasteri, 2010: 2).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성별 차이가 작업장에서 존재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한 SAFEWORK 프로그램은 서비스직을 포함한 모든 직종에서 성별 근로자의

9) 김영택 외. 2018년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III): 작업장에서의 여성 안전을 중심으로 부문 인용
 10) 「10 Keys for Gender Sensitive OSH Practice-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ILO, 2013)

안전 및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로, 여성 근로자가 많고 적음에 따른 작업환경에서 여성 근로자 젠더적 관점 이슈 및 특이적인 위험 사항 여부 등이 어떻게 인식되는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Forasteri, 2010: 3). 이러한 배경 아래 제안되어진 ILO의 10가지 성인지적 작업장 가이드라인은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제도, 법, 정책담당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ILO의 10가지 성인지적 관점의 작업장 안전과 보건 가이드라인을 서비스직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존 작업장 안전 보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젠더 불평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서비스직과 같은 여성 집중 산업인 경우 건설 등의 직종인 남성 집중 산업에 비하여 산업안전보건 위험 사항이 적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ILO, 2013: 4). 앞에서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여성 근로자가 갯에서의 노동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보호와 출산 휴가 등의 재생산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주요 원인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산업안전보건측면에서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이다(ILO, 2013: 4). 이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들의 작업장 위험 사항 및 보건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 수준이 낮고 관련 과학적 연구 조사는 부족하고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가 거의 부재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법 및 제도가 발전되지 못한 원인이 된다.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발 시 남성과 여성 근로자는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작업 환경속에 상이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위험이라 할지라도 성별 간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정부가 제시한 정책 환경에 맞추어 사용자,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실행되며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발 시 고위험 산업, 남성 집중 산업, 여성 집중산업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의 위험을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발 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여 한쪽의 성에 치우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외국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한 표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표 II-2〉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국내외 비교

규정 및 정책	해외	국내	비고
양쪽 성별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핀란드-산업안전보건법 *독일-산업안전보건법	존재하지 않음	모든 생애주기
안전관련 위원회에 성별 최소비율 포함	*동남아시아-Homenet SouthEast Asia 구성(지역 여성 NGO참여) *호주-산업법 제15조(안전위원회에 남녀 참석 명시)	존재하지 않음	모든 생애주기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	*필리핀-A Business Case for Gender Fair Practice *오스트리아-성인지적 관점에서 노동감독관 훈련 및 교육	존재하지 않음	모든 생애주기

출처: 김영택 외, 2018.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III):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40-41쪽 부분 인용

ILO는 젠더 차이를 고려한 작업장 위험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작업 위험 사항 중 고객 폭언 등의 위험이 높은 직종이다(ILO, 2013: 3, 4). 이에 근로자 감정노동 관련 국내 조사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하여 고객 폭언 등 방지 관련 법 개정은 우수한 사례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논문에 의하면 남성 요리사보다 여성 요리사에게 폐암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n 외, 2019). 이 논문은 1984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요리사 대상 추적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통한 나온 결과이다. 후속 연구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중국 여성 요리사의 유방암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n, 2021). 요리에 사용 되어지는 기름 연기 노출 및 배출 시설(cooking oil fume exposure and fume extractor use)이 중국 여성 비흡연자의 폐암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Chen TY wt al, 2020) 등의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폐암에 이에 대한 국내 조사도 연구가 활성화되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성인지적 산업 안전보건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주요 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 MSDs)이 존재한다. 근골격계 질환도 성별로 차이가 발생한다(ILO, 2013: 9).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위쪽(upper back)과 위쪽 사지(upper limb)에

남성 근로자는 아래쪽 등(lower-back)에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LO, 2013: 9). 이에 ILO는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안전과 건강 전문가들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작업적 특성, 무거운 짐 이동, 과도한 반복 작업, 힘든 자세,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있는 자세 등의 특성을 포함하여 인체공학적 기준을 발전시켜야 한다’(ILO, 2013: 11; 김영택 외, 2018: 26). 이에 따라 사업주는 성별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위험을 조사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ILO, 2013: 11; 김영택 외, 2018: 26). 또한 성별 사회심리적 위험은 상이하게 작용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여성인 경우 직업 관련 스트레스 외에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이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ILO, 2013: 10). 이에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작업장 위험성 평가 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 및 사후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ILO, 2013:11).

작업장에서의 성별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관련하여 핀란드, 호주, 독일 사례가 존재한다. 핀란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생산 건강과 관련하여 작업 위험 요소 및 화학 물질, 신체적, 생리학적 요인들에 대한 명시가 있으며 특히 위험성 평가에서는 ‘연령, 성, 직업 기술과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호주에서는 성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1998년 산재보험제도에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생물학적 근거에 따른 성별 차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김영택 외, 2018:24).

〈표 II-3〉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해외 정책사례

국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안전규정 및 정책
핀란드	핀란드는 산업안전보건법(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에 다음과 같은 지점을 명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재생산 건강을 위한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재생산 건강에 위험을 가하는 요소”인 유해한 화학물질, 신체적, 생리학적 요인들에의 노출을 감소하기 위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하도록 기술되어 있음. 이 위험평가는 “ 연령, 성, 직업 기술과 개인의 능력 ”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음.
호주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OSH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호주 정부는 1998년에 산재보험제도에 가사노동자를 포함하였고, 2002년 노동법(Labour Act) 93조에 “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 규정 ”을 명시하여 법을 개정하였음.
독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 Gesetz) 에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생물학적 근거에 따른 성별특수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 하고 있음.

출처: ILO(2013). p.5; 핀란드 산업안전보건법;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여 재구성: 김영택 외, 2018.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III):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24쪽 부문 재인용

ILO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 담당자 대상 성인지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및 책임자, 전문가, 작업장 위험성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만 작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자 및 전문가들이 성인지적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면 기존 정책의 문제점 파악이 용이할 수 있다.

3. 소결

국외 ILO 기관이 제안하는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기조는 성별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사한 노동시장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상이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인 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차이가 재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본적 인식의 차이로 법 및 제도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성 중립적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안전보건 관련 내용이 여성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최근 개정안에서는 성별 차이점을 고려하는 내용은 여전히 부재하다. 산업안전보건 정책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성별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성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몰성인지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ILO에서 제시하는 1)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규정 검토 및 수립, 2)현실에서의 젠더 불평등성을 고려한 OSH 정책 개발, 3)젠더 차이를 고려한 위험관리, 4)젠더 차이를 고려한 OSH 조사 연구 필요, 5)성별 분리 통계에 기초한 OSH 요소 포함, 6)성별로 동등한 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보, 7)OSH를 위한 의사 결정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참여권 보장, 8)성인지적 관점에서의 OSH 교육과 훈련, 정보제공 방식 개발, 9)젠더 차이를 고려한 작업보호장비 개발, 10)근로 시간 조정 및 일-삶의 균형을 포함하는 10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1. 서비스직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현황	23
2.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산업재해 피해 현황	114
3. 소결	136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1. 서비스직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현황

가. 분석 자료

근로환경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산업별 및 업종별 근로자의 작업장 근로 환경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있다. 2006년(1차)에 시작되어 2010년(2차), 2011년(3차), 2014년(4차), 2017년(5차)조사, 2020년(6차)조사가 완료되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근로환경조사는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 50,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 1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차 조사구 추출과 2차 가구 및 가구원을 추출하는 2단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Secondary probability proportion stratified cluster sample survey)을 활용하였다. 최근 근로환경조사 6차 자료의 종사상 지위 변수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사용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33,063명 중 서비스직 근로자 7,75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근 6차 조사(2020)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6차 조사의 직종 관련 변인을 근거로 본 연구 대상인 서비스직 종류를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I-1〉 서비스직 근로자 종류: 6차 조사(2020)

① 경찰 소방 및 교도 서비스직(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
② 경호 및 보안 서비스직(경호원, 청원경찰, 무인경비시스템 종사 및 기타 경비 관련 종사자)
③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돌봄 서비스, 장애인 및 환자 돌봄 업무, 아동보육 서비스 및 교사 보조 업무)
④ 미용 관련 서비스직(이·미용사, 피부관리, 화장 관련 업무, 피부미용 및 체형 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사, 패션코디네이터 등)
⑤ 혼례 및 장례 서비스직(결혼상담원, 웨딩플래너, 혼례 종사원, 장례 상담원 및 장례 지도사)
⑥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반려동물 미용 및 훈련, 수의사 보조,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개인생활 서비스 종사원)
⑦ 운송 서비스직(항공기, 선박, 열차 객실 승무원)
⑧ 여가 서비스직(국내외 여행안내, 호텔 및 숙박시설, 오락시설,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여가서비스 종사자)
⑨ 조리사(호텔, 한식당, 중식당, 일식집, 레스토랑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원)
⑩ 식음료 서비스직(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요식업, 클럽, 선상 및 열차 등에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종사자)

본 연구에서는 판매직도 서비스직에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판매 관련 서비스직의 안전보건 문제점 등이 최근 이슈화되는 경향을 고려하였다. 판매 관련 서비스직을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I-2〉 서비스직 근로자 종류: 판매 서비스직(6차 조사, 2020)

① 영업 종사자(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 자동차 영업원, 제품 및 광고 영업원,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등)
② 매장 판매 서비스직(도소매 업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일, 상점 판매원, 대표원,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등)
③ 상품 대여 서비스직(소비자에게 자동차, 도선, 영상 기록 매체,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대여하는 일)
④ 통신 관련 판매 서비스직(이동통신 및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상품 및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일)
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서비스직(방문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판매촉진 활동을 하는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나. 분석 결과

서비스직 임금근로자(이하 근로자)와 타 직종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1)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측면에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와 타 직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는 전문가 및 관리직, 사무직,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의 60세 이상 분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숙련 여성 종사자, 단순 노무직, 기능원 관련 여성 종사자의 60세 이상의 분포 비율 다음으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60세 이상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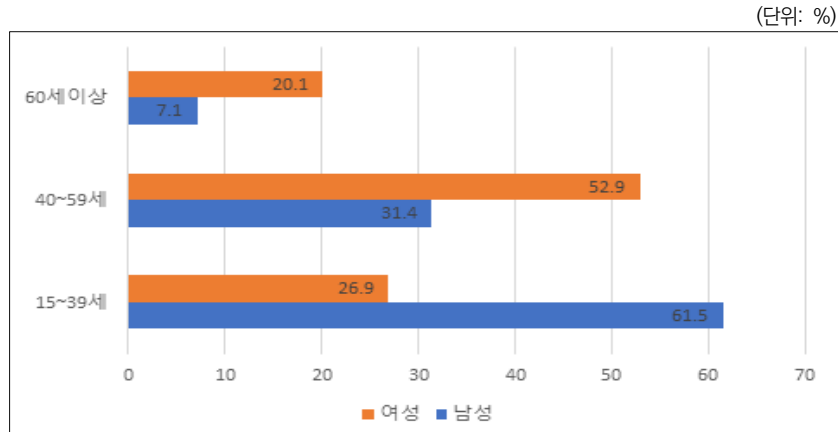
〈표 III-3〉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연령 분포(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연령	남성	여성
서비스직	15~39세	1319(61.5)	1510(26.9)
	40~59세	672(31.4)	2968(52.9)
	60세이상	152(7.1)	1130(20.1)
	전체	2143(100)	5608(100)
전문가 및 관리직	15~39세	1457(46.0)	1762(47.4)
	40~59세	1492(47.1)	1850(49.9)
	60세이상	218(6.9)	95(2.6)
	전체	3167(100)	3707(100)
사무직	15~39세	1352(41.2)	1908(47.2)
	40~59세	1689(51.5)	2026(50.1)
	60세이상	238(7.3)	112(2.8)
	전체	3279(100)	4046(100)

직종	연령	남성	여성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5~39세	21(19.4)	2(3.3)
	40~59세	42(38.9)	15(24.6)
	60세이상	45(41.7)	44(72.1)
	전체	108(100)	61(100)
기능원 관련 종사자	15~39세	613(28.1)	75(17.7)
	40~59세	1150(52.8)	227(53.7)
	60세이상	416(19.1)	121(28.6)
	전체	2179(100)	423(100)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15~39세	657(28.1)	132(19.6)
	40~59세	1277(54.6)	463(68.9)
	60세이상	403(17.2)	77(11.5)
	전체	2337(100)	672(100)
단순노무직 종사자	15~39세	473(20.7)	164(5.4)
	40~59세	666(29.1)	905(29.7)
	60세이상	1151(50.3)	1974(64.9)
	전체	2290(100)	3043(100)

서비스직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연령 분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7.1%인 반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20.1%로 나타났다. 한편 15-39세 구간에서는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61.5%로 나타난 반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26.9%로 나타났다.



[그림 III-1]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연령 분포(6차 조사, 2020)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교육 수준 측면에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와 타 직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졸업 분포면에서 장치/기계/조작 종사자 및 기능원 여성 종사자보다는 낮으나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고등학교 졸업 분포가 56.1%로 나타나 타 직종(관리직/전문직, 사무직,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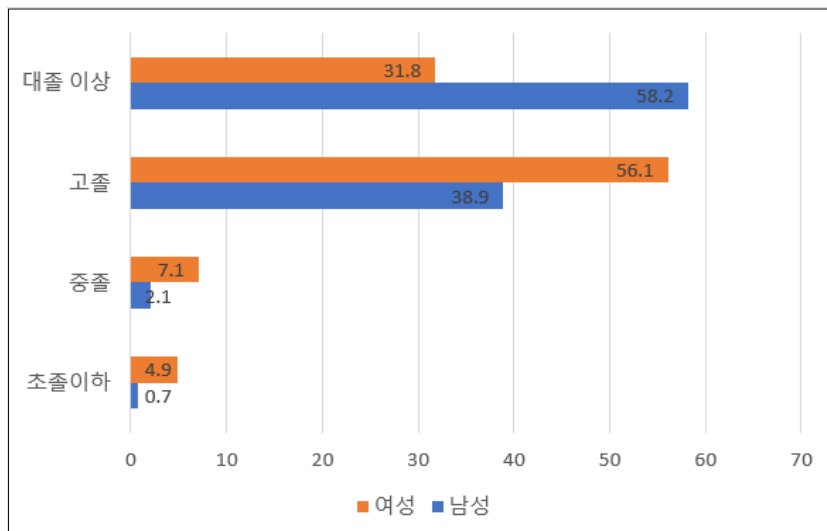
<표 III-4>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교육 수준 분포(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교육 수준	남성	여성
서비스직	초졸 이하	16(0.7)	277(4.9)
	중졸	46(2.1)	398(7.1)
	고졸	834(38.9)	3143(56.1)
	대졸 이상	1246(58.2)	1781(31.8)
	전체	2142(100)	5599(100)
사무직	초졸 이하	7(0.2)	8(0.2)
	중졸	18(0.5)	13(0.3)
	고졸	518(15.8)	847(20.9)
	대졸 이상	2732(83.4)	3176(78.5)
	전체	3275(100)	4044(100)

직종	교육 수준	남성	여성
전문가 및 관리직	초졸 이하	5(0.2)	7(0.2)
	중졸	12(0.4)	6(0.3)
	고졸	222(7.0)	315(8.5)
	대졸 이상	2920(92.4)	3379(91.2)
	전체	3159(100)	3707(1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초졸 이하	8(7.4)	28(45.9)
	중졸	19(17.6)	14(23.0)
	고졸	52(48.1)	16(26.2)
	대졸 이상	29(26.9)	3(4.9)
	전체	108(100)	61(100)
기능원 관련 종사자	초졸 이하	82(3.8)	34(8.0)
	중졸	188(8.6)	56(13.2)
	고졸	1093(50.3)	238(56.3)
	대졸 이상	811(37.3)	95(22.5)
	전체	2174(100)	423(100)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초졸 이하	41(1.8)	13(1.9)
	중졸	144(6.2)	67(10.0)
	고졸	1354(58.0)	469(70.1)
	대졸 이상	795(34.1)	121(18.1)
	전체	2334(100)	670(100)
단순노무직 종사자	초졸 이하	324(14.2)	1243(40.9)
	중졸	396(17.4)	549(18.1)
	고졸	1213(53.3)	1049(34.5)
	대졸 이상	343(15.1)	197(6.5)
	전체	2276(100)	3038(100)

서비스직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교육 수준 분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58.2%인 반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대학교 졸업 이상 분포는 31.8%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38.9%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 졸업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56.1%로 나타났다.



[그림 III-2]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교육 수준 분포(6차 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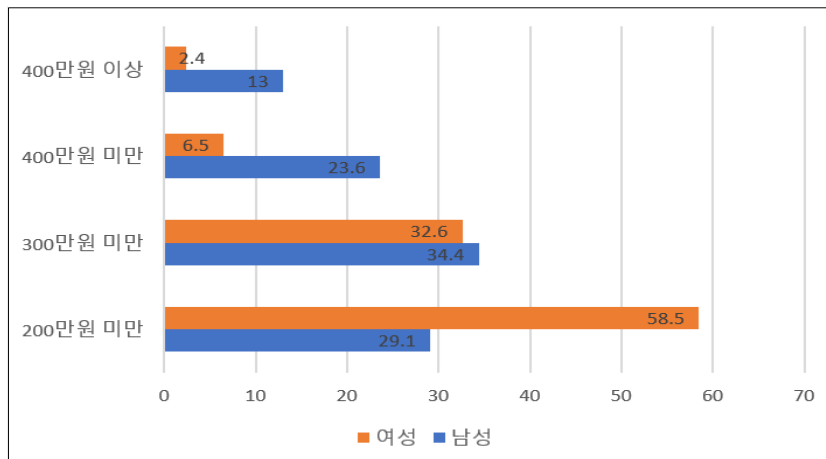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소득수준 측면에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와 타 직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농림어업 및 숙련 여성 종사자 및 단순 노무직 여성 종사자를 제외하고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200만원 미만의 분포가 58.5%로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소득 수준 분포(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소득 수준	남성	여성
서비스직	200만원 미만	594(29.1)	3145(58.5)
	300만원 미만	702(34.4)	1755(32.6)
	400만원 미만	482(23.6)	352(6.5)
	400만원 이상	265(13.0)	128(2.4)
	전체	2043(100)	5380(100)
사무직	200만원 미만	165(5.3)	835(21.6)
	300만원 미만	796(25.4)	1927(49.9)
	400만원 미만	1106(35.3)	782(20.3)
	400만원 이상	1066(34.0)	317(8.2)
	전체	3133(100)	3861(100)
전문가 및 관리직	200만원 미만	176(5.9)	785(22.3)
	300만원 미만	673(22.5)	1567(44.6)
	400만원 미만	851(28.5)	766(21.8)
	400만원 이상	1287(43.1)	399(11.3)
	전체	2987(100)	3517(1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00만원 미만	34(32.7)	49(84.5)
	300만원 미만	37(35.6)	6(10.3)
	400만원 미만	28(26.9)	1(1.7)
	400만원 이상	5(4.8)	2(3.4)
	전체	104(100)	58(100)
기능원 관련 종사자	200만원 미만	250(12.0)	189(49.3)
	300만원 미만	718(34.5)	177(44.)
	400만원 미만	728(35.0)	29(7.3)
	400만원 이상	386(18.5)	5(1.3)
	전체	2082(100)	400(100)

직종	소득 수준	남성	여성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200만원 미만	252(11.1)	305(46.6)
	300만원 미만	865(38.3)	277(42.4)
	400만원 미만	740(32.7)	50(7.6)
	400만원 이상	404(17.9)	22(3.4)
	전체	2261(100)	654(100)
단순노무직 종사자	200만원 미만	1259(56.9)	2532(85.7)
	300만원 미만	651(29.4)	390(13.2)
	400만원 미만	237(10.7)	28(0.9)
	400만원 이상	65(2.9)	6(0.2)
	전체	2212(100)	2956(100)

서비스직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소득수준 분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하의 분포가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29.1%인 반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200만원 이하 분포는 58.5%로 나타났다. 400만원 미만인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23.6%인 반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200만원 이하 분포는 6.5%로 나타났다.



[그림 III-3]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소득수준 분포(6차 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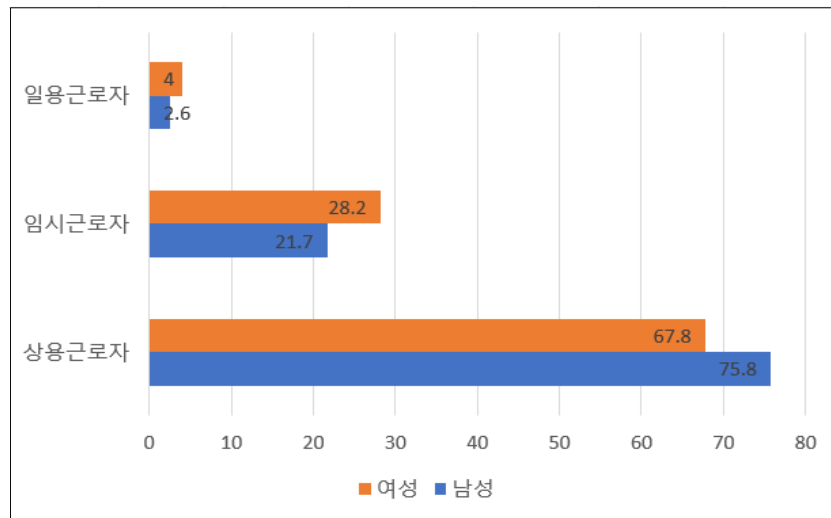
고용 형태 면에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와 타 직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임시 근로자 형태의 비율이 28.2%로 타 직종의 여성 임시 근로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고용 수준 분포(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고용형태	남성	여성
서비스직	상용근로자	1624(75.8)	3800(67.8)
	임시근로자	464(21.7)	1583(28.2)
	일용근로자	55(2.6)	225(4.0)
	전체	2143(100)	5608(100)
사무직	상용근로자	3124(95.3)	3748(92.6)
	임시근로자	139(4.2)	281(6.9)
	일용근로자	16(0.5)	17(0.4)
	전체	3279(100)	4046(100)
전문가 및 관리직	상용근로자	2978(94.0)	3392(91.5)
	임시근로자	164(5.2)	292(7.9)
	일용근로자	25(0.8)	23(0.6)
	전체	3167(100)	3707(1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상용근로자	54(50.0)	11(18.0)
	임시근로자	28(25.9)	12(19.7)
	일용근로자	26(24.1)	38(62.3)
	전체	108(100)	61(100)
기능원 관련 종사자	상용근로자	1450(66.5)	284(67.1)
	임시근로자	189(8.7)	73(17.3)
	일용근로자	540(24.8)	66(15.6)
	전체	2179(100)	423(100)

직종	고용형태	남성	여성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상용근로자	2135(91.4)	565(84.1)
	임시근로자	143(6.1)	87(12.9)
	일용근로자	59(2.5)	20(3.0)
	전체	2337(100)	672(100)
단순노무직 종사자	상용근로자	994(43.4)	1126(37.0)
	임시근로자	836(36.5)	1564(51.4)
	일용근로자	460(20.1)	353(11.6)
	전체	2290(100)	3043(100)

서비스직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고용 수준 분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근로자의 분포가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21.7%인 반면 임시 근로자의 분포가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28.2%로 나타났다. 일용 근로자의 분포가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2.6%인 반면 일용 근로자의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고용형태 분포(6차 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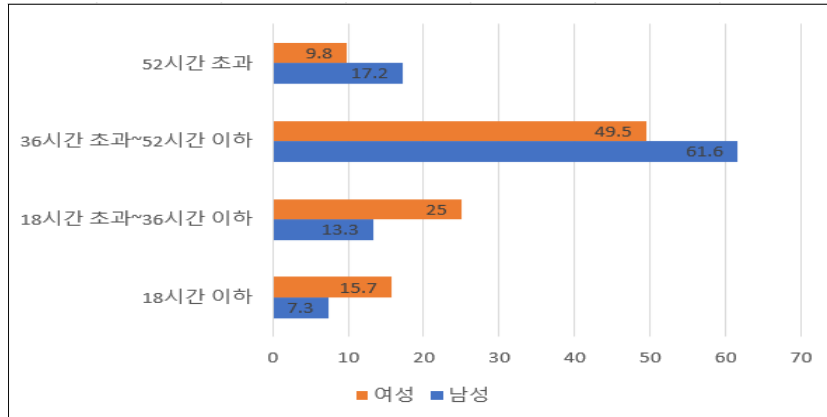
주당 근로시간 측면에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와 타 직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18시간 초과~36시간 이하 분포가 25.0%로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52시간 초과 비율이 9.8%로 타직종 서비스직 근로자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7〉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주당 근로시간	남성	여성
서비스직	18시간 이하	168(7.3)	876(15.7)
	18시간 초과~36시간 이하	283(13.3)	1396(25.0)
	36시간 초과~52시간 이하	1315(61.6)	2765(49.5)
	52시간 초과	368(17.2)	545(9.8)
	전체	2134(100)	5582(100)
사무직	18시간 이하	47(1.4)	103(2.6)
	18시간 초과~36시간 이하	79(2.4)	250(6.2)
	36시간 초과~52시간 이하	3046(93.1)	3613(89.5)
	52시간 초과	101(3.1)	72(1.8)
	전체	3273(100)	4038(100)
전문가 및 관리직	18시간 이하	86(2.7)	203(5.5)
	18시간 초과~36시간 이하	117(3.7)	337(10.2)
	36시간 초과~52시간 이하	2844(90.3)	3034(82.2)
	52시간 초과	104(3.3)	78(2.1)
	전체	3151(100)	3692(1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시간 이하	8(7.5)	15(24.6)
	18시간 초과~36시간 이하	18(17.0)	19(31.1)
	36시간 초과~52시간 이하	71(67.0)	27(44.3)
	52시간 초과	9(8.5)	0
	전체	106(100)	61(100)

직종	주당 근로시간	남성	여성
기능원 관련 종사자	18시간 이하	82(3.8)	39(9.4)
	18시간 초과~36시간 이하	238(11.1)	71(17.1)
	36시간 초과~52시간 이하	1646(76.5)	274(65.9)
	52시간 초과	185(8.6)	32(7.7)
	전체	2151(100)	416(100)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18시간 이하	42(1.8)	20(3.0)
	18시간 초과~36시간 이하	101(4.3)	52(7.8)
	36시간 초과~52시간 이하	1954(84.0)	568(84.8)
	52시간 초과	229(9.8)	30(4.5)
	전체	2356(100)	670(100)
단순노무직 종사자	18시간 이하	450(19.8)	1240(40.9)
	18시간 초과 ~36시간 이하	413(18.2)	756(25.0)
	36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1014(44.7)	940(31.0)
	52시간 초과	393(17.3)	94(3.1)
	전체	2270(100)	3030(100)

서비스직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시간 초과~52시간 이하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61.6%인 반면 36시간 초과~52시간 이하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49.5%로 나타났다. 18시간 초과~36시간 이하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13.3%인 반면 18시간 초과~36시간 이하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52시간 초과 근무인 경우,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17.2%로 여성 근로자의 비율인 9.8%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5]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근로시간 분포(6차 조사, 2020)

사업장 규모 측면에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와 타 직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기능원 관련 종사자 및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제외하고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사업장 규모가 50명 미만 분포가 87.0%로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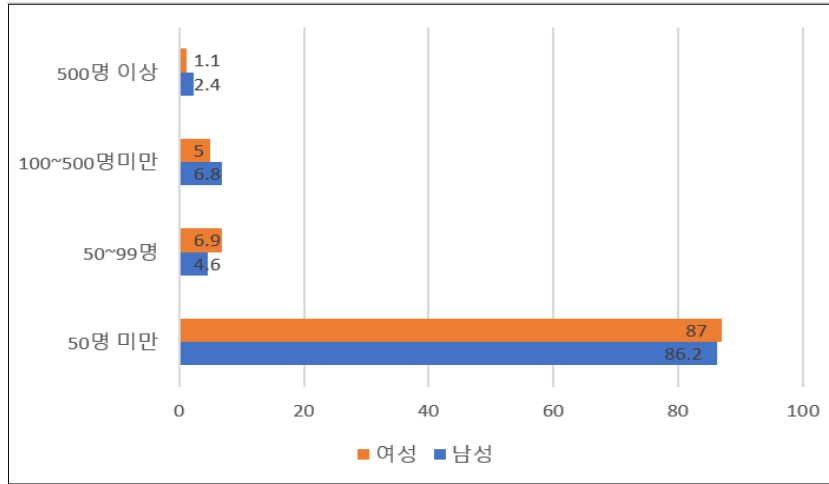
〈표 III-8〉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사업장 규모(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사업장 규모	남성	여성
서비스직	50명 미만	1806(86.2)	4673(87.0)
	50~99명	96(4.6)	368(6.9)
	100~500명 미만	143(6.8)	268(5.0)
	500명 이상	51(2.4)	60(1.1)
	전체	2096(100)	5369(100)
사무직	50명 미만	1749(54.3)	2851(71.7)
	50~99명	361(11.2)	391(9.8)
	100~500명 미만	673(20.9)	3485(12.2)
	500명 이상	437(13.6)	249(6.3)
	전체	3220(100)	3976(100)

직종	사업장 규모	남성	여성
전문가 및 관리직	50명 미만	1682(54.4)	2526(69.9)
	50~99명	411(13.3)	514(14.2)
	100~500명 미만	525(17.0)	370(10.2)
	500명 이상	476(15.4)	206(5.7)
	전체	3094(100)	3616(1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50명 미만	88(86.3)	54(96.4)
	50~99명	7(6.9)	1(1.8)
	100~500명 미만	3(2.9)	1(1.8)
	500명 이상	4(3.9)	0
	전체	102(100)	56(100)
기능원 관련 종사자	50명 미만	1666(79.5)	372(91.2)
	50~99명	139(6.6)	18(4.4)
	100~500명 미만	148(7.1)	14(3.4)
	500명 이상	142(6.8)	4(1.0)
	전체	2095(100)	408(100)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50명 미만	1183(52.1)	387(60.8)
	50~99명	1285(12.6)	87(13.7)
	100~500명 미만	505(22.3)	120(18.8)
	500명 이상	296(13.0)	43(6.8)
	전체	2269(100)	637(100)
단순노무직 종사자	50명 미만	1706(82.5)	2332(86.2)
	50~99명	148(7.2)	181(6.7)
	100~500명 미만	157(7.6)	141(5.2)
	500명 이상	56(2.7)	52(1.9)
	전체	2067(100)	2706(100)

서비스직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사업장 규모는 분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50명 미만 분포가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86.2%인 반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8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사업장 규모 분포(6차 조사, 2020)

근속 년수 측면에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와 타 직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2년 이상~5년 미만의 근속 년수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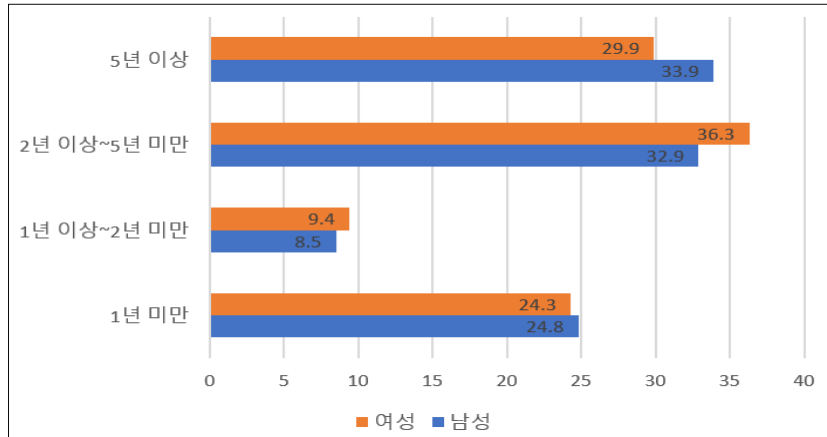
<표 III-9> 직종별 및 성별 임금근로자 근속 년수(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근속 년수	남성	여성
서비스직	1년 미만	528(24.8)	1352(24.3)
	1년 이상~2년 미만	180(8.5)	522(9.4)
	2년 이상~5년 미만	700(32.9)	2019(36.3)
	5년 이상	722(33.9)	1664(29.9)
	전체	2130(100)	5557(100)
사무직	1년 미만	1256(7.9)	424(10.6)
	1년 이상~2년 미만	166(5.1)	261(6.5)
	2년 이상~5년 미만	758(23.3)	1263(31.6)
	5년 이상	2077(63.8)	1664(29.9)
	전체	3257(100)	5557(100)

직종	근속 연수	남성	여성
전문가 및 관리직	1년 미만	290(9.2)	434(11.8)
	1년 이상~2년 미만	184(5.9)	259(7.1)
	2년 이상~5년 미만	844(26.8)	1288(35.1)
	5년 이상	1826(58.1)	1688(46.0)
	전체	3144(100)	3669(1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년 미만	18(17.0)	15(25.0)
	1년 이상~2년 미만	2(1.9)	1(1.7)
	2년 이상~5년 미만	22(20.8)	18(30.0)
	5년 이상	64(60.4)	26(43.3)
	전체	106(100)	60(100)
기능원 관련 종사자	1년 미만	339(15.8)	94(22.4)
	1년 이상~2년 미만	101(4.7)	12(2.9)
	2년 이상~5년 미만	505(23.6)	142(33.9)
	5년 이상	1197(55.9)	171(40.8)
	전체	2142(100)	419(100)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1년 미만	251(10.8)	113(16.9)
	1년 이상~2년 미만	118(5.1)	36(5.4)
	2년 이상~5년 미만	584(25.2)	185(27.7)
	5년 이상	1366(58.9)	33(49.9)
	전체	2319(100)	667(100)
단순노무직 종사자	1년 미만	744(32.9)	950(31.8)
	1년 이상~2년 미만	139(6.2)	236(7.9)
	2년 이상~5년 미만	713(31.5)	1053(35.2)
	5년 이상	664(29.4)	752(25.1)
	전체	2260(100)	2991(100)

서비스직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근속 연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로, 2년 이상~5년 미만 분포가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32.9%인 반면 2년 이상~5년 미만 분포가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 성별 서비스직 근로자 근속 연수 분포(6차 조사, 2020)

2)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위험 현황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업무가 건강이나 안전에 주는 위험 유무를 살펴 보면, 남성 근로자 중 16.6%로 나타난 반면 여성 근로자 중 7.5%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업무가 건강이나 안전에 주는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로 나타났다.

<표 III-10> 직종별 및 성별 업무가 근로자 건강/안전에 주는 위험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업무가 건강이나 안전에 주는 위험 유무			
	남성		여성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서비스직	192(9.0)	1939(91.0)	453(8.1)	5138(91.9)
사무직	186(5.7)	3080(94.3)	168(4.2)	3872(23.9)
전문가 및 관리직	267(8.5)	2885(91.5)	247(6.7)	3440(21.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7(25.2)	80(74.8)	10(16.4)	51(83.6)
기능원 관련 종사자	687(31.8)	1472(68.2)	66(15.7)	354(84.3)

직종	업무가 건강이나 안전에 주는 위험 유무			
	남성		여성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662(28.5)	1658(71.5)	105(15.8)	560(84.2)
단순노무직 종사자	538(23.6)	1742(76.4)	260(8.6)	2776(91.4)
전체	2559(16.6)	12856(83.4)	1309(7.5)	16191(92.5)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업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중 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근로자 중 17.8%로 나타난 반면 여성 근로자 중 11.4%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업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중 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12.4%로 나타났다.

〈표 III-11〉 직종별 및 성별 업무가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업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주로 긍정적 영향		주로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서비스직	383 (18.0)	1035 (18.6)	213 (10.0)	692 (12.4)	1535 (72.0)	3846 (69.0)
사무직	606 (18.6)	791 (19.7)	260 (8.0)	291 (7.3)	2386 (73.4)	2931 (73.0)
전문가 및 관리직	643 (20.5)	829 (22.6)	364 (11.6)	364 (9.9)	2135 (68.0)	2473 (67.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0 (19.0)	6 (9.8)	19 (18.1)	16 (26.2)	66 (62.9)	39 (63.9)
기능원 관련 종사자	267 (12.4)	69 (16.6)	683 (31.8)	89 (21.4)	1201 (55.8)	258 (62.0)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271 (11.7)	47 (7.1)	666 (28.7)	140 (21.0)	1386 (59.7)	479 (71.9)

42 ■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종	업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주로 긍정적 영향		주로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단순노무직 종사자	340 (15.0)	609 (20.1)	532 (23.4)	394 (13.0)	1402 (61.7)	2022 (66.8)
전체	2530 (16.5)	3386 (19.4)	2737 (17.8)	1986 (11.4)	10111 (65.7)	12048 (69.2)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직종 및 성별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 또는 건강 문제 여부를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 중 7.5%로 나타난 반면 여성 근로자 중 9.8%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8.8%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 또는 건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직종별 및 성별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 또는 건강 문제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 또는 건강 문제			
	남성		여성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서비스직	84(3.9)	2052(96.1)	2052(8.8)	5100(91.2)
사무직	165(5.1)	3097(94.9)	170(4.2)	3860(95.8)
전문가 및 관리직	202(6.4)	2949(93.6)	215(5.8)	3477(94.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3(12.0)	95(88.0)	19(31.1)	42(68.9)
기능원 관련 종사자	190(8.7)	1983(91.3)	50(11.8)	373(88.2)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208(8.9)	2126(91.1)	60(9.0)	610(91.0)
단순노무직 종사자	304(13.3)	1979(86.7)	703(23.2)	2331(76.8)
전체	1166(7.5)	14281(92.5)	1708(9.8)	15793(90.2)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활동 제약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중의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약간 제약 받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 중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활동 제약이 약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로 나타난 반면 여성 근로자 중 11.6%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활동 제약이 약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로 나타났다.

〈표 III-13〉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활동 제약(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활동 제약					
	심각하게 제약받음		약간 제약받음		전혀 제약받지 않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서비스직	8 (0.4)	25 (0.4)	125 (5.9)	635 (11.4)	2000 (93.8)	4913 (88.2)
사무직	8 (0.2)	16 (0.4)	197 (6.0)	269 (6.7)	3055 (93.7)	3729 (92.9)
전문가 및 관리직	15 (0.5)	9 (0.2)	212 (6.7)	289 (7.8)	2919 (92.8)	3384 (91.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	2 (3.3)	16 (14.8)	12 (19.7)	92 (85.2)	47 (77.0)
기능원 관련 종사자	16 (0.7)	2 (2.4)	243 (11.2)	64 (3.2)	1904 (88.0)	355 (2.3)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10 (0.4)	5 (0.7)	237 (10.2)	84 (12.6)	2084 (89.4)	580 (86.7)
단순노무직 종사자	17 (0.7)	25 (0.8)	324 (14.2)	674 (22.2)	1941 (85.1)	2331 (76.9)
전체	74 (0.5)	84 (0.5)	1354 (8.8)	2027 (11.6)	13995 (90.7)	15339 (87.9)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활동 제약이 6개월 이상 지속 여부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 중 45.3%로 나타난 반면 여성 근로자

중 48.8%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활동 제약이 6개월 이상 지속 여부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로 나타났다.

〈표 III-14〉 질병 또는 건강문제로 일상활동 제약 6개월 이상 지속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질병 또는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활동의 제약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			
	남자		여자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서비스직	45(34.1)	87(65.9)	301(45.7)	357(54.3)
사무직	89(43.4)	116(56.6)	103(36.4)	180(63.6)
전문가 및 관리직	93(41.2)	133(58.8)	128(43.8)	164(56.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6(37.5)	10(62.5)	12(85.7)	2(14.3)
기능원 관련 종사자	127(49.6)	129(50.4)	36(55.4)	29(44.6)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107(43.5)	139(56.5)	43(48.3)	46(51.7)
단순노무직 종사자	177(51.9)	164(48.1)	401(57.4)	297(42.6)
전체	644(45.3)	778(54.7)	1024(48.8)	1075(51.2)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질병 또는 건강 문제로 일상활동 제약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근무 장소/업무 활동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 중 17.5%로 나타난 반면 여성 근로자 중 18.6%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근무 장소/업무 활동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로 나타났다.

〈표 III-15〉 질병 또는 건강문제로 일상활동 제약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근무 장소/업무 활동 조정 필요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6개월 이상 지속된 건강문제로 제약을 받은 경우 근무 장소/업무 활동 조정 필요 여부					
	이미 조정되어 필요 없음		조정될 필요 없음		조정될 필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서비스직	18 (19.8)	100 (19.1)	59 (64.8)	306 (58.5)	14 (15.4)	117 (22.4)
사무직	27 (15.4)	45 (23.7)	116 (66.3)	109 (54.7)	32 (18.3)	36 (18.9)
전문가 및 관리직	31 (14.4)	34 (14.7)	159 (73.6)	135 (58.2)	26 (12.0)	63 (27.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 (6.7)	2 (10.5)	11 (73.3)	16 (84.2)	3 (20.0)	1 (5.3)
기능원 관련 종사자	46 (22.4)	16 (29.6)	116 (58.6)	28 (51.9)	43 (21.0)	10 (18.5)
장치/기계/조작 관련 종사자	36 (16.7)	15 (22.4)	136 (63.0)	36 (53.7)	44 (20.4)	16 (23.9)
단순노무직 종사자	70 (21.7)	137 (18.7)	198 (61.3)	501 (68.3)	55 (17.0)	35 (13.0)
전체	229 (18.5)	349 (19.2)	795 (64.1)	1131 (62.2)	217 (17.5)	338 (18.6)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3)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작업장 위험 노출 현황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정도를 살펴보면, 운송 여가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7.9%가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혀 받은 일이 없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혀 받은 일이 없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4.8%,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11.5%, 매장 판매/상품 대여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10.1%, 조리사 8.8%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건강 안전 정보제공 정도(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 보안	매우 잘 제공됨	93(37.8)	15(38.5)
	잘 제공됨	118(48.0)	20(51.3)
	별로 제공받지 못함	29(11.8)	4(10.3)
	전혀 제공받지 못함	6(2.4)	0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매우 잘 제공됨	25(31.3)	240(22.2)
	잘 제공됨	45(56.3)	616(57.0)
	별로 제공받지 못함	9(11.3)	178(16.5)
	전혀 제공받지 못함	1(1.3)	46(4.3)
	전체	80(100)	1080(100)
미용관련서비스	매우 잘 제공됨	0	25(10.3)
	잘 제공됨	5(45.5)	109(44.9)
	별로 제공받지 못함	6(54.5)	81(33.3)
	전혀 제공받지 못함	0	28(11.5)
	전체	11(100)	243(100)
흔레장레/기타돌봄	매우 잘 제공됨	6(31.6)	22(25.0)
	잘 제공됨	10(52.6)	40(45.5)
	별로 제공받지 못함	3(15.8)	20(22.7)
	전혀 제공받지 못함	0	6(6.8)
	전체	19(100)	88(100)
운송/여가서비스	매우 잘 제공됨	11(20.0)	16(23.9)
	잘 제공됨	30(54.5)	27(40.3)
	별로 제공받지 못함	13(23.6)	12(17.9)
	전혀 제공받지 못함	1(1.8)	12(17.9)
	전체	55(100)	67(100)
조리사	매우 잘 제공됨	38(12.8)	149(13.4)
	잘 제공됨	163(55.1)	594(53.5)
	별로 제공받지 못함	77(26.0)	269(24.2)
	전혀 제공받지 못함	18(6.1)	98(8.8)
	전체	296(100)	1110(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47

직종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남성	여성
식음료서비스	매우 잘 제공됨	19(10.2)	48(8.5)
	잘 제공됨	93(50.0)	256(45.1)
	별로 제공받지 못함	52(28.0)	180(31.7)
	전혀 제공받지 못함	22(11.8)	84(14.8)
	전체	186(100)	568(100)
영업종사자	매우 잘 제공됨	60(14.0)	78(17.0)
	잘 제공됨	250(58.3)	268(58.4)
	별로 제공받지 못함	89(20.7)	84(18.3)
	전혀 제공받지 못함	30(7.0)	29(6.3)
	전체	429(100)	459(100)
매장판매/상품대여	매우 잘 제공됨	60(10.3)	165(10.2)
	잘 제공됨	296(50.9)	847(52.4)
	별로 제공받지 못함	180(31.0)	441(27.3)
	전혀 제공받지 못함	45(7.7)	163(10.1)
	전체	581(100)	1616(100)
통신관련판매직	매우 잘 제공됨	28(13.3)	20(12.9)
	잘 제공됨	106(50.5)	86(55.5)
	별로 제공받지 못함	56(26.7)	37(23.9)
	전혀 제공받지 못함	20(9.5)	12(7.7)
	전체	210(100)	155(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매우 잘 제공됨	1(9.1)	15(13.8)
	잘 제공됨	3(27.3)	49(45.0)
	별로 제공받지 못함	5(45.5)	37(33.9)
	전혀 제공받지 못함	2(18.2)	8(7.3)
	전체	11(100)	109(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수공구 기계 진동 위험 여부를 살펴보면,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여성 근로자 중 7.7%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

근무시간 3/4 수공구 기계 진동 위험이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수공구 기계 진동 위험이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운송 여가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5%,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6.8%,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5.3%로 나타났다.

〈표 III-17〉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수공구 기계 진동 위험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수공구 기계 진동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6(2.4)	3(7.7)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8(11.4)	1(2.6)
	거의없음 /전혀없음	212(86.2)	35(89.7)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2(0.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1.3)	13(1.2)
	거의없음 /전혀없음	79(98.8)	1078(98.6)
	전체	80(100)	1093(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3(5.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8.2)	55(22.4)
	거의없음 /전혀없음	9(81.8)	177(72.2)
	전체	11(100)	245(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49

직종	수공구 기계 진동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0.5)	4(4.4)
	거의없음 /전혀없음	17(89.5)	86(95.6)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2(7.3)	5(7.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50(16.6)	5(7.5)
	거의없음 /전혀없음	229(76.1)	57(85.1)
	전체	301(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1)	76(6.8)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6(8.4)	170(15.2)
	거의없음 /전혀없음	229(76.1)	876(78.1)
	전체	301(100)	1122(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1)	10(1.7)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6(8.4)	27(4.7)
	거의없음 /전혀없음	172(90.5)	541(93.6)
	전체	190(100)	578(100)



50 ■ 성인직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종	수공구 기계 진동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0.9)	2(0.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0(7.0)	5(1.1)
	거의없음 /전혀없음	397(92.1)	458(98.5)
	전체	431(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1.7)	15(0.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1(7.0)	49(3.0)
	거의없음 /전혀없음	535(91.3)	1566(96.1)
	전체	586(100)	1630(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3(1.4)	3(1.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0.9)	5(3.1)
	거의없음 /전혀없음	207(91.3)	152(95.0)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0.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6(5.4)
	거의없음 /전혀없음	11(100)	104(93.7)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심한 소음 위험 여부를 살펴보면, 운송 여가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5%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심한 소음 위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심한 소음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5.1%,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2.8%,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2.5%로 나타났다.

〈표 III-18〉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심한 소음 위험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심한 소음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8(3.3)	2(5.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1(12.6)	2(5.1)
	거의없음 /전혀없음	207(84.1)	35(89.7)
	전체	246(100)	39
돌봄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7(0.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2.5)	26(2.4)
	거의없음 /전혀없음	78(97.5)	1061(97.0)
	전체	80(100)	1094(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6(2.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8.2)	23(9.4)
	거의없음 /전혀없음	9(81.8)	215(88.1)
	전체	11(100)	245(100)

52 ■ 성인직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종	심한 소음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0.5)	1(1.1)
	거의없음 /전혀없음	17(89.5)	89(98.9)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3(5.4)	5(7.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8(14.3)	6(9.0)
	거의없음 /전혀없음	45(80.4)	56(83.6)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3(4.3)	31(2.8)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3(14.3)	105(9.4)
	거의없음 /전혀없음	245(81.4)	986(87.9)
	전체	301(100)	1122(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3.7)	11(1.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0(10.5)	45(7.8)
	거의없음 /전혀없음	163(85.8)	522(90.3)
	전체	190(100)	578(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53

직종	심한 소음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2)	1(0.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9(4.4)	7(1.5)
	거의없음 /전혀없음	411(95.4)	457(98.3)
	전체	431(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1.2)	17(1.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6(4.4)	69(4.2)
	거의없음 /전혀없음	553(94.4)	1544(94.7)
	전체	586(100)	1630(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1.9)	2(1.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2.8)	6(3.8)
	거의없음 /전혀없음	202(95.3)	152(95.0)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9.1)	1(0.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9.1)	5(4.5)
	거의없음 /전혀없음	9(81.8)	105(94.6)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고열 위험 여부를 살펴보면, 조리사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6.0%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고열 위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고열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방문/노점 판매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2.7%,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2.6%,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6%,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6%로 나타났다.

〈표 III-19〉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고열 위험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고열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5(2.0)	1(2.6)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27(11.0)	3(7.7)
	거의없음/전혀없음	214(87.0)	35(89.7)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0	4(0.4)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2(2.5)	52(4.8)
	거의없음/전혀없음	78(97.5)	1037(94.9)
	전체	80(100)	1093(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0	4(1.6)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0	7(2.9)
	거의없음/전혀없음	11	223(95.5)
	전체	11(100)	244(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55

직종	고열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21.2)	5(5.6)
	거의없음 /전혀없음	15(78.9)	85(94.4)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1.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5.4)	10(14.9)
	거의없음 /전혀없음	53(94.6)	56(83.6)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0(6.6)	67(6.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56(18.6)	178(15.9)
	거의없음 /전혀없음	225(74.8)	877(78.2)
	전체	301(100)	1122(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2.1)	9(1.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9(10.0)	56(9.7)
	거의없음 /전혀없음	167(89.9)	513(88.8)
	전체	190(100)	578(100)

직종	고열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0.9)	1(0.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4.9)	11(2.4)
	거의없음 /전혀없음	406(94.2)	453(97.4)
	전체	431(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3(0.5)	9(0.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2(3.8)	50(3.1)
	거의없음 /전혀없음	561(95.7)	1572(96.4)
	전체	586(100)	1631(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0.9)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2.8)	5(3.1)
	거의없음 /전혀없음	204(96.2)	155(96.9)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3(2.7)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9.1)	12(10.8)
	거의없음 /전혀없음	10(90.9)	96(86.5)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저온 위험 여부를 살펴보면,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7.7%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저온 위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저온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방문/노점 판매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4.5%, 운송 여가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4.5%,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1.4%, 통신 판매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3%로 나타났다.

〈표 III-20〉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저온 위험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저온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6(2.4)	3(7.7)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31(12.7)	1(2.6)
	거의없음/전혀없음	208(84.9)	35(89.7)
	전체	245(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2(2.5)	7(0.6)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1(1.3)	41(3.8)
	거의없음/전혀없음	77(96.3)	1045(95.6)
	전체	80(100)	1093(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1(9.1)	1(0.4)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0	5(2.0)
	거의없음/전혀없음	10(90.9)	239(97.6)
	전체	11(100)	245(100)

직종	저은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0.5)	3(3.3)
	거의없음 /전혀없음	17(89.5)	86(95.6)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1.8)	3(4.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5.4)	11(16.4)
	거의없음 /전혀없음	52(92.9)	53(79.1)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6(1.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9(9.6)	78(7.0)
	거의없음 /전혀없음	272(90.4)	1028(91.6)
	전체	301(100)	1122(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5)	7(1.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1(5.8)	21(3.6)
	거의없음 /전혀없음	178(93.7)	550(95.2)
	전체	190(100)	578(100)

직종	저은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1.6)	1(0.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9(4.4)	13(2.8)
	거의없음 /전혀없음	405(94.0)	451(97.0)
	전체	431(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5(0.9)	17(1.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6(4.4)	42(2.6)
	거의없음 /전혀없음	555(94.7)	1572(96.4)
	전체	586(100)	1631(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3(1.4)	2(1.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1.4)	3(1.9)
	거의없음 /전혀없음	206(97.2)	155(96.9)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5(4.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8.2)	15(13.5)
	거의없음 /전혀없음	9(81.8)	91(82.0)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연기/가루/먼지 흡입 위험 여부를 살펴보면, 조리사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3.8%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연기/가루/먼지 흡입 위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연기/가루/먼지 흡입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2.0%,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7%, 운송 여가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1.5%로 나타났다.

〈표 III-21〉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연기/가루/먼지 흡입 위험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연기/가루/먼지 흡입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2.8)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2(13.0)	2(5.1)
	거의없음 /전혀없음	207(84.1)	37(94.9)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0.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14(1.3)
	거의없음 /전혀없음	80	1078(98.6)
	전체	80(100)	1093(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9.1)	5(2.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6(2.4)
	거의없음 /전혀없음	10(90.9)	234(95.5)
	전체	11(100)	245(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61

직종	연기/가루/먼지 흡입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5.3)	0
	거의없음 /전혀없음	18(94.7)	90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1.8)	1(1.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3.6)	3(4.5)
	거의없음 /전혀없음	53(94.6)	63(94.0)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2(4.0)	43(3.8)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2(7.3)	71(6.3)
	거의없음 /전혀없음	267(88.7)	1008(89.8)
	전체	301(100)	1122(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1.6)	10(1.7)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3(6.8)	32(5.5)
	거의없음 /전혀없음	170(89.5)	536(92.7)
	전체	190(100)	578(100)

62 ■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종	연기/가루/먼지 흡입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1.6)	1(0.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6(3.7)	7(1.5)
	거의없음 /전혀없음	408(94.7)	457(98.3)
	전체	431(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2)	11(0.7)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7(2.9)	38(2.3)
	거의없음 /전혀없음	567(96.9)	1579(97.0)
	전체	585(100)	1628(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0.9)	1(0.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0.5)	4(2.5)
	거의없음 /전혀없음	209(98.6)	155(96.9)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0.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7(6.3)
	거의없음 /전혀없음	11	103(92.8)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시너유기용제 흡입 위험 여부를 살펴보면, 미용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1.2%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시너유기용제 흡입 위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시너유기용제 흡입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통신 판매 관련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0.6%,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0.5%, 조리사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0.4%로 나타났다.

〈표 III-22〉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시너유기용제 흡입 위험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시너유기용제 흡입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0.8)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5(6.1)	0
	거의없음 /전혀없음	228(93.1)	39
	전체	245(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11(1.0)
	거의없음 /전혀없음	80	1082(99.0)
	전체	80(100)	1093(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3(1.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8(3.3)
	거의없음 /전혀없음	11	234(95.5)
	전체	11(100)	245(100)

64 ■ 성인직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종	시너유기용제 흡입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1(1.1)
	거의없음 /전혀없음	19	89(98.9)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1.8)	1(1.5)
	거의없음 /전혀없음	55(98.2)	66(98.5)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3(1.0)	5(0.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8(2.7)	21(1.9)
	거의없음 /전혀없음	290(96.3)	1096(97.7)
	전체	301(100)	1122(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1)	3(0.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1.6)	13(2.2)
	거의없음 /전혀없음	185(97.4)	562(97.2)
	전체	190(100)	578(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65

직종	시너유기용제 흡입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2)	1(0.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8(1.9)	4(0.9)
	거의없음 /전혀없음	421(97.9)	460(98.9)
	전체	430(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0.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8(1.4)	16(1.0)
	거의없음 /전혀없음	577(98.6)	1611(99.0)
	전체	585(100)	1628(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0.9)	1(0.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0.5)	1(0.6)
	거의없음 /전혀없음	209(98.6)	158(98.8)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1(0.9)
	거의없음 /전혀없음	11	110(99.1)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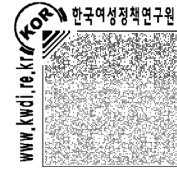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화학제품 접촉 위험 여부를 살펴보면, 미용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6.5%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화학제품 접촉 위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화학제품 접촉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통신 판매 관련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1.3%,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0.7%, 조리사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0.4%로 나타났다.

〈표 III-23〉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화학제품 접촉 위험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화학제품 접촉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4)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5(6.1)	0
	거의없음 /전혀없음	228(93.4)	39
	전체	244(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15(1.4)
	거의없음 /전혀없음	80	1076(98.5)
	전체	80(100)	1092(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6(6.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9.1)	45(18.4)
	거의없음 /전혀없음	10(90.9)	184(75.1)
	전체	11(100)	245(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67

직종	화학제품 접촉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5.3)	0
	거의없음 /전혀없음	18(94.7)	90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2(3.0)
	거의없음 /전혀없음	56	65(97.0)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3)	4(0.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2.0)	34(3.0)
	거의없음 /전혀없음	294(97.7)	1083(96.6)
	전체	301(100)	1121(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5)	4(0.7)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1.6)	9(1.6)
	거의없음 /전혀없음	186(97.9)	565(97.8)
	전체	190(100)	578(100)



직종	화학제품 접촉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0.5)	1(0.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7(1.6)	3(0.6)
	거의없음 /전혀없음	421(97.9)	461(99.1)
	전체	430(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0.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7(1.2)	16(1.0)
	거의없음 /전혀없음	578(98.8)	1612(99.0)
	전체	585(100)	1629(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0.9)	2(1.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0.5)	1(0.6)
	거의없음 /전혀없음	209(98.6)	157(98.1)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1(0.9)
	거의없음 /전혀없음	11	110(99.1)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피곤 통증 자세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미용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29.4%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피곤 통증 자세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피곤 통증 자세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조리사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25.2%,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24.0%, 매장판매/상품대여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17.3%로 나타났다.

〈표 III-24〉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피곤 통증 자세 노출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피곤통증자세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5(10.2)	6(15.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4(17.9)	9(23.1)
	거의없음 /전혀없음	177(72.0)	24(61.5)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2.5)	199(10.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9(23.8)	339(31.0)
	거의없음 /전혀없음	59(73.8)	637(58.2)
	전체	80(100)	1095(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36.4)	72(29.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36.4)	63(25.7)
	거의없음 /전혀없음	3(27.3)	110(44.9)
	전체	11(100)	245(100)

70 ■ 성인직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종	피곤통증자세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0.5)	5(5.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15.8)	10(11.1)
	거의없음 /전혀없음	14(73.7)	75(83.3)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12.5)	10(14.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9(16.1)	23(34.3)
	거의없음 /전혀없음	40(71.4)	34(50.7)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64(21.3)	283(25.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89(29.6)	299(26.6)
	거의없음 /전혀없음	148(49.2)	540(48.1)
	전체	301(100)	1122(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8(14.7)	139(24.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5(34.2)	122(21.1)
	거의없음 /전혀없음	97(51.1)	317(54.8)
	전체	190(100)	578(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71

직종	피곤통증자세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7(3.9)	13(2.8)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2(14.4)	46(9.9)
	거의없음 /전혀없음	352(81.7)	406(87.3)
	전체	431(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4(12.6)	282(17.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33(22.7)	293(18.0)
	거의없음 /전혀없음	379(64.7)	1057(64.8)
	전체	586(100)	1632(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4.7)	10(6.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0(18.9)	24(15.0)
	거의없음 /전혀없음	162(76.4)	126(78.8)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36.4)	15(13.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27.3)	22(19.8)
	거의없음 /전혀없음	4(36.4)	74(66.7)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업무 중 사람 이동 경험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돌봄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9.0%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사람 이동 경험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사람 이동 경험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미용사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3.3%,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2.6%, 운송 여가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5%로 나타났다.

〈표 III-25〉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사람 이동 노출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사람 이동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10(4.1)	1(2.6)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31(12.6)	3(7.7)
	거의없음/전혀없음	205(83.3)	35(89.7)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11(13.8)	99(9.0)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31(38.8)	470(42.9)
	거의없음/전혀없음	38(47.5)	526(48.0)
	전체	80(100)	1095(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1(9.1)	8(3.3)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0	19(7.8)
	거의없음/전혀없음	10(90.9)	217(88.9)
	전체	11(100)	244(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73

직종	사람 이동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5.3)	1(1.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0.5)	4(4.4)
	거의없음 /전혀없음	16(84.2)	85(94.4)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1.8)	1(1.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7.1)	4(6.0)
	거의없음 /전혀없음	51(91.1)	62(92.5)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1.3)	20(1.8)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6(5.3)	53(4.7)
	거의없음 /전혀없음	280(93.3)	1045(93.5)
	전체	300(100)	1118(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8(1.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0(5.3)	17(2.9)
	거의없음 /전혀없음	180(94.7)	553(95.7)
	전체	190(100)	578(100)

직종	사람 이동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5(1.2)	1(0.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2(2.8)	4(0.9)
	거의없음 /전혀없음	414(96.1)	460(98.9)
	전체	431(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1.2)	22(1.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3(3.9)	58(3.6)
	거의없음 /전혀없음	556(94.9)	1550(95.1)
	전체	586(100)	1630(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0.9)	1(0.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2.8)	4(2.5)
	거의없음 /전혀없음	203(96.2)	155(96.9)
	전체	211(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8.2)	1(0.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0	8(7.2)
	거의없음 /전혀없음	9(81.8)	102(91.9)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업무 중 무거운 물건 이동 경험 노출 여부를 살펴 보면,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4.2%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무거운 물건 이동 경험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무거운 물건 이동 경험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운송/여가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9.0%, 조리사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8.4%,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5.1%로 나타났다.

〈표 III-26〉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무거운 물건 이동 노출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무거운 물건 이동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8(3.3)	2(5.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1(16.7)	3(7.7)
	거의없음 /전혀없음	197(80.1)	34(87.2)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2.5)	19(1.7)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3(16.3)	182(16.6)
	거의없음 /전혀없음	65(81.3)	893(81.6)
	전체	80(100)	1094(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9.1)	10(4.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8.2)	27(11.1)
	거의없음 /전혀없음	8(72.7)	207(84.8)
	전체	11(100)	244(100)

직종	무거운 물건 이동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5.3)	3(3.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15.8)	5(5.6)
	거의없음 /전혀없음	15(78.9)	82(91.1)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3.6)	6(9.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8(14.3)	21(31.3)
	거의없음 /전혀없음	46(82.1)	40(59.7)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3(4.3)	94(8.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10(36.7)	420(37.5)
	거의없음 /전혀없음	177(59.0)	606(54.1)
	전체	300(100)	1120(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8(9.5)	82(14.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79(41.6)	206(35.6)
	거의없음 /전혀없음	93(48.9)	290(50.2)
	전체	190(100)	578(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77

직종	무거운 물건 이동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4.9)	4(0.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81(18.8)	16(3.4)
	거의없음 /전혀없음	329(76.3)	446(95.7)
	전체	431(100)	466(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9(8.4)	80(4.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60(44.5)	556(34.1)
	거의없음 /전혀없음	275(47.1)	996(61.0)
	전체	584(100)	1632(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1.9)	4(2.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7(8.1)	7(4.4)
	거의없음 /전혀없음	190(90.0)	149(93.1)
	전체	211(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9.1)	5(4.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27.3)	33(29.7)
	거의없음 /전혀없음	7(63.3)	73(65.8)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의 계속 서 있는 자세 경험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조리사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5.9%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계속 서 있는 자세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계속 서 있는 자세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3.9%, 매장 판매/상품 대여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68.6%,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54.3%로 나타났다.

〈표 III-27〉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계속 서 있는 자세 노출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계속 서있는 자세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62(25.2)	12(30.8)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02(41.5)	11(28.2)
	거의없음 /전혀없음	82(33.3)	16(41.0)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4(30.0)	211(19.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7(46.3)	577(52.7)
	거의없음 /전혀없음	19(23.8)	306(28.0)
	전체	80(100)	1094(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9(81.8)	133(54.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8.2)	49(20.0)
	거의없음 /전혀없음	0	63(52.7)
	전체	11(100)	245(100)

직종	계속 서있는 자세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6(31.6)	14(15.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9(47.4)	32(35.6)
	거의없음 /전혀없음	4(21.1)	44(48.9)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0(35.7)	35(52.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3(41.1)	24(35.8)
	거의없음 /전혀없음	13(23.2)	8(11.9)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23(74.3)	852(75.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57(19.0)	225(20.0)
	거의없음 /전혀없음	20(6.7)	46(4.1)
	전체	300(100)	1123(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35(71.1)	428(73.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7(24.7)	118(20.4)
	거의없음 /전혀없음	8(4.2)	33(5.7)
	전체	190(100)	579(100)



직종	계속 서있는 자세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60(13.9)	47(10.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92(44.5)	156(33.5)
	거의없음 /전혀없음	179(41.5)	262(56.3)
	전체	431(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334(57.0)	1120(68.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90(32.4)	395(24.2)
	거의없음 /전혀없음	62(10.6)	118(7.2)
	전체	586(100)	1633(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1(19.3)	13(8.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00(47.2)	51(31.9)
	거의없음 /전혀없음	71(33.5)	96(60.0)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63.6)	59(53.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36.4)	18(16.2)
	거의없음 /전혀없음	0	34(30.6)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의 앉아있는 자세 경험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통신 판매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5.0%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앉아있는 자세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앉아있는 자세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35.9%, 혼례장례/기타돌봄보건의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34.4%, 영업 여성 종사자 중 32.4%로 나타났다.

〈표 III-28〉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앉아있는 자세 노출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앉아있는 자세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93(37.8)	14(35.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09(44.3)	14(35.9)
	거의없음 /전혀없음	44(17.9)	11(28.2)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의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5(18.8)	166(15.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7(58.8)	658(60.1)
	거의없음 /전혀없음	18(22.5)	270(24.7)
	전체	80(100)	1094(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9.1)	64(26.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54.5)	95(38.8)
	거의없음 /전혀없음	4	86(35.1)
	전체	11(100)	245(100)

직종	앉아있는 자세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9(47.4)	31(34.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31.6)	39(43.3)
	거의없음 /전혀없음	4(21.1)	20(22.2)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17.9)	14(20.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2(57.1)	26(38.8)
	거의없음 /전혀없음	14(25.0)	27(40.3)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3(4.3)	44(3.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12(37.3)	450(40.2)
	거의없음 /전혀없음	175(58.3)	625(55.9)
	전체	300(100)	1119(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5(2.6)	34(5.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74(38.9)	228(39.6)
	거의없음 /전혀없음	111(58.4)	314(54.5)
	전체	190(100)	576(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83

직종	앉아있는 자세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30(30.3)	151(32.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24(52.2)	202(43.3)
	거의없음 /전혀없음	75(17.5)	113(24.2)
	전체	429(100)	466(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65(11.1)	164(10.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15(53.8)	792(48.6)
	거의없음 /전혀없음	206(35.2)	675(41.4)
	전체	586(100)	1631(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132(62.3)	120(75.0)
	거의 모든 시간	61(28.8)	33(20.6)
	근무시간 3/4	19(9.0)	7(4.4)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9.1)	17(15.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5(45.5)	44(39.6)
	거의없음 /전혀없음	5(45.5)	50(45.0)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의 반복 손 팔 동작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63.3%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반복 손 팔 동작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반복 손 팔 동작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식음료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55.9%,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47.7%, 매장 판매/상품 대여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37.2%로 나타났다.

〈표 III-29〉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반복 손 팔 동작 노출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반복손팔동작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54(22.0)	14(35.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58(23.6)	9(23.1)
	거의없음 /전혀없음	134(54.5)	16(41.0)
	전체	246(100)	39(100)
돌본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26.3)	285(26.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5(18.8)	281(25.7)
	거의없음 /전혀없음	44(55.0)	526(48.2)
	전체	80(100)	1092(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63.6)	155(63.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8.2)	48(19.6)
	거의없음 /전혀없음	2(18.2)	42(17.1)
	전체	11(100)	245(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85

직종	반복손팔동작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6(31.6)	15(16.7)
	거의 모든 시간	3(15.8)	25(27.8)
	근무시간 3/4	10(52.6)	50(55.6)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6(10.7)	18(27.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8(32.1)	15(22.7)
	거의없음 /전혀없음	32(57.1)	33(50.0)
	전체	56(100)	66(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65(55.0)	627(55.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82(27.3)	267(23.8)
	거의없음 /전혀없음	53(17.7)	227(20.2)
	전체	300(100)	1121(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67(35.3)	275(47.7)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50(26.3)	118(20.5)
	거의없음 /전혀없음	73(38.4)	183(31.8)
	전체	190(100)	576(100)

직종	반복손팔동작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0(16.3)	88(18.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00(23.3)	89(19.1)
	거의없음 /전혀없음	259(60.4)	289(62.0)
	전체	429(100)	466(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73(29.6)	607(37.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81(30.9)	411(25.2)
	거의없음 /전혀없음	231(39.5)	613(37.6)
	전체	585(100)	1631(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0(33.0)	51(31.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7(22.2)	41(25.6)
	거의없음 /전혀없음	95(44.8)	68(42.5)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8.2)	23(20.7)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36.4)	24(21.6)
	거의없음 /전혀없음	5(45.5)	64(57.7)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의 고객/환자/학생 상대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5.1%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고객/환자/학생 상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고객/환자/학생 상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운송/여가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73.1%, 매장 판매/상품 대여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71.5%,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1.5%로 나타났다.

〈표 III-30〉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고객/환자/학생 상대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고객환자학생상대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99(40.2)	17(43.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6(26.8)	6(15.4)
	거의없음 /전혀없음	81(32.9)	16(41.0)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47(58.8)	711(65.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9(11.3)	96(8.8)
	거의없음 /전혀없음	24(30.0)	285(26.1)
	전체	80(100)	1092(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8(72.7)	184(75.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18.2)	22(9.0)
	거의없음 /전혀없음	1(9.1)	39(15.9)
	전체	11(100)	245(100)

직종	고객환자학생상대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3(68.4)	56(62.2)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21.1)	9(10.0)
	거의없음 /전혀없음	2(10.5)	25(27.8)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34(60.7)	49(73.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7(12.5)	10(14.9)
	거의없음 /전혀없음	15(26.8)	8(11.9)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98(32.9)	444(39.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0(20.1)	220(19.6)
	거의없음 /전혀없음	140(47.0)	457(40.8)
	전체	298(100)	1121(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26(66.3)	414(71.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4(12.6)	62(10.7)
	거의없음 /전혀없음	40(21.1)	103(17.8)
	전체	190(100)	579(100)

직종	고객환자학생상대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4(49.8)	264(56.8)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05(24.4)	95(20.4)
	거의없음 /전혀없음	111(25.8)	106(22.8)
	전체	430(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396(67.8)	1168(71.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84(14.4)	185(11.3)
	거의없음 /전혀없음	104(17.8)	280(17.1)
	전체	584(100)	1633(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39(65.6)	86(53.8)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9(18.4)	26(16.3)
	거의없음 /전혀없음	34(16.0)	48(30.0)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9(90.0)	72(64.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10.0)	13(11.7)
	거의없음 /전혀없음	0	26(23.4)
	전체	10(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의 화가 난 고객/환자/학생 상대 노출 여부를 살펴 보면,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5.4%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화가 난 고객/환자/학생 상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화가 난 고객/환자/학생 상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운송/여가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14.9%, 돌봄 및 보건 관련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10.5%, 통신 판매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5%로 나타났다.

〈표 III-31〉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화가 난 고객/환자/학생 상대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화가난고객환자학생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 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35(14.2)	6(15.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3(25.6)	10(25.6)
	거의없음 /전혀없음	148(60.2)	23(59.0)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 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3(16.3)	115(10.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5(18.8)	235(21.5)
	거의없음 /전혀없음	52(65.0)	742(67.9)
	전체	80(100)	1092(100)
마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16(6.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36.4)	35(14.3)
	거의없음 /전혀없음	7(63.6)	193(79.1)
	전체	11(100)	244(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91

직종	화가난고객환자학생	남성	여성
훈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1.1)	3(3.3)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5(27.8)	10(11.1)
	거의없음 /전혀없음	11(61.1)	77(85.6)
	전체	18(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12.5)	10(14.9)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10.7)	14(20.9)
	거의없음 /전혀없음	43(76.8)	43(64.2)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2.3)	38(3.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9(9.7)	109(9.8)
	거의없음 /전혀없음	263(88.0)	970(86.8)
	전체	299(100)	1117(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7(3.7)	26(4.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42(22.2)	112(19.5)
	거의없음 /전혀없음	140(74.1)	436(76.0)
	전체	189(100)	574(100)

92 ■ 성인직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종	화가난고객환자학생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6(3.7)	33(7.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59(13.7)	87(18.8)
	거의없음 /전혀없음	355(82.6)	343(74.1)
	전체	430(100)	463(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7(2.9)	89(5.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17(20.0)	308(18.9)
	거의없음 /전혀없음	451(77.1)	1233(75.6)
	전체	585(100)	1630(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5(7.1)	12(7.5)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7(17.5)	32(20.0)
	거의없음 /전혀없음	159(75.4)	116(72.5)
	전체	211(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20.0)	13(11.7)
	거의없음 /전혀없음	8(80.0)	98(88.3)
	전체	10(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의 정서적 불안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2.8%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정서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정서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내 주요 직종은 통신 판매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3.1%, 돌봄 및 보건 관련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2.7%, 영업 종사자 중 2.4%로 나타났다.

〈표 III-32〉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정서적 불안 경험 여부(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정서적 불안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13(5.3)	5(12.8)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57(23.3)	4(10.3)
	거의없음/전혀없음	175(71.4)	30(76.9)
	전체	245(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2(2.5)	30(2.7)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9(11.3)	220(20.1)
	거의없음/전혀없음	69(86.3)	843(77.1)
	전체	80(100)	1093(100)
미용관련서비스	근무시간 내내/거의모든시간/근무시간3/4	0	4(1.6)
	근무시간절반/근무시간1/4	1(9.1)	34(13.9)
	거의없음/전혀없음	10(90.9)	206(84.4)
	전체	11(100)	244(100)

94 ■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종	정서적 불안	남성	여성
혼례장례/기타돌봄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5.6)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5.6)	6(6.7)
	거의없음 /전혀없음	16(88.9)	84(93.3)
	전체	18(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1(1.8)	0
	거의 모든 시간	8(14.3)	12(17.9)
	근무시간 3/4	47(83.9)	55(82.1)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1(0.3)	19(1.7)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3(7.7)	82(7.4)
	거의없음 /전혀없음	275(92.0)	1011(90.9)
	전체	299(100)	1112(100)
식음료서비스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2(1.1)	9(1.6)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0(10.5)	59(10.3)
	거의없음 /전혀없음	168(88.4)	505(88.1)
	전체	190(100)	573(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95

직종	정서적 불안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5(1.2)	11(2.4)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35(8.1)	69(14.9)
	거의없음 /전혀없음	390(90.7)	383(82.7)
	전체	430(100)	463(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8(1.4)	30(1.8)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62(10.6)	162(10.0)
	거의없음 /전혀없음	515(88.0)	1436(88.2)
	전체	585(100)	1628(100)
통신관련판매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8(3.8)	5(3.1)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19(9.0)	15(9.4)
	거의없음 /전혀없음	184(87.2)	140(87.5)
	전체	211(100)	160(100)
방문/노점판매 관련직	근무시간 내내 /거의모든시간 /근무시간3/4	0	0
	근무시간절반 /근무시간1/4	2(20.0)	10(9.0)
	거의없음 /전혀없음	8(80.0)	101(91.0)
	전체	10(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4)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질환 현황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 동안 요통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요통 경험 비율이 45.3%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통 질환 경험이 있는 주요 서비스직 내 직종은 혼례/장례/기타 돌봄 관련 여성 근로자 중 41.1%,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39.8%,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여성 근로자 중 3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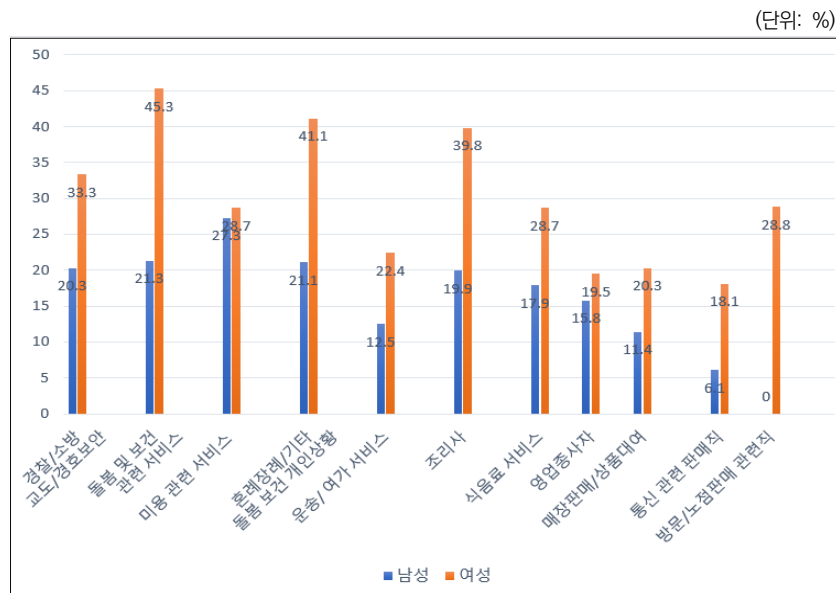
〈표 III-33〉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요통(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요통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있다	50(20.3)	13(33.3)
	없다	196(79.7)	26(66.7)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있다	17(21.3)	496(45.3)
	없다	63(78.8)	598(54.7)
	전체	80(100)	1094(100)
미용관련서비스	있다	3(27.3)	70(28.7)
	없다	8(72.7)	174(71.3)
	전체	11(100)	244(100)
혼례장례/기타돌봄	있다	4(21.1)	37(41.1)
	없다	15(78.9)	53(58.9)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있다	7(12.5)	15(22.4)
	없다	49(87.5)	52(77.6)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있다	60(19.9)	447(39.8)
	없다	241(80.1)	675(60.2)
	전체	301(100)	1122(100)
식음료 서비스	있다	34(17.9)	166(28.7)
	없다	156(82.1)	413(71.3)
	전체	190(100)	579(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97

직종	요동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있다	68(15.8)	91(19.5)
	없다	362(84.2)	375(80.5)
	전체	430(100)	466
매장판매/상품대여	있다	67(11.4)	311(20.3)
	없다	519(88.6)	1300(79.7)
	전체	586(100)	1631(100)
통신관련판매직	있다	13(6.1)	29(18.1)
	없다	199(93.9)	131(81.9)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있다	0	32(28.8)
	없다	11	79(71.2)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8]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요동(6차 조사, 2020)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 동안 상지근육통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상지근육통 경험 비율이 50.1%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지근육통 질환 경험이 있는 주요 서비스직 내 직종은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48.8%,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45.1%,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39.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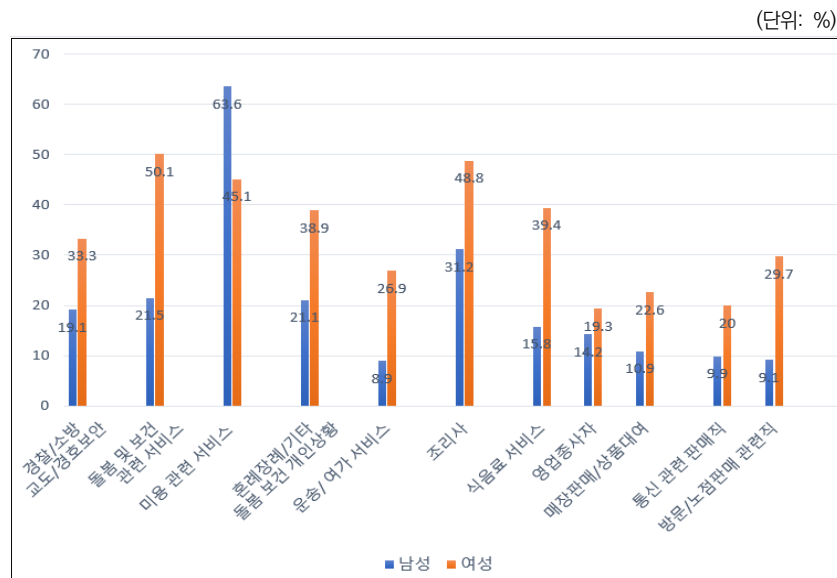
〈표 III-34〉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상지근육통(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상지근육통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있다	47(19.1)	13(33.3)
	없다	199(80.9)	26(66.7)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있다	17(21.5)	548(50.1)
	없다	62(78.5)	546(49.9)
	전체	79(100)	1094
미용관련서비스	있다	7(63.6)	110(45.1)
	없다	4(36.4)	134(54.9)
	전체	11(100)	244(100)
훈례장례/기타돌봄	있다	4(21.1)	35(38.9)
	없다	15(78.9)	55(61.1)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있다	5(8.9)	18(26.9)
	없다	51(91.1)	49(73.1)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있다	94(31.2)	547(48.8)
	없다	207(68.8)	573(51.2)
	전체	301(100)	1120(100)
식음료 서비스	있다	30(15.8)	228(39.4)
	없다	160(84.2)	351(60.6)
	전체	190(100)	579(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99

직종	상지근육통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있다	61(14.2)	90(19.3)
	없다	369(85.8)	376(80.7)
	전체	430(100)	466(100)
매장판매/상품대여	있다	64(10.9)	368(22.6)
	없다	522(89.1)	1263(77.4)
	전체	586(100)	1631(100)
통신관련판매직	있다	21(9.9)	32(20.0)
	없다	191(90.1)	128(80.0)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있다	1(9.1)	33(29.7)
	없다	10(90.9)	78(70.3)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9]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상지근육통(6차 조사, 2020)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 동안 하지근육통 경험 여부를 살펴 보면, 혼례/장례/기타 돌봄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하지근육통 경험 비율이 27.8%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지근육통 질환 경험이 있는 주요 서비스직 내 직종은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27.5%,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26.4%,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여성 근로자 중 23.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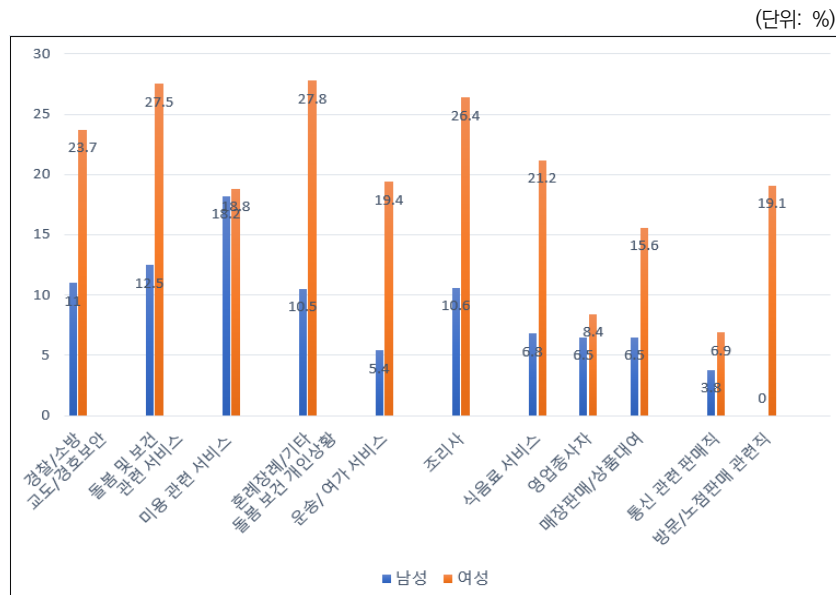
〈표 III-35〉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하지근육통(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하지근육통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있다	27(11.0)	9(23.7)
	없다	219(89.0)	29(76.3)
	전체	246(100)	38(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있다	10(12.5)	301(27.5)
	없다	70(87.5)	793(72.5)
	전체	80(100)	1094(100)
미용관련서비스	있다	2(18.2)	46(18.8)
	없다	9(81.8)	199(81.2)
	전체	11(100)	245(100)
혼례장례/기타돌봄	있다	2(10.5)	25(27.8)
	없다	17(89.5)	65(72.2)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있다	3(5.4)	13(19.4)
	없다	53(94.6)	54(80.6)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있다	32(10.6)	297(26.4)
	없다	269(89.4)	826(73.6)
	전체	301(100)	1123(100)
식음료 서비스	있다	13(6.8)	123(21.2)
	없다	177(93.2)	456(78.8)
	전체	190(100)	579(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101

직종	하지근육통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있다	28(6.5)	39(8.4)
	없다	402(93.2)	427(91.6)
	전체	430(100)	466(100)
매장판매/상품대여	있다	38(6.5)	254(15.6)
	없다	548(93.5)	1379(84.4)
	전체	586(100)	1633(100)
통신관련판매직	있다	8(3.8)	11(6.9)
	없다	204(96.2)	149(93.1)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있다	0	21(19.1)
	없다	11	89(80.9)
	전체	11(100)	110(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10]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하지근육통(6차 조사, 2020)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 동안 두통/눈 피로 경험 여부를 살펴 보면,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두통/눈 피로 경험 비율이 33.3%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통/눈 피로 경험이 있는 주요 서비스직 내 직종은 영업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22.8%, 통신 판매 관련 여성 근로자 중 20.0%, 운송/여가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9.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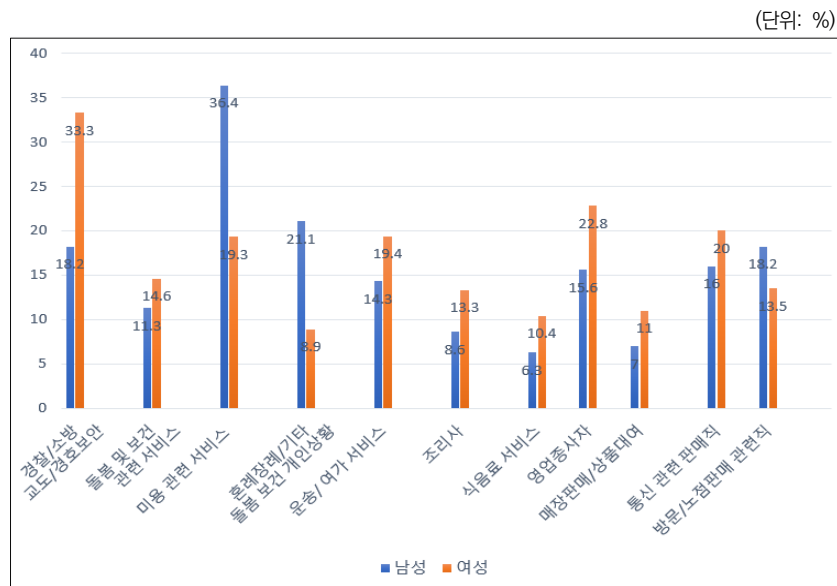
〈표 III-36〉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두통/눈 피로(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두통/눈 피로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있다	46(18.2)	13(33.3)
	없다	200(81.3)	26(66.7)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있다	9(11.3)	160(14.6)
	없다	71(88.8)	933(85.4)
	전체	80(100)	1093(100)
미용관련서비스	있다	4(36.4)	47(19.3)
	없다	7(63.6)	197(80.7)
	전체	11(100)	244(100)
흔레장레/기타돌봄	있다	4(21.1)	8(8.9)
	없다	15(78.9)	82(91.1)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있다	8(14.3)	13(19.4)
	없다	48(85.7)	54(80.6)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있다	26(8.6)	149(13.3)
	없다	275(91.4)	973(86.7)
	전체	301(100)	1122(100)
식음료 서비스	있다	12(6.3)	60(10.4)
	없다	178(93.7)	519(89.6)
	전체	190(100)	579(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103

직종	두통/눈 피로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있다	67(15.6)	106(22.8)
	없다	363(84.4)	359(77.2)
	전체	430(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있다	41(7.0)	180(11.0)
	없다	545(93.0)	1450(89.0)
	전체	586(100)	1630(100)
통신관련판매직	있다	34(16.0)	32(20.0)
	없다	178(84.0)	128(80.0)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있다	2(18.2)	15(13.5)
	없다	9(81.8)	96(86.5)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11]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두통/눈 피로(6차 조사, 2020)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 동안 전신 피로 경험 여부를 살펴 보면,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전신 피로 경험 비율이 41.0%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신 피로 경험이 있는 주요 서비스직 내 직종은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31.2%,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31.2%, 방문/노점 판매 관련 여성 근로자 중 28.8%,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27.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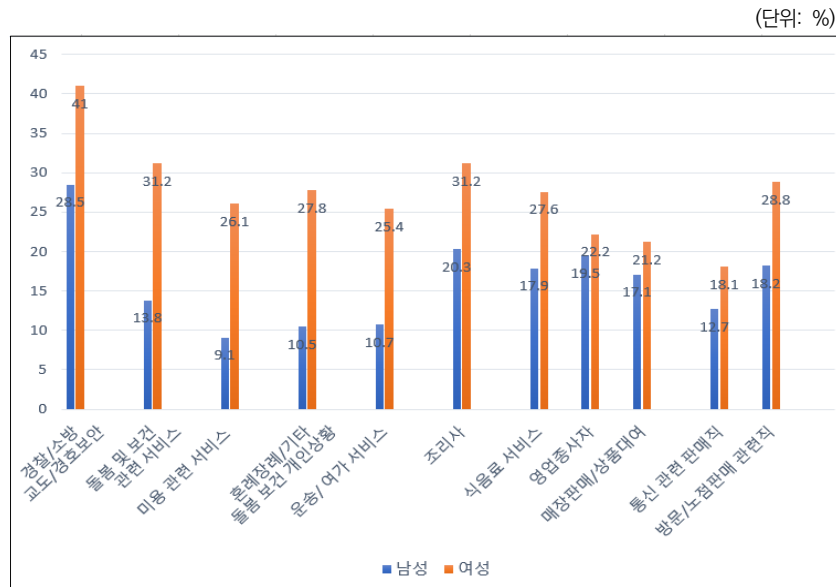
〈표 Ⅲ-37〉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전신 피로(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전신 피로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있다	70(28.5)	16(41.0)
	없다	176(71.5)	23(59.0)
	전체	246(100)	39(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있다	11(13.8)	341(31.2)
	없다	69(86.3)	752(68.8)
	전체	80(100)	1093(100)
미용관련서비스	있다	1(9.1)	64(26.1)
	없다	10(90.9)	181(73.9)
	전체	11(100)	245(100)
흔레장례/기타돌봄	있다	2(10.5)	25(27.8)
	없다	17(89.5)	65(72.2)
	전체	19(100)	90(100)
운송/여가서비스	있다	6(10.7)	17(25.4)
	없다	50(89.3)	50(74.6)
	전체	56(100)	67(100)
조리사	있다	61(20.3)	349(31.2)
	없다	240(79.7)	771(68.8)
	전체	301(100)	1120(100)
식음료 서비스	있다	34(17.9)	160(27.6)
	없다	15(82.1)	419(72.4)
	전체	190(100)	579(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105

직종	전신 피로	남성	여성
영업종사자	있다	84(19.5)	103(22.2)
	없다	346(80.5)	362(77.8)
	전체	430(100)	465(100)
매장판매/상품대여	있다	100(17.1)	346(21.2)
	없다	486(82.9)	1286(78.8)
	전체	586(100)	1632(100)
통신관련판매직	있다	27(12.7)	29(18.1)
	없다	185(87.3)	131(81.9)
	전체	212(100)	160(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있다	2(18.2)	32(28.8)
	없다	9(82.8)	79(71.2)
	전체	11(100)	11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Ⅲ-12]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 전신 피로(6차 조사, 2020)

요통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근로자 중 요통이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직종별 전체 케이스 숫자가 100명 이상인 직종에서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요통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8%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통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주요 직종은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9.9%, 매장 판매/상품 대여 여성 근로자 중 73.9%로 나타났다.

〈표 III-38〉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과 업무상 관련 여부:
요통(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건강문제의 업무상 관련여부 요통(허리통증)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그렇다	34(68.0)	6(46.2)
	아니다	16(32.0)	7(53.8)
	전체	50(100)	13(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그렇다	8(50.0)	334(67.6)
	아니다	8(50.0)	160(32.4)
	전체	16(100)	494(100)
미용관련서비스	그렇다	2(66.7)	57(82.6)
	아니다	1(33.3)	12(17.4)
	전체	3(100)	69(100)
흔레장례/기타돌봄	그렇다	2(50.0)	7(18.9)
	아니다	2(50.0)	30(81.1)
	전체	4(100)	37(100)
운송/여가서비스	그렇다	3(42.9)	12(80.0)
	아니다	4(57.1)	3(20.0)
	전체	7(100)	15(100)
조리사	그렇다	51(85.0)	364(81.8)
	아니다	9(15.0)	81(18.2)
	전체	60(100)	445(100)

III.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 107

직종	건강문제의 업무상 관련여부 요통(허리통증)	남성	여성
식음료 서비스	그렇다	26(76.5)	131(79.9)
	아니다	8(23.5)	33(20.1)
	전체	34(100)	164(100)
영업종사자	그렇다	47(70.1)	46(50.5)
	아니다	20(29.9)	45(49.5)
	전체	67(100)	91(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그렇다	53(79.1)	244(73.9)
	아니다	14(20.9)	86(26.1)
	전체	67(100)	330(100)
통신관련판매직	그렇다	9(69.2)	18(64.3)
	아니다	4(30.8)	10(35.7)
	전체	13(100)	28(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그렇다	-	19(59.4)
	아니다	-	13(40.6)
	전체	-	32(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상지근육통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근로자 중 상지근육통이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직종별 전체 케이스 숫자가 100명 이상인 직종에서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상지근육통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7%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지근육통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주요 직종은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86.6%,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85.5%,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3.3%로 나타났다.

〈표 III-39〉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과 업무상 관련 여부:
상지근육통(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건강문제의 업무상 관련여부 요통(허리통증)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그렇다	35(74.5)	8(61.5)
	아니다	12(25.5)	5(39.5)
	전체	47(100)	13(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그렇다	11(64.7)	400(73.3)
	아니다	6(35.3)	146(26.7)
	전체	17(100)	546(100)
미용관련서비스	그렇다	6(85.7)	102(92.7)
	아니다	1(14.3)	8(7.3)
	전체	7(100)	110(100)
흔레장례/기타돌봄	그렇다	2(50.0)	7(20.0)
	아니다	2(50.0)	28(80.0)
	전체	4(100)	35(100)
운송/여가서비스	그렇다	3(60.0)	16(88.9)
	아니다	2(40.0)	2(11.1)
	전체	5(100)	18(100)
조리사	그렇다	86(91.5)	472(86.6)
	아니다	8(8.5)	73(13.4)
	전체	94(100)	545(100)
식음료 서비스	그렇다	23(76.7)	194(85.5)
	아니다	7(23.3)	33(14.5)
	전체	30(100)	227(100)
영업종사자	그렇다	43(70.5)	49(54.4)
	아니다	18(29.5)	41(45.6)
	전체	61(100)	90(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그렇다	52(81.3)	290(79.0)
	아니다	12(18.8)	77(21.0)
	전체	64(100)	367(100)

직종	건강문제의 업무상 관련여부 요통(허리통증)	남성	여성
통신관련판매직	그렇다	18(85.7)	25(78.1)
	아니다	3(14.3)	7(21.9)
	전체	21(100)	32(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그렇다	0(0.0)	21(63.6)
	아니다	1(100.0)	12(36.4)
	전체	1(100)	33(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하지근육통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근로자 중 하지근육통이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직종별 전체 케이스 숫자가 100명 이상인 직종에서 매장 판매/상품 대여 관련 여성 근로자 중 하지근육통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0%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지근육통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주요 직종은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82.4%,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9.7%,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61.7%로 나타났다.

〈표 III-40〉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과 업무상 관련 여부:
하지근육통(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건강문제의 업무상 관련여부 하지근육통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그렇다	19(70.4)	4(44.4)
	아니다	8(29.6)	5(55.6)
	전체	27(100)	9(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그렇다	6(60.0)	185(61.7)
	아니다	4(40.0)	115(38.3)
	전체	10(100)	300(100)

110 ■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종	건강문제의 업무상 관련여부 하지근육통	남성	여성
미용관련서비스	그렇다	2	35(77.8)
	아니다	0	10(22.2)
	전체	2(100)	45(100)
훈례장례/기타돌봄	그렇다	0	4(16.0)
	아니다	2	21(84.0)
	전체	2(100)	25(100)
운송/여가서비스	그렇다	2(66.7)	8(61.5)
	아니다	1(33.3)	5(38.5)
	전체	3(100)	13(100)
조리사	그렇다	28(87.5)	244(82.4)
	아니다	4(12.5)	52(17.6)
	전체	32(100)	296(100)
식음료 서비스	그렇다	8(61.5)	98(79.7)
	아니다	5(38.5)	25(20.3)
	전체	13(100)	123(100)
영업종사자	그렇다	19(67.9)	22(56.4)
	아니다	9(32.1)	17(43.6)
	전체	28(100)	39(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그렇다	28(75.7)	216(85.0)
	아니다	9(24.3)	38(15.0)
	전체	37(100)	254(100)
통신관련판매직	그렇다	5(62.5)	7(63.6)
	아니다	3(37.5)	4(36.4)
	전체	8(100)	11(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그렇다	-	16(76.2)
	아니다	-	5(23.8)
	전체	-	2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두통/눈 피로가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근로자 중 두통/눈 피로가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직종별 전체 케이스 숫자가 100명 이상인 직종에서 영업 관련 여성 근로자 중 두통/눈 피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2%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통/눈 피로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주요 직종은 돌봄 및 보건 관련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72.5%,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61.9%로 나타났다.

〈표 III-41〉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과 업무상 관련 여부:
두통, 눈 피로(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건강문제의 업무상 관련여부 두통, 눈 피로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그렇다	38(82.6)	10(76.9)
	아니다	8(17.4)	3(23.1)
	전체	46(100)	13(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그렇다	3(33.3)	99(61.9)
	아니다	6(66.7)	61(38.1)
	전체	9(100)	160(100)
미용관련서비스	그렇다	3(75.0)	36(76.6)
	아니다	1(25.0)	11(23.4)
	전체	4(100)	47(100)
혼례장례/기타돌봄	그렇다	2(66.7)	1(12.5)
	아니다	1(33.3)	7(87.5)
	전체	3(100)	8(100)
운송/여가서비스	그렇다	3(37.5)	10(76.9)
	아니다	5(62.5)	3(23.1)
	전체	8(100)	13(100)
조리사	그렇다	22(84.6)	108(72.5)
	아니다	4(15.4)	41(27.5)
	전체	26(100)	149(100)

직종	건강문제의 업무상 관련여부 두통, 눈 피로	남성	여성
식음료 서비스	그렇다	5(41.7)	36(61.0)
	아니다	7(58.3)	23(39.0)
	전체	12(100)	59(100)
영업종사자	그렇다	47(71.2)	85(80.2)
	아니다	19(28.8)	21(19.8)
	전체	66(100)	106(100)
매장판매/상품대여	그렇다	26(65.0)	119(66.1)
	아니다	14(35.0)	61(33.9)
	전체	40(100)	180(100)
통신관련판매직	그렇다	24(70.6)	29(90.6)
	아니다	10(29.4)	3(9.4)
	전체	34(100)	32(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그렇다	1(50.0)	10(66.7)
	아니다	1(50.0)	5(33.3)
	전체	2(100)	15(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전신 피로가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직 근로자 중 전신 피로가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직종별 전체 케이스 숫자가 100명 이상인 직종에서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전신 피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2%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신 피로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주요 서비스직 내 직종은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84.4%, 매장 판매/상품 대여 여성 근로자 중 79.7%,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77.9%로 나타났다.

〈표 III-42〉 성별 서비스직 내 근로자 지난 1년 질환과 업무상 관련 여부:
전신 피로(6차 조사, 2020)

(단위: 명, %)

직종	건강문제의 업무상 관련여부 전신피로	남성	여성
경찰/소방/교도/경호보안	그렇다	58(82.9)	12(75.0)
	아니다	12(17.1)	4(25.0)
	전체	70(100)	16(100)
돌봄및보건관련서비스	그렇다	9(81.8)	265(77.9)
	아니다	2(18.2)	75(22.1)
	전체	11(100)	340(100)
미용관련서비스	그렇다	1	58(90.6)
	아니다	0	6(9.4)
	전체	1(100)	64(100)
흔레장례/기타돌봄	그렇다	2	7(28.0)
	아니다	0	18(72.0)
	전체	2(100)	25(100)
운송/여가서비스	그렇다	6	15(88.2)
	아니다	1	2(11.8)
	전체	6(100)	17(100)
조리사	그렇다	57(93.4)	306(88.2)
	아니다	4(6.6)	41(11.8)
	전체	61(100)	347(100)
식음료 서비스	그렇다	30(88.2)	135(84.4)
	아니다	4(11.8)	25(15.6)
	전체	34(100)	160(100)
영업종사자	그렇다	74(89.2)	79(76.7)
	아니다	9(10.8)	724(23.3)
	전체	83(100)	103(100)

직종	건강문제의 업무상 관련여부 전신평로	남성	여성
매장판매/상품대여	그렇다	87(87.9)	274(79.7)
	아니다	12(12.1)	70(20.3)
	전체	99(100)	344(100)
통신관련판매직	그렇다	25(92.6)	22(75.9)
	아니다	2(7.4)	7(24.1)
	전체	27(100)	29(100)
방문/노점판매관련직	그렇다	2	24(75.0)
	아니다	0	8(25.0)
	전체	2(100)	32(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2.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산업재해 피해 현황

가.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산업재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재보험패널¹¹⁾을 활용하였다. 산업재해 피해자가 요양 종결 후 노동시장 재진입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관한 조사를 목적으로 코호트 조사 자료인 산재보험패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코호트 조사인 2차 코호트 조사(2018-2022년)를 활용하여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 상황 및 요양이 종결된 후 사회경제적 상황 및 건강 상태를 분석하였다.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중 2017년 요양이 종결된 3,294명 대상 중 서비스직 근로자 255명을 분석하였다. 255명 중 산업재해 피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154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 피해 현황 및 산업재해 피해 후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애주기 후반의 삶의 질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1) 산재보험패널조사 안내. 산재보험패널데이터_안내%20(1).hwp. 접속일 2022.12.8.

나. 분석 결과

산재보험패널 2차 코호트 조사 중 2018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산재보험 요양 종결자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산재보험 요양종결자 여성 중 단순노무 종사자를 제외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분포가 23.5%로 타 직종 종사자의 분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분석된 근로환경조사 분석 대상과 동일하게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표 III-43〉 성별 및 직종별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2018년

(단위: 명, %)

직종	남성	여성
관리자	115(4.2)	2(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8(2.1)	36(6.4)
사무 종사자	93(3.4)	25(4.4)
서비스 종사자	43(1.6)	133(23.5)
판매 종사자	58(2.1)	21(3.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7(2.8)	9(1.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03(47.8)	67(11.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0(15.4)	42(7.4)
단순노무 종사자	561(20.6)	231(40.8)
전체	2728(100)	566(100)

2017년 요양이 종결된 서비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8년 사회인구학 적 및 근로환경 특성을 살펴보았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현재 사회 경제적 지위는 중하층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50대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30대 이하가 48.5%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60대가 27.9%로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7.9%로 나타나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여성 서비스직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 임시적 근로자의 분포가 23.4%로 남성 임시적 근로자의 분포가

11.2%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 측면에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의 분포가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나나, 시간제 근로자의 분포가 17.5%로 남성 시간제 분포가 4.0%로 거의 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종류 측면에서는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민간 및 개인 회사에 근무하는 비율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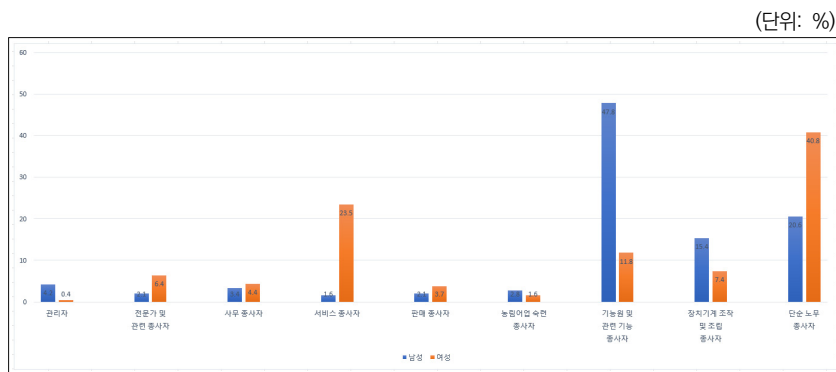
〈표 III-44〉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사회인구학적 및 근로환경 특성: 2018년

(단위: 명, %)

		남성	여성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2(2.0)	0
	중상층	6(5.9)	10(6.5)
	중하층	57(56.4)	100(64.9)
	하층	36(35.6)	44(28.6)
	전체	101(100)	154(100)
연령	30대 이하	49(48.5)	18(11.7)
	40대	24(23.8)	22(14.3)
	50대	20(19.8)	71(46.1)
	60대 이상	8(7.9)	43(27.9)
	전체	101(100)	154(100)
종사상지위	상용직 임금 근로자	83(82.2)	102(66.2)
	임시직 임금 근로자	12(11.9)	36(23.4)
	일용직 임금 근로자	4(4.0)	16(10.4)
	자영업자	2(2.0)	0
	전체	101(100)	154(100)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95(96.0)	127(82.5)
	시간제	4(4.0)	27(17.5)
	전체	99(100)	154(100)

		남성	여성
일자리 종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95(96.0)	121(78.6)
	외국계 회사	1(1.0)	1(0.6)
	정부 외 공공기관	1(1.0)	6(3.9)
	정부기관	0	9(5.8)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	0	7(4.5)
	(재단, 사단) 법인단체	2(2.0)	9(5.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0	1(0.6)
	전체	99(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13] 성별 및 직종별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2018년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상해 종류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골절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상해 종류를 살펴보면, 파열/열상이 20.8%, 화상이 11.0%, 요통/근골격계가 4.5%로 나타났다.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골절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상해 종류를 살펴보면, 파열/열상이 27.7%, 절단이 13.9%, 요통/근골격계가 7.9%로 나타났다.

〈표 III-45〉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상해 종류: 2018년
(단위: 명, %)

상해 종류	남성	여성
골절	37(36.6)	81(52.6)
베임	0	3(1.9)
요통/근골격질환	8(7.9)	7(4.5)
절단	14(13.9)	3(1.9)
베임	5(5.0)	1(0.6)
찰과상	0	1(0.6)
타박상/진탕	0	6(3.9)
파열/열상	28(27.7)	32(20.8)
화상	5(5.0)	17(11.0)
내부기관상해(뇌실현관질환포함)	2(2.0)	1(0.6)
기타	2(2.0)	2(1.3)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상해 부위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팔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상해 부위를 살펴보면, 손/손가락이 21.4%, 다리가 15.6%, 발/발가락이 14.9%로 나타났다.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손/손가락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상해 부위를 살펴보면, 발/발가락이 11.9%, 다리가 9.9%, 팔 7.9%, 허리가 7.9%로 나타났다.

〈표 III-46〉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상해 부위: 2018년
(단위: 명, %)

상해 부위	남성	여성
두부(뇌, 두개골, 두피)	4(4.0)	5(3.2)
눈	1(1.0)	0
안면부	4(4.0)	2(1.3)
팔	8(7.9)	36(23.4)
손, 손가락	50(49.5)	33(21.4)
가슴, 등	2(2.0)	5(3.2)
허리	8(7.9)	20(13.0)
엉덩이	2(2.0)	3(1.9)
다리	10(9.9)	24(15.6)
발, 발가락	12(11.9)	23(14.9)
복합부위	0	1(0.6)
기타	0	2(1.3)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등급을 살펴보면, 무장애가 남성 및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장애 등급을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13-14급이 33.1%, 10-12급이 21.4%로 나타났고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13-14급이 28.7%, 10-12급이 18.8%로 나타났다.

〈표 III-47〉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등급:
2018년

(단위: 명, %)

장애등급	남성	여성
1~3급	2(2.0)	1(0.6)
4~7급	9(8.9)	0
8~9급	9(8.9)	4(2.6)
10~12급	19(18.8)	33(21.4)
13~14급	29(28.7)	51(33.1)
무장애	33(32.7)	65(42.2)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업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가 남성 및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93.5%로 나타난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91.1%로 나타났다.

〈표 III-48〉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업재해 유형: 2018년
(단위: 명, %)

산업재해유형	남성	여성
업무상 사고	92(91.1)	144(93.5)
업무상 질병	9(8.9)	9(5.8)
출퇴근 재해	0	1(0.6)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요양 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초과~6개월 이하가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개월 이하가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9〉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요양 기간: 2018년
(단위: 명, %)

요양기간	남성	여성
3개월 이하	38(37.6)	54(35.1)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28(27.7)	61(39.6)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22(21.8)	30(19.5)
9개월 초과~1년 이하	2(2.0)	5(3.2)
1년 초과~2년 이하	7(6.9)	3(1.9)
2년 초과	4(4.0)	1(0.6)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안내를 받지 않은 비율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비율이 59.7%인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49.5%로 나타났다. 재활스포츠에 관한 안내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비율이 56.5%인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44.6%로 나타났다. 원직장복귀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비율이 59.1%인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44.6%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안내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비율이 74.0%인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59.4%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안내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비율이 61.7%인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44.6%로 나타났다. 취업 알선에 관한 안내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비율이 61.7%인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44.6%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에 관한 안내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비율이 75.3%인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58.4%로 나타났다.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에 대한 안내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비율이 77.3%인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60.4%로 나타났다.

〈표 III-50〉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제공 여부: 2018년

(단위: 명, %)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 안내 받았는지 여부	남성	여성
심리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	예	51(50.5)	62(40.3)
	아니오	50(49.5)	92(59.7)
	전체	101(100)	154(100)
재활스포츠에 관한 안내	예	56(55.4)	67(43.5)
	아니오	45(44.6)	87(56.5)
	전체	101(100)	154(100)
원직장복귀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안내	예	56(55.4)	63(40.9)
	아니오	45(44.6)	91(59.1)
	전체	101(100)	154(100)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안내	예	41(40.6)	40(26.0)
	아니오	60(59.4)	114(74.0)
	전체	101(100)	154(100)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안내	예	56(55.4)	59(38.3)
	아니오	45(44.6)	95(61.7)
	전체	101(100)	154(100)
취업 알선에 관한 안내	예	56(55.4)	59(38.3)
	아니오	45(44.6)	95(61.7)
	전체	101(100)	154(100)
창업지원에 관한 안내	예	42(41.6)	38(24.7)
	아니오	59(58.4)	116(75.3)
	전체	101(100)	154(100)
생활안정자금 용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에 대한 안내	예	40(39.6)	35(22.7)
	아니오	61(60.4)	119(77.3)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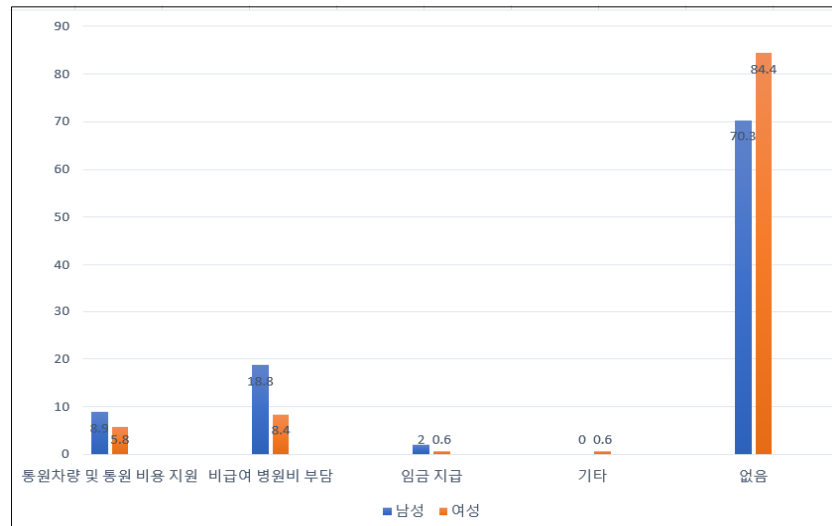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 사항을 살펴보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및 남성 서비스 근로자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 서비스 근로자 중 사업주가 아무런 편의 사항을 제공 하지 않은 비율이 84.4%인 반면 남성 서비스 근로자 중 7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항: 2018년

(단위: 명, %)

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항	남성	여성
통원차량 및 통원 비용 지원	9(8.9)	9(5.8)
비급여 병원비 부담	19(18.8)	13(8.4)
임금 지급	2(2.0)	1(0.6)
기타	0	1(0.6)
없음	71(70.3)	130(84.4)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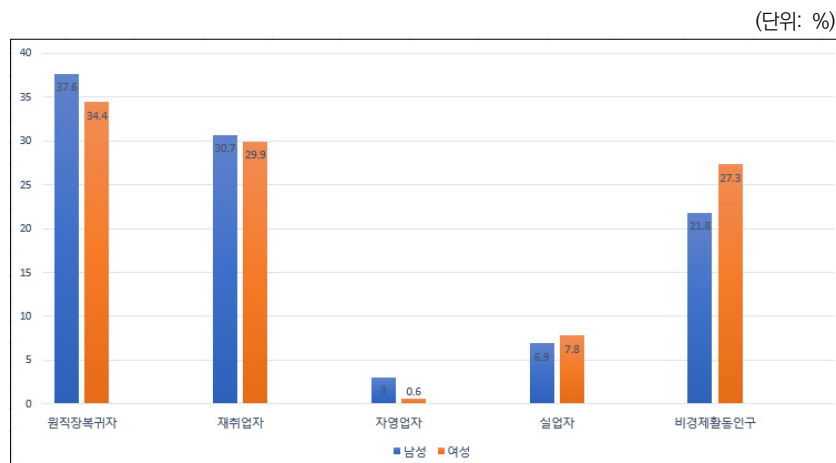
[그림 III-14]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 사항: 2018년

2017년 서비스직 성별 요양 종결자 대상 2018년 경제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원직장 복귀자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원직장 복귀자 비율인 37.6%와 비교하면 낮게 나타났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의 비율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인 경우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7.8%인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6.9%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27.3%인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21.8%로 나타났다.

〈표 III-52〉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경제활동 유형: 2018년
(단위: 명, %)

경제활동유형	남성	여성
원직장복귀자	38(37.6)	53(34.4)
재취업자	31(30.7)	46(29.9)
자영업자	3(3.0)	1(0.6)
실업자	7(6.9)	12(7.8)
비경제활동인구	22(21.8)	42(27.3)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15〉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경제활동 유형: 2018년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취업자 업무 적응 정도를 살펴 보면, '적응한 편이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여성과 남성의 서비스직 근로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67.4%로 적응한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51.6%로 나타났다.

〈표 III-53〉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취업자 업무 적응 정도: 2018년

(단위: 명, %)

현재 업무에 적응정도	남성	여성
매우 적응하였다	5(16.1)	6(13.0)
적응한 편이다	16(51.6)	31(67.4)
보통이다	7(22.6)	8(17.4)
적응하지 못한 편이다	3(9.7)	1(2.2)
전체	31(100)	46(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취업자 업무 적응 장애 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요인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애요인 비율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28.3%로 나타난 반면 남성 서비스 근로자 중 38.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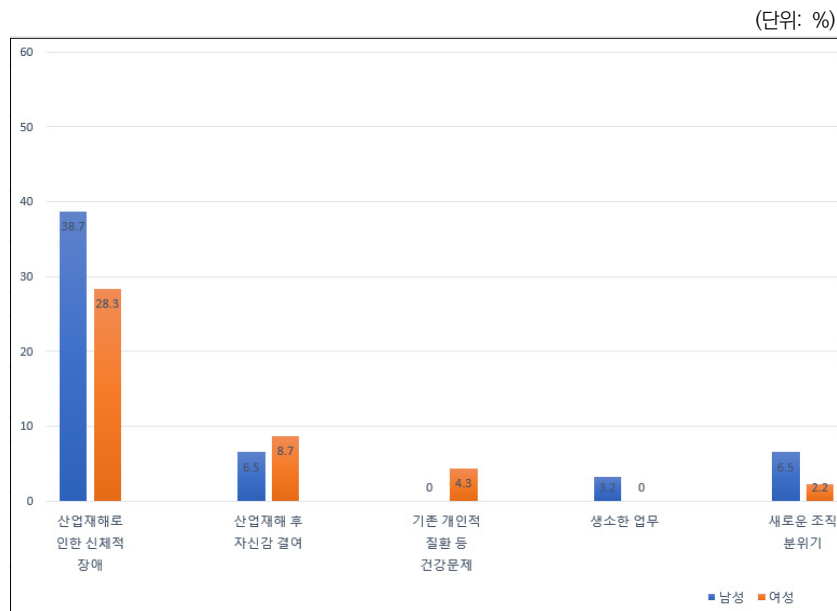
〈표 III-54〉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취업자 업무 적응 장애 요인: 2018년

(단위: 명, %)

현재 업무 적응 시 장애요인	남성	여성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애	12(38.7)	13(28.3)
산업 재해 후 자신감 결여	2(6.5)	4(8.7)
기존 개인적 질환 등 건강 문제	0	2(4.3)
생소한 업무	1(3.2)	0
새로운 조직 분위기	2(6.5)	1(2.2)

현재 업무 적응 시 장애요인	남성	여성
본인의 직무 능력 부족	1(3.2)	2(4.3)
기타	1(3.2)	0
장애요인 없이 잘 적응하고 있음	12(38.7)	24(52.2)
전체	31(100)	46(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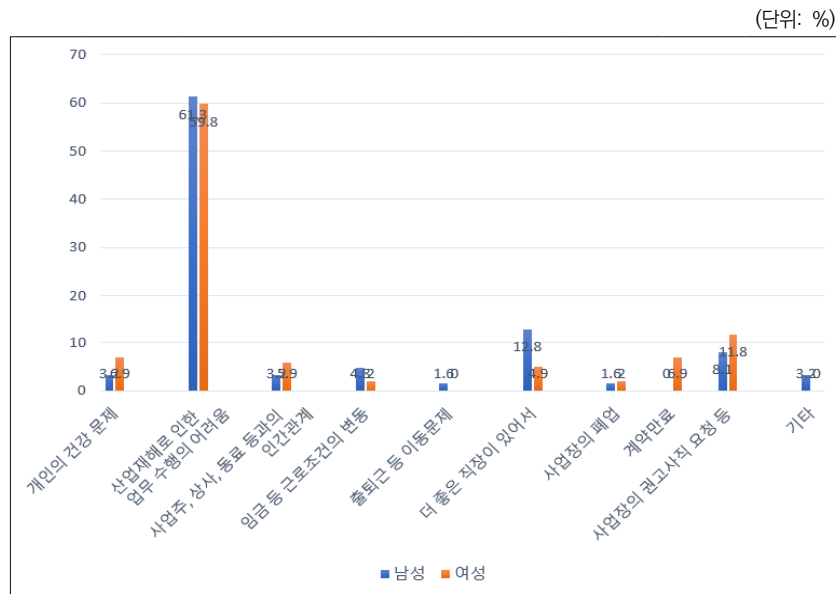
[그림 III-16]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취업자 업무 적응 장애요인: 2018년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취업자 재취업 이유를 살펴 보면,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여성과 남성의 서비스직 근로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59.8%로 나타난 반면 남성 서비스 근로자 중 61.3%로 나타났다.

〈표 III-55〉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해사업장 퇴사 이유: 2018년
(단위: 명, %)

재해사업장 퇴사 이유	남성	여성
개인의 건강 문제	2(3.2)	7(6.9)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	38(61.3)	61(59.8)
사업주, 상사, 동료 등과의 인간관계	2(3.2)	6(5.9)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	3(4.8)	2(2.0)
출퇴근 등 이동문제	1(1.6)	0
더 좋은 직장이 있어서	8(12.9)	5(4.9)
사업장의 폐업	1(1.6)	2(2.0)
계약만료	0	7(6.9)
사업장의 권고사직 요청 등	5(8.1)	12(11.8)
기타	2(3.2)	0
전체	62(100)	102(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17]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재해사업장 퇴사 이유: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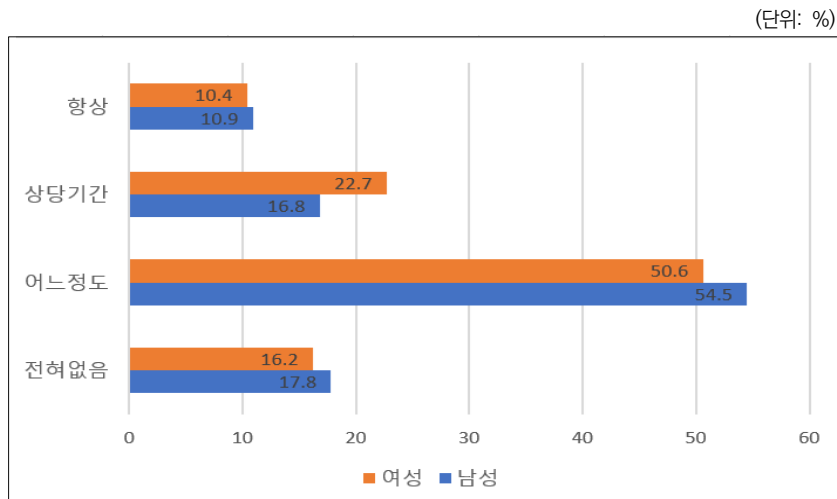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과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 기간'이라고 응답한 성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상당 기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7%로 나타난 반면에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2018년

(단위: 명, %)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남성	여성
전혀없음	18(17.8)	25(16.2)
어느 정도	55(54.5)	78(50.6)
상당 기간	17(16.8)	35(22.7)
항상	11(10.9)	16(10.4)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18]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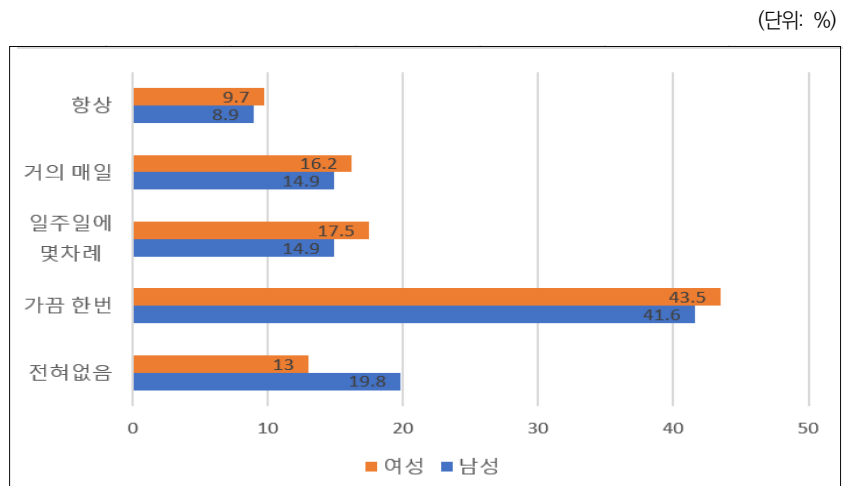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통증 느끼는 횟수를 살펴 보면, '가끔 한번'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과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주일에 몇 차례' 이라고 응답한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일주일에 몇 차례' 라고 응답한 비율이 17.5%로 나타난 반면에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통증 느끼는 횟수: 2018년

(단위: 명, %)

산재 이후 통증 느끼는 횟수	남성	여성
전혀 없음	20(19.8)	20(13.0)
가끔 한번	42(41.6)	67(43.5)
일주일에 몇 차례	15(14.9)	27(17.5)
거의 매일	15(14.9)	25(16.2)
항상	9(8.9)	15(9.7)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19]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통증 느끼는 횟수: 2018년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으로 산재 이전 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과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에게 높게 나타났다. 여성 서비스직의 비율이 72.7%로 남성 서비스직 비율(79.2%)보다 낮게 나타났다. 건강 문제로는 고혈압과 저혈압 질환이 여성 서비스직 중 1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질환은 당뇨병이 7.1%,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가 5.2%,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1.9%로 나타났다. 남성 서비스직 중 고혈압과 저혈압 질환이 여성 서비스직 중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질환은 중풍, 뇌혈관질환이 2.0%,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2.0%로 나타났다.

〈표 III-58〉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전 건강 문제: 2018년
(단위: 명, %)

산재 이전에 있었던 건강 문제	남성	여성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0	1(0.6)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3(3.0)	8(5.2)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1(1.0)	0
만성간염, 간경변	1(1.0)	0
당뇨병	1(1.0)	11(7.1)
갑상선질환	1(1.0)	0
고혈압, 저혈압	9(8.9)	17(11.0)
중풍, 뇌혈관질환	2(2.0)	0
심근경색증, 협심증	2(2.0)	3(1.9)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1(1.0)	0
골다공증	0	1(0.6)
기타	0	1(0.6)
없음	80(79.2)	112(72.7)
전체	101(100)	15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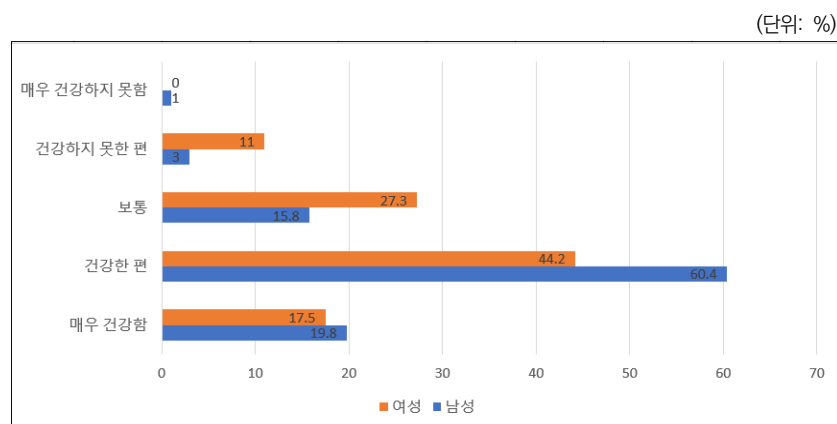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으로 산재 이전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0%로 나타난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로 나타났다.

〈표 III-59〉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전 건강 상태
(단위: 명, %)

산재 이전 평도 건강 상태	남성	여성
매우 건강함	20(19.8)	27(17.5)
건강한 편	61(60.4)	68(44.2)
보통	16(15.8)	42(27.3)
건강하지 못한 편	3(3.0)	17(11.0)
매우 건강하지 못함	1(1.0)	0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20]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전 건강 상태: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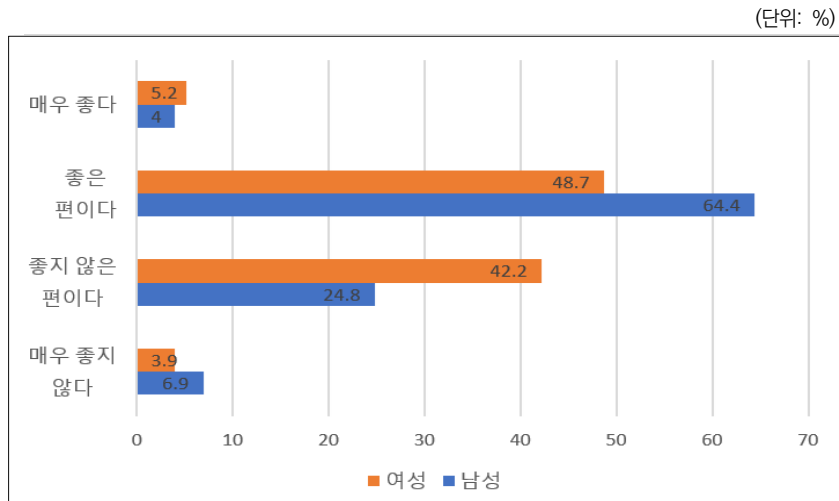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으로 산재 이후 2018년 현재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성별 서비스직 간 건강 상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나타난 반면에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로 나타났다.

〈표 III-60〉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현재 건강 상태: 2018년

(단위: 명, %)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	남성	여성
매우 좋지 않다	7(6.9)	6(3.9)
좋지 않은 편이다	25(24.8)	65(42.2)
좋은 편이다	65(64.4)	75(48.7)
매우 좋다	4(4.0)	8(5.2)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21]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현재 2018년 건강 상태: 2018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으로 산재 이후 2018년 현재 만성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별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여성 서비스직 중 26.6%가 만성질환이 있다고 나타난 반면에 남성 서비스직 중 14.9%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만성질환 중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고혈압 및 저혈압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만성질환은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당뇨병이 31.7%,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가 12.2%,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7.3%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중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고혈압 및 저혈압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만성질환은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풍, 뇌혈관질환이 13.3%,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가 13.3%로 나타났다.

〈표 III-61〉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자 만성질환: 2018년

(단위: 명, %)

		남성	여성
현재 만성질환유무	예	15(14.9)	41(26.6)
	아니오	86(85.1)	113(73.4)
	전체	101(100)	154(100)
만성질환명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1(6.7)	1(2.4)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2(13.3)	5(12.2)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1(6.7)	1(2.4)
	만성간염, 간경변	1(6.7)	0
	당뇨병	1(6.7)	13(31.7)
	고혈압, 저혈압	6(40.0)	15(36.6)
	중풍, 뇌혈관질환	2(13.3)	0
	심근경색증, 협심증	1(6.7)	3(7.3)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0	1(2.4)
	골다공증	0	1(2.4)
	기타	0	1(2.4)
	전체	15(100)	41(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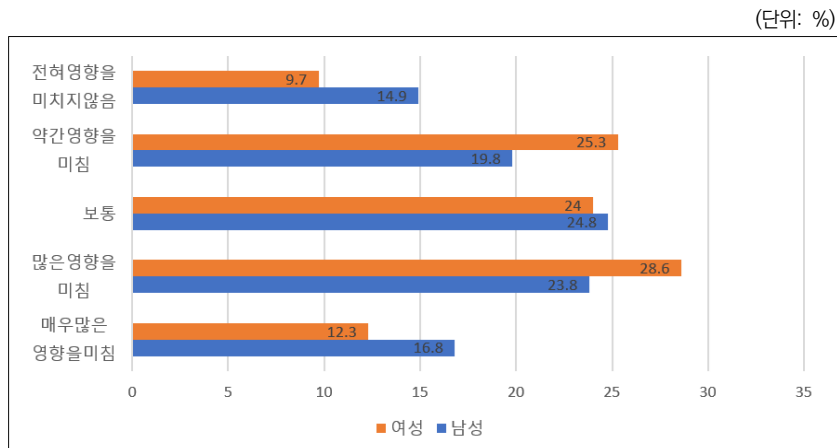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으로 산업재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면,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62〉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자 대상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단위: 명, %)

산재가 오늘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남성	여성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17(16.8)	19(12.3)
많은 영향을 미침	24(23.8)	44(28.6)
보통	25(24.8)	37(24.0)
약간 영향을 미침	20(19.8)	39(25.3)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5(14.9)	15(9.7)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22]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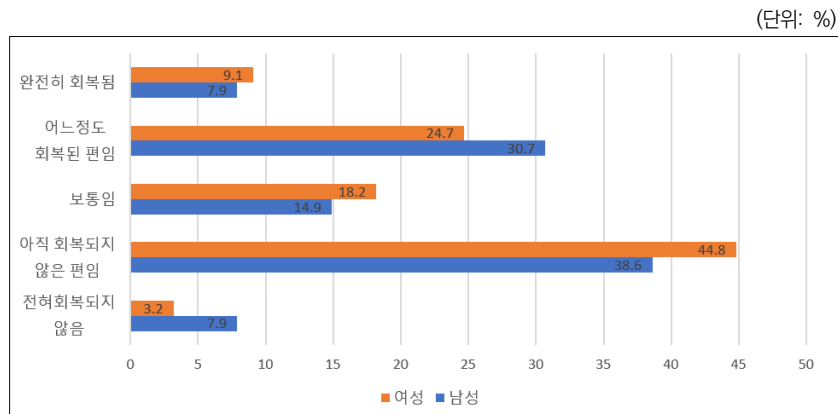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 산재 이후 건강회복 정도를 살펴 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아직 건강회복 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아직 회복되지 않은 비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간 격차 비율이 6.2%p로 나타났다.

〈표 III-63〉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자 대상 산재 이후 건강회복 정도: 2018년

(단위: 명, %)

산재 이후 건강회복 정도	남성	여성
전혀 회복되지 않음	8(7.9)	5(3.2)
아직 회복되지 않은 편임	39(38.6)	69(44.8)
보통임	15(14.9)	28(18.2)
어느 정도 회복된 편임	31(30.7)	38(24.7)
완전히 회복됨	8(7.9)	14(9.1)
전체	101(100)	154(100)

주: 집단별 응답 인원수가 과소한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



[그림 III-23]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 산재 이후 건강회복 정도: 2018년

3. 소결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인 최근 6차 자료(2020)를 활용하여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재보험패널을 2차 코호트 자료 조사(2018)를 활용하여 산업재해 이후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건강 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근로환경조사 분석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직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근로 형태의 특성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직종은 타 직종과 달리 60세 이상의 분포가 높고 동 서비스 직종의 성별 간 연령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7.1%인 반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상황은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선안에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의 고령화는 산업안전보건 예방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될 수 있다. 여성 서비스직 고령자가 산업재해를 경험하게 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및 요양 기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노년의 건강 및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서비스직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교육 수준 분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58.2%인 반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대학교 졸업 이상 분포는 31.8%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200 만원 미만의 분포가 58.5%로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임시 근로자 형태의 비율이 28.2%로 타 직종의 여성 임시 근로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외에도 여성 서비스직과 남성 서비스직의 교육 수준 차이, 소득 수준 차이, 근로 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사업장 규모가 50명 미만 분포가 87.0%로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개선 방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속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직 내 작업장 위험 노출 현황 및 질환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 결과는 여성 서비스직 내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피곤 통증 자세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미용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29.4%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피곤 통증 자세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업무 중 사람 이동 경험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돌봄 관련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9.0%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사람 이동 경험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업무 중 무거운 물건 이동 경험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식음료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14.2%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무거운 물건 이동 경험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의 반복 손 팔 동작 노출 여부를 살펴보면,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63.3%가 근무시간 내내/거의 모든 시간/근무시간 3/4 반복 손 팔 동작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 동안 요통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요통 경험 비율이 45.3%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리사 여성 근로자 중 요통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8%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 동안 상지근육통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돌봄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상지근육통 경험 비율이 50.1%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용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상지근육통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7%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 동안 하지근육통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혼례/장례/기타 돌봄 관련 서비스 여성 근로자 중 하지근육통 경험 비율이 27.8%로 타 서비스직 내 직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재보험패널을 2차 코호트 자료 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재보험 요양 종결자 여성 중 단순 노무 종사자를 제외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분포가 23.5%로 타 직종 종사자의 분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서비스직 산업 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상해 종류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골절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상해 종류를 살펴보면, 파열/

열상이 20.8%, 화상이 11.0%, 요통/근골격계가 4.5%로 나타났다.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안내를 받지 못한 비율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상당 기간'이라고 응답한 성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상당 기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7%로 나타난 반면에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 이후 통증 느끼는 횟수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일주일에 몇 차례'라고 응답한 비율이 17.5%로 나타난 반면에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으로 산재 이후 2018년 현재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성별 서비스직 간 건강 상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중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으로 산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면,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 산재 이후 건강회복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아직 회복되지 않은 비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간 격차 비율이 6.2%p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은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남성 근로자의 차이점을 고려한 산재보험 정책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산재로 인한 통증, 삶을 방해하는 정도 등은 연령, 산재의 심각성, 사고의 형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당연히 성별 근로자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보다는 그러한 차이점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V

포커스그룹 인터뷰

1.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141
2. 결과분석	145
3. 소결	161

IV

포커스그룹 인터뷰

1.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필요성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양상은 남성근로자와 차이를 보인다.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는 77.5%가 기타의 사업 즉, 서비스업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다음은 제조업(15.5%), 건설업(2.9%) 순이다. 이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남성근로자 산업재해의 30.9%를 차지하고, 다음은 제조업(29.8%), 기타의 사업(26.0%) 순이다.

서비스업 종사 여성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비스업 여성근로자 중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학교급식종사자와 콜센터 근로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비스업은 직종이 매우 다양한데 두 직종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면 그 업종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학교급식 종사 여성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뒤, 2022년 올해까지 50여 명의 학교급식 종사자가 폐암으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힘들고 고된 급식실 환경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기는 했지만, 암에 걸릴 줄은 몰랐다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기까지 이것을 예방할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일터에서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지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심도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화 등으로 고객 응대를 하는 콜센터 업무가 확대되고 있다. 2014년 국가통계포털은 콜센터 노동자의 규모를 6만 9천 명으로 보고하였으나, 콜센터 업계에서는 약 5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감정노동군이고, 코로나 19시기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콜센터는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함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고, 고객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어적 폭력, 성희롱,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이다.

여성근로자의 안전보건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의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한 심층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및 콜센터 종사 여성근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업 여성근로자의 안전건강관리 현황, 위험요인, 개선 대책에 대하여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게 확인하는 것이다.

나. 인터뷰 참여자

본 연구의 인터뷰에는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콜센터 종사자 5명, 학교급식 종사자 8명으로 총 13명의 여성근로자가 참여하였다.

〈표 IV-1〉 인터뷰 참여자 인적 사항

번호	연령	성별	업종	직종	경력
1	54	여	교육서비스업	조리사	교육공무직 17
2	51	여	교육서비스업	조리사	교육공무직 12
3	50	여	교육서비스업	조리실무사	교육공무직 10
4	51	여	교육서비스업	조리실무사	교육공무직 10
5	46	여	교육서비스업	조리실무사	교육공무직 3
6	50	여	교육서비스업	영양사	교육공무직 15
7	55	여	교육서비스업	조리사	교육공무직 9
8	34	여	교육서비스업	노동안전담당	정규직 10
9	48	여	사업지원서비스업	콜센터상담원	무기계약직 16
10	40	여	사업지원서비스업	콜센터상담원	무기계약직 13
11	25	여	사업지원서비스업	콜센터상담원	무기계약직 4
12	36	여	사업지원서비스업	콜센터상담원	무기계약직 7
13	51	여	사업지원서비스업	안전보건담당	정규직 21

다. 인터뷰 내용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에게 여성근로자로서 일하면서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 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요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표 IV-2). 질문내용은 김영택 등(2018: 228)이 수행한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IV-2〉 FGI 기초질문

구분	질문
도입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소개와 언제부터 학교에서 근무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하루 일과를 말씀해주세요.
안전사고, 질병발생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의 직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 문제(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유해물질, 난청, 진폐, 감염 등)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급식종사자 폐암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를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요? 예방하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 직장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경험할만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사고나 질병 경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직장에서 다른 여성 근로자가 경험한 안전사고나 질병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례를 말씀해주시시오.
작업장 안전보건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귀하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예시: 근무환경 요인(작업환경, 조명, 소음, 먼지, 온도, 화학물질), 작업시간 요인(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 작업조건 요인(대인관계,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기타), 생활 습관 요인(흡연, 음주, 운동, 식생활, 스트레스, 수면, 기타), 안전 문제(낙상, 전도, 협착, 베임, 폭력, 교통사고, 기타)
안전보건 관리 실태 및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직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장의 안전보건 교육 관련하여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직장에서 여성의 안전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이 있습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나 안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습니까? • 앞에 여러 가지 직업상의 위험요인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 조사 일정 및 방법

FGI 진행을 위해 해당 직종 노동자단체, 사업장 보건관리자, 근로자건강센터 관리자 등을 통하여 인터뷰 대상 여성근로자를 섭외하였다. 인터뷰는 2022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총 4회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매회 직종별로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개인 사정상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근로자는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각 기관의 회의실

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거나 형편에 따라 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도 진행하였다. 1회당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이었다.

인터뷰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 후 필사하여 필사한 노트를 연구자가 주의 깊게 읽고 의미 있는 절과 문장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2. 결과분석

서비스업 여성근로자가 작업환경 속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상의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경험한 안전사고와 건강문제는 무엇인지,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위험요인

서비스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 업종에 따라 위험요인이 다르고, 그 경중도 다르다. 청소, 음식숙박업, 세탁업 등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업종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등 신체적 위험요인이 많고, 콜센터,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등 사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는 감정노동, 고객의 폭언과 괴롭힘 등 정신적 위험요인이 강조된다. 또한, 청소용품, 살균소독제, 염료, 실내공기질 등 화학적 위험요인과 감염병 환자, 오염된 물질에 의한 생물학적 위험요인도 존재하여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다 (표 IV-3).

〈표 IV-3〉 여성 다수 산업에서의 위험요소

산업분야	위험요소와 건강문제			
	생물학적	신체적	화학적	정신적
보건 의료업	감염질병, 혈중, 호흡기질환등	무거운 물체의 운반; 신체적 소진 근무자세; 이온화 방사선	세척, 살균 및 소독제; 의약품; 마취가스	정서적 소모; 교대, 야간근무; 고객에 의한 폭언과 폭행
아동 돌봄	감염질병, 특히 호흡기질환	적재물의 취급, 힘든 작업 자세		감정노동
청소업	감염질병, 피부병	적재물의 취급; 격렬한 작업 자세; 미끄러지고 넘어짐; 젖은 손	청소 용품	반사회적 노동시간; 폭생(예. 고립된 장소 또는 매우 이르거나 늦은 시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식품 생산	감염질병, 동물에 의한 감염, 곰팡이, 피부사상균, 유해먼지	반복적인 움직임 (예: 포장활동 또는 도축장; 저온; 소음)	살충제 잔류물; 살균제; 곰팡이 강화 향료 및 첨가제)	반복적인 조립라인 작업
음식, 숙박업	피부질병	무거운 물체의 운반 및 처리; 반복적인 절단 작업; 상처와 화상; 미끄러지고 넘어짐; 열; 화학 청소용품	간접흡연, 화학적 청소용품	바쁜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고객의 폭행과 괴롭힘
의류업	유해먼지	소음; 반복적인 움직임과 불리한 작업자세; 바늘로 인한 찔린 부상	염료 및 기타 다음을 포함한 화학 물질 치료용 포름알데히드 달성 할 섬유 다림질 및 용매 얼룩 제거 용; 먼지	반복적인 조립라인 작업의 스트레스
세탁업	오염된 세탁물에 의한 감염 (예: 병원균)	무거운 물체의 운반 및 처리; 근무자세; 열	화학물질 청소 용해제	반복 조립 라인 작업, 반복적인 활동과 빠른 작업 리듬에 대한 스트레스
도자기		반복적인 움직임	유약, 납, 실리콘 먼지 등의 화학물질	반복 조립 라인 작업에 관한 스트레스
가벼운 생산		반복적인 움직임 (예: 작업라인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 자세; 화물 취급)		반복적인 조립 라인 작업에 관한 스트레스

산업분야	위험요소와 건강문제			
	생물학적	신체적	화학적	정신적
콜센터		말하기와 연결된 음성문제; 불리한 작업 자세; 과도한 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 자세; 목통증	실내공기 품질 저하	빠른 고객 응대, 일의 반복 활동
교육	감염질병 (예: 홍역)	격렬한 작업 자세; 서서 반복적인 움직임; 장기 근무 자세	실내 공기 저하	매일 반복되는 감정노동
미용사		격렬한 작업 자세; 서서 반복적인 움직임; 장기 근무 자세; 젖은 손; 상처	화학 스프레이, 염료 등	고객응대에 대한 스트레스; 빠른 일의 흐름
사무직		반복적인 움직임, 불리한 작업 자세; 앉은 자세에서의 허리 통증	공기 품질 저하, 인테리어; 복사기에서 방출된 증기	스트레스 (예: 일에 대한 영향력의 부족, 단조로운 활동)
농업	감염질병 (예를 들어 동물에 의한 감염, 곰팡이, 피부사상균, 유태먼지)	적재물의 수동 취급; 격렬한 작업 자세; 부적절한 작업 장비 보호복; 더위, 추위, 축축함	농약	

* 출처: Europäische Agentur fü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in Arbeitsplat (2017); 구미영 외, 2020. 140-142. 재인용

1)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

서비스업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에 대하여 인지하는 정도는 차이가 난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작업장이 매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지하였다. 가스, 미끄럼, 화상, 조리흡, 세제, 고열 등 다양한 위험이 곳곳에, 발을 뺄 때마다 도사리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콜센터 근로자들은 사무실에 근무하여서 대체로 자신의 작업장은 안전하다고 인지하였다. 근로자들은 대체로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 사고에 국한하여 인식하였다.

항상 위험에 노출: 안전하지는 못하지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정말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죠(대상자 1, 50대 조리사).

발을 땔 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저희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발을 땔 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무환경 자체가 늘 튀기고 볶고 하다 보니까, 사실 폐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대상자 6, 50대 영양사).

2) 다양한 건강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장

서비스업 내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어떤 직종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위험요인과 유해인자는 다양하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경우 미끄러짐, 넘어짐, 화상과 같은 안전사고와 식판·식재료 운반으로 인한 중량물 작업, 청소를 위한 세제의 오남용, 조리 흡, 고열 작업 등 다양한 요인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교 급식실은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식판과 음식 재료를 운반하기 때문에 건설업이나 중공업 못지않은 무게의 중량물을 운반한다고 하였다. 또한, 물때나 기름때 없이 미관상으로도 청결하게 조리기구를 세척하려다 보면 좀 더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게 되고, 권장사용량보다 몇 배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찌든 때나 기름때를 없애려 할 때는 솔이 뜨거울 때 세제를 발라서 그 위에 올라가서 청소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목과 눈이 따갑고 후각이 마비될 정도라고 하였다. 청결을 위해서 세제를 오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음식 조리는 열을 이용해야 해서 여름철에는 열사병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콜센터 근로자들은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과 감정노동, 장시간 상담으로 인한 방광염, 목을 이용한 상담으로 인한 인후염과 성대결절 등을 호소하였다.

건설업, 제조업 남성근로자 못지않은 중량물 들기: 밥하는 사람은 이제 식판을 꺼내야 해요. 식판도 많으니까 1,000개를 꺼내거든요. 근게 그게 20장씩 우리가 놓거든요. 근데 그게 무거워요. 혼자서 500개씩(한 개에 400g*500=200kg) 꺼내요. 근데 또 젓가락은 좀 무거워요? 한 20kg 될 거 같아.

설 틈이 없지요. 식판을 꺼낼 때는 두명이서 해요. 500장, 500장. 근데 받을 때는 1,000개를 혼자 받아서 다 소독구에 혼자 쌓는 거예요(대상자 3, 50대 조리실무사).

설거지 및 청소 세제의 잘못된 사용(세제 증기): 청소할 때 세제 증기 독하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때 발라야 잘 지워지니까 솔이 뜨거운 때 발라요. 독한 세제를 뜨거운데 바르면서 하다 보면 그 증기가 올라오면서. 그런데 굉장히 폐에 안 좋잖아요? 보통 세제로는 튀김 솔 같은 게, 찌든 게 안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강도가 높은 걸로 쓰다 보면 그게 피부에 닿으면 화상으로 가는 거고. 저는 화상으로 인해서 수술한 언니도 봤어요. 허벅지 살 떼다가 이식하고(대상자 2, 50대 조리사).

강력한 세제의 무분별한 사용: 진짜 잘 닦이는 세제가 오븐 세제라고 하는데 그 세제가 탁 튀기면 살이 따가워요. 그 오븐 세제를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이 후각이 마비될 정도예요. 그 김 한번 썰면은 목이 순간 굉장히 많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눈이 시릴 정도로 그렇게 독해요.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1리터 써야 하는데, 2리터, 5리터 쓰고 때려 부어 가지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과중한 업무량 이런 것 때문에(대상자 6, 50대 영양사).

고열 작업: 조리실 내부 온도가 제가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50 몇 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조리하는 열기랑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창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뭐 그런. 튀김 같은 거나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면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길면 세 시간까지 가요. 그걸 하고 나면 정말 여기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진짜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미식 미식 거리고... 열사병 비슷하게. 여름엔 더 심한 거 같아요. 더운데다가 그 뜨거운 튀김 솔 앞에 있으려면은 옷도 다 젖고 속옷도 다 젖고. 앞치마가 또 비닐.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젖는 거야(대상자 4, 50대 조리실무사).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고객의 폭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 흡연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감정노동이 굉장히 성향이 안 맞으셨는지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더라고요(대상자 9, 40대 콜센터상담원).

3)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고강도 압축 노동’, ‘전쟁을 치른다.’, ‘스스로를 갈아 넣는다’, ‘극한 직업’, ‘날아다닌다.’ 등의 말로 표현하였다.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후 설거지와 청소하는 시간에는 전체 인력이 풀가동 되어야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되지 못해서 남은 인력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하였다. 콜센터 근로자들도 상담이 길어지다 보면 화장실에 제때 못가 방광염이 생긴다고 하였다.

고강도 압축노동, 세 번의 전쟁: 우리는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해요. 배식 전에 음식 만들고, 배식하고, 끝나면 다 이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각자 자기가 할 것이 있어요. 각자 찢어지면 그때부터 전쟁이지요. 전쟁이 세 번이에요. 아침에 재료 준비하느라고 한번, 요리하느라고 한번, 청소하느라고 한번. 세 번(대상자 4, 50대 조리실무사).

자기를 갈아 넣는 노동, 극한 직업: 우리끼리는 자기를 갈아 넣는다고 하거든요. 저희 이런 급식 노동을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하는 언저리 노동, 주변 노동 이렇게 취급하는데, 이건 정말, 남자 조리사님들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들, 남자들도 못 버티고 가는 거예요. 몇 개월 못 버티고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셔요(대상자 7, 50대 조리사).

날아다니는 노동: 여기에 각종 정기적으로 하는 위생교육, 뭐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성범죄 청렴 교육 이런 것까지 들어가다 보면 그 압축 노동을 하는 사이에 20~30분씩 교육까지 배치돼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소위 시쳇말로 정말 날아다녀야 한다는 말을 쓰거든요(대상자 6, 50대 영양사).

대체인력 부족: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차도 내고 이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 핑크가 나면 그날은 정말 전쟁터예요. 비상벨이 울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뭇까지 내가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급식실이 너무 힘들다는 것 알고, 또 여러 가지 산재율이 높다 보니까, 대체 인력 자들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대체 인력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대상자 7, 50대 조리사).

나. 질병 및 사고 발생 경험

1)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 증상은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호소하는 질환이다.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중량물 작업이나 반복 작업으로 골병이 든다고 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허리, 목, 어깨, 손목 등 상지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골병: 이 일 하면서 성한 사람이 없죠. 이 일을 하면 골병이 들어요. 어깨, 손목. 손목 올해 수술했어요. 저희 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반복적인 일을 집중적으로 그 시간 안에 하는 거잖아요? 한두 세 시간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일을 하면 어느 누구도 손가락이든 뭐든 다 아프겠지요(대상자 5, 40대 조리실무사).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심각한데, 급식실에서 일하고 나면 밤에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밤에 굉장히 많이 쭈셔요. 그런데 그냥 이게 급식실 노동자들한테는 일상, 늘 있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근골격계질환이나 어깨 회전근이나 이런 거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대상자 6, 50대 영양사).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증상: 건강 측에서는 아무래도 고객센터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근골격과 허리 같은 그쪽으로 질환이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손목 쪽을 많이 쓰니까 그쪽이 좀 많이 아파서 병원을 좀 다니는 케이스가 있어요(대상자 12, 30대 콜센터상담원).

2) 다양한 질병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방광염, 인후염과 성대결절,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과 질병을 호소하였다. 몸을 이용하여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급식 종사 여성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호소율이 높았고, 상담 업무를 진행하는 콜센터 근로자들은 감정노동과 관련된 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제와 인후염, 성대결절 등 목을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많았다. 또한, 업무 중 제때 화장실에 가지 못해 방광염을 앓는 근로자들도 꽤

많다고 하였다.

방광염: 전화를 저희가 원할 때 받고, 원하지 않을 때 안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 화장실을 원하는 시간대에 자주 가지 못하고 좀 참느라 방광염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대상자 10, 40대 콜센터상담원).

인후염, 성대결절: 상담업무이다 보니 말을 많이 해야 해서 목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다던가 그런 분들은 종종 봤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성대결절 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고(대상자 11, 20대 콜센터상담원).

우울증: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감정노동이 굉장히 성향이 안 맞으셨는지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더라고요(대상자 9, 40대 콜센터상담원).

3) 암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동료들이 많아지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조리실에 연기가 자욱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아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암까지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전에 어느 누구도 조리 과정에 그렇게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고, 그런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후드 등 설비 관리도 미흡했던 것이 폐암의 원인일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암까지 발생하는 급식실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하였다.

폐암 위험에 노출: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만 튀김이나 전을 하게끔 교육청의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고,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튀김. 그리고 지금은 기름을 한번 쓰면 다 폐유 하기로 했는데, 전에는 두 번 세 번 그걸 쓰거든요. 그거는 다 산화된 산패된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연기는 장난 아니지요. 거기 한번 청소하거나 하면 진짜 여기가(가슴) 타는 것 같아요(대상자 5, 40대 조리실무사).

암(?): 저는 뭐.. 여기 다 병원 안 다녀본 사람이 없는데 저는 유방암 수술했고, 갑상선 암 수술 2번.. 이게 직업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아까 약품이 그때 후드를 닦으면서 모자에 닿아서 제가 이게 이렇게 까졌거든요. 이게(백반증) 안 돌아오더라고요(대상자 1, 50대 조리사).

작업환경 설비 미흡: 전에 제가 처음 학교에 5년을 근무하고 아파서 관렸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5년 동안 후드가 다 고장이 났었더라고요. 고장이 난지도 모르고 그때 진짜 열악했어요. 창문도 몇 개 없고. 그때 언니 하나가 폐암. 그니까 항상 큰 사건이 하나 나와 뭔가 시정이 되고, 조사가 나오고 바뀌고 그러잖아요(대상자 4, 50대 조리실무사).

4) 안전사고

안전사고는 사무실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육체노동을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많이 호소하였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안전사고 유형도 미끄럼, 낙상, 화상, 베임, 끼임 등으로 다양하였다.

학교 급식실은 조리를 하다 보니 항상 뜨거운 물이나 국, 뜨거운 조리기구, 기름 등에 노출되어 크고 작은 화상의 원인이 된다. 또한 화상은 이러한 열로 인한 것뿐 아니라 청소할 때 사용하는 독성이 강한 세제로 인해서도 피부나 눈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방심하면 사고: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죠(대상자 1, 50대 조리사).

야채 절단기에 손상: 동료가 야채 절단기에 손이 낀 그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같이 일하는데 저쪽에서 야채 절단기에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손이 절단됐는 줄 알고 정말 놀랐어요. 그 기계를 끄고 119에 신고를 먼저 했는데(대상자 7, 50대 조리사).

세제로 인한 화상: 청소하다가 눈에 약품이 튀어서 화상 입고 실명했어요(대상자 6, 50대 영양사).

뜨거운 물에 화상 사망: 화상 이런 거야. 저기 바닥 닦는 뜨거운 끓는 물을 고무대야 바닥에 놔다가 서을 같은 경우는 뒷걸음질 치다가 그 끓는 물에 그냥 뒤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물통으로. 전신 화상으로 사망하셨어요(대상자 6, 50대 영양사).

항상 위험에 노출: 안전하지는 못하지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대상자 1, 50대 조리사).

다.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체계적이지 못한 안전보건관리

그간 학교급식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히 작업하며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마다 영양사 선생님이 보건교육 자료를 제공해주거나 장화 같은 보호장구를 바꿔주는 정도로 챙겨주기는 하지만, 현재 작업하는 환경에서 무엇이 건강에 해롭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최근 많이 발생한 폐암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급식실 환경이 연기도 자욱하고 냄새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는 했지만, 암까지 걸릴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어느 누구도 조리 과정에서 위험 물질이 나온다, 이것이 폐 건강에 안 좋다, 보호장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고용이 각 학교 관할에서 각급 교육청 소속으로 바뀌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어 각 교육청에 보건관리자가 생겨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가 교육청마다 1~2명이고 그 인력이 각 교육청 소속 수백 개의 학교를 관리하니 각급 학교 차원의 세부적인 관리는 어렵다고 하였다.

콜센터의 경우는 각 콜센터의 설립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차이가 있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콜센터는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보건관리자를 필수로 배치해야 하는 업종이 아니다. 이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산업보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콜센터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직업건강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그냥 근로자들이 알아서 조심히 작업: 안전문제, 건강문제 안 생기게 그냥 저희들끼리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요. (영양사)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도 미끄럼 방지 장화...뭐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장화 바꿔주는 거? 가스 같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밸브 열렸나 확인하고, 기름 바닥에 항상 뭐 소금뿌려가면서, 소금 뿌리면 덜 미끄럽거든요. 또, 칼질하는 거에 따라서 손목이 틀리거든요. 손목으로 쓰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고. 팔로 하라고. 그냥 저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대상자 1, 50대 조리사).

폐암 위험 인지 못함: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일하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뭔가가 연기가 자욱하고, 냄새가 나고, 뭔가 머리가 아프고, 또 코로 흡입하면서 냄새라든가, 통증이 오고. 이러다가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들었었죠(대상자 7, 50대 조리사).

폐암 위험성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 해 준 적이 없음: 아까 폐암 문제를 예방할 수 없었을까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왜?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에 그런 위험 물질이 나온다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게 조리 흡이 발생하고 폐에 직결된다, 조리 시에 마스크 쓰라고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대상자 6, 50대 영양사).

근로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것도 노조가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거고 그전에는 진짜 우리가 학교에다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대상자 4, 50대 조리실무사).

2)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안전보건교육

학교급식 종사자나 콜센터 종사자 모두 자신들의 직업에 맞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원하였다. 자신들의 업무환경이 얼마나 유해하고 위험한지 연구가 되고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위험하다면 그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그래야지만 근로자들의 건강문제,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런 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대규모로 강당에 몇백 명씩 모아놓고 강의를 진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듣도록 하는 현재의 보건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이런 상황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이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급식실 종사자 중 직급이 높은 사람이 유인물을 돌리고 서명하라고 하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발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업무내용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교육: 저희 급식노동자들을 데려다 놓고 맨날 건설업 기중기, 굴삭기 이런 거를 잘 다뤄야 된다고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대상자 6, 50대 영양사).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방식의 교육: 워낙 많은 사람을 한 번에, 500명 강당에 모아도 놓고 교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솔직히 안전에 아무 지식도 없는 제가 한 달에 두 시간씩 이걸 하라고 하니깐 유인물 뽑아서 오늘 위생교육하는 날이니, 보고 사인하라고 했어요. 그냥 사인하라고 하죠. 솔직히. 한 달에 두 번, 우리 쌤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어요 (대상자 7, 50대 조리사).

3) 업무를 해내려면 착용할 수 없는 보호구

급식실 종사자들은 규정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규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면 숨이 막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규정 마스크는 점점 나올 때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작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심해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것이다.

작업하기에 불편한 보호구: 인제 페이스설프인가? 그거를 하라고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걸 하면 저희는 숨을 못 쉬어요. 교육청에서 위생점검 나오면 그걸 꼭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면 저희는 더 죽는거죠. 그니까 그거는 형식상(대상자 2, 50대 조리사).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구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그게 방독면 비슷한 게 마스크 있죠. 그걸 구비하라고 해서 가끔 점검 나올 때 보관하고 있는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 그걸 한 번 쓰면 숨을 쉴 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 마스크 쓰고 숨을 참고서 그냥 하죠. 꼭 참고서, 숨 안 쉬고 닦고 저쪽 가서 숨 쉬고. 한번 숨을 쉬고 와 가지고 또 닦고. 그러다가 한번 후 하면 느낌이 확 오죠. '와 독하구나'(대상자 1, 50대 조리사).

4) 부족한 휴게시설

업종마다, 기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비좁은 휴게 시설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쟁 같은 일과를 진행하고 나면 점심시간에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나 현재 있는 휴게실은 전체 인력이 편히 쉴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서, 학교에서 준 공기청정기도 휴게실 바깥에 내놓고 지낸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비좁은 휴게실: 휴게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주셨는데 잠깐 틀고 다른데 놔뒀어요.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만큼 좁아요. 놔둘 데가 없어서. 한 명 더 오면 문 입구에 앉아야 해. 나가던가(대상자 5, 40대 조리실무사).

5) 일 순위는 서비스의 질, 근로자의 건강은 후순위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현재의 업무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은 뒷전이고 음식의 맛이나 미관상 청결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더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를 줄여주는 자동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급식실에서 가장 상급자인 영양교사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데, 물 얼룩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영양사인 경우는 근로자의 건강에 안 좋더라도 오븐 세제나 더 강력한 세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음식의 미세한 맛을 지키기를 원하는 영양교사의 경우는 재료를 자를 때 자동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의 수작업을 거쳐 음식을 만들도록 해서 근로자의 건강은 뒷전이라고 하였다.

식기에 물 얼룩을 없애기 위해 근로자 건강에 안 좋은 세제 사용: 어떤 선생님은 얼룩에 대해서 예민하게 안 하시니까 그걸 많이 안 쓰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은 스텁에 물 얼룩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못 참으시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요. 약을 써야지 지워지니까.. 그니까 그 약을 거의 뭐.. 그게 얼룩만 없애 뿐이지 건강에 더 안 좋죠(대상자 2, 50대 조리사).

영양교사의 성향에 따라 몸에 해로운 세제에 더욱 많이 노출: 영양사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거든요. 청소에 민감하신 영양사님 만나면 그런 세제를 많이 쓰고 많이 힘들고, 건강을 생각하시고 유하신 선생님 만나면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씩 대청소 때 세제 조금 써서 얼룩 신경써주세요 하면 평소에 그냥 하던 대로 편하게 하고(대상자 3, 50대 조리실무사).

근로자의 건강보다 맛과 위생만 중시하는 급식실: 학교급식은 위생과 맛만 중시했지, 안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조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폐암 환자 터지면서 이것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지. 그전에 정말 학교 급식은 어떻게 밥 맛있게 주냐, 니네 학교는 왜 맛있니, 맛있니. 오로지 그냥 양비론적으로 이렇게만 접근해가지고. 안전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지요 (대상자 7, 50대 조리사).

라. 개선 방안

1) 적정 수의 인력 배치

서비스업 여성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일 인당 적정한 업무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 급식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인원은 근로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안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근로자가 적정 인력 배치되어, 근로자 1인당 적정한 업무량을 수행할 때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결원이 생길 때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인력 부족으로 건강상 문제 발생: 근데 이게 인원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교대를 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은 한 시간 하고 빠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고) 각자 분야에서 정신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바꿔주고 교대할 그런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두 시간 이상 전판 앞에서 전 부치다가 화상 입었고, 화상이 일주일째 낫지를 않고, 손가락도 물집 생겨가지고 이제 물집 터져 가지고(대상자 3, 50대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부족: 내일도 또 한 명이 대체 인원이 오지 않아서 내일도 각오하고 나가야 해요. 10명이 으쌰으쌰해도 정신없이 뛰는데 한 명이 빠졌는데 대체 인력을 못 구해서, 그럼 또 업무량이 가중되겠죠. 그 사람 뒤편까지 나눠서 하다 보면. 그 대체인력이 저희를 골병들게 만들어요.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병가도 못 내고 아파도 나와야 하고, 진짜 절뚝절뚝 걷지 못하지 않고서는 다 나와야 해요. 웬만큼 아파서는...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사람도 못 구하는데... 그래서 그냥 아파도 그냥 해요. 아픔이 가중되다 보면 결국은 수술해야 되고, 이 선생님은 저보고 출근해서 아프라고 해요(대상자 4, 50대 조리실무사).

2) 노동자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창구 필요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된 이후 본인들의 고용조건과 안전보건관련 관리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그전에는 자신들의 근무환경 중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렵듯이 짐작은 하였으나 잘 알지 못했고, 요구하지도 못했는데 노조에 가입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노조 활동 후 근무환경 개선: 요즘은 노조에서 아프면 산재해라 산재해라 해서 많이 신청하는데, 예전에는 산재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뭐 교육받아라, 교장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한테 안 좋고 그래서 산재를 하길 원치 않았죠... 노조 가입하면서 교육청 소속이 되고, 급여, 수당, 처우가 많이 좋아졌지요 (대상자 1, 50대 조리사).

3) 작업에 대한 정확한 위험성평가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본인들 생각에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작업들을, 아주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근로자 건강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한다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하였다. 따라서 조리 흡, 세제 증기 같은 화학적 유해인자,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작업의 위험성 조사 필요: 개선 방법이 없나..?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업무에 대해) 연구된 건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건강에 치명적이면은 하면 안 되잖아요?(대상자 5, 40대 조리실무사).

세제 오염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조사 필요: 튀김을 했잖아요. 그럼 기름을 통에다 다시 담아요. 그리고 나면 열기가 남아있어요. 솔에 그럴 때 세제를 뿌려 가지고, 네 뚜껑을 닫아둬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조금 있다가 하면 조금 덜 하더라고요. 기름이 있는 데는 안 타는데 기름이 없는 부분은 뒤에 가 까맣게 타거든요. 이걸(오븐 세제) 싹 발라놓지 않으면 솔이 식으면 이게 안 지워져요. 그니까 뜨거운 때 발라야지, 그때 뜨거운 때 바르면 솔이 깨끗하게 닦이는 반면에 연기가...막 나는거죠(대상자 4, 50대 조리실무사).

4) 안전장치 강화 및 기구의 자동화

급식실 여성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장치 강화 및 조리기구의 자동화를 요구하였다. 가스가 누출되어도 감지하지 못하는 근무 환경에 대한 조치와 다량의 식재료를 자르거나 다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조리기구들이 많이 제공되면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스 안전장치: 왜 이런 솔에는 안전장치가 없는지... 저희 오늘도 가스가 새 가지고 아무도 냄새를 못 맡는데 계속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빨래 삶을 때도 그 레버가 조금만 열려있어도 그냥 새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제 제일 위험하고. 그러니까 가스 냄새를 감지해서 뭐 벨이 삐삐 울린다거나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대상자 2, 50대 조리사).

자동 조리기구 사용: 마늘 다지기 그런.. 전에 학교는 거기다 다졌거든요. 근데 기계에다 다지면 물이 많이 나오고 그런 면이 있긴 하니까. 식감이 떨어지지. 저희 선생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또 죽어라 손목으로 다지는 거죠(대상자 3, 50대 조리실무사).

5) 법적 보호 강화

콜센터 근로자의 경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이 훨씬 감소하였고, 이번보다 많이 보호받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업종사자 보호 규정이 생기며 이런저런 조치들이 취해져 좀 더 보호받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 개선: CS 교육을 받을 때면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했을 때 1회차 경고, 2회차 경고, 3회차 단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서 처음, 예전 10년 전보다는 많이 보호가 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상담사가 고객한테 이런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든든한 마음입니다(대상자 9, 40대 콜센터상담원).

3. 소결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급식종사자와 콜센터근로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터에는 다양한 안전보건위험요인이 존재한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작업장이 매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지하였다. 가스, 미끄럼, 화상, 조리 흡, 세제, 고열 등 다양한 위험이 곳곳에, 발을 뺄 때마다 도사리고 있다고 하였다. 콜센터근로자들은 사무실에 근무하여서 대체로 자신의 작업장은 안전하다고 인지하였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식판과 식자재를 운반하기 때문에 건설업이나 중공업 못지않은 무게의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었다. 또한, 물때나 기름때 없이 미관상으로도 청결하게 조리기구를 세척하기 위해 세제를 오남용하고 있었다. 음식 조리는 열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열사병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콜센터근로자들은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과 감정노동, 장시간 상담으로 인한 방광염, 목을 이용한 상담으로 인한 인후염과 성대결절 등을 호소하였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고강도 압축노동’, ‘전쟁을 치른다’, ‘스스로를 갈아 넣는다’, ‘극한 직업’, ‘날아다닌다.’ 등의 말로 표현하였다. 콜센터 근로자들도 상담이 길어지다 보면 화장실에 제때 못가 방광염이 생긴다고 하였다.

질병 및 사고 발생 경험이 존재한다. 근골격계 증상은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호소하는 질환이다.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중량물 작업이나 반복 작업으로 골병이 든다고 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허리, 목, 어깨, 손목 등 상지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방광염, 인후염과 성대결절,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과 질병을 호소하였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동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하였다. 안전사고는 사무실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육체노동을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많이 호소하였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안전사고 유형도 미끄럼, 낙상, 화상, 베임, 끼임 등으로 다양하였다.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일터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그간 학교급식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작업하는 환경에서 무엇이 건강에 해롭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관리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최근 많이 밝혀지고 있는 폐암도 이전에 어느 누구도 조리 과정에서 위험 물질이 나온다, 이것이 폐 건강에 안 좋다, 보호장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 최근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고용이 각 학교 관할에서 각급 교육청 소속으로 바뀌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어 각 교육청에 보건관리자가 생겨서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가 교육청마다 1~2명이고 그 인력이 각 교육청 소속 수백 개의 학교를 관리하니 각급 학교 차원의 세부적인 관리는 어렵다고 하였다.

학교급식 종사자나 콜센터 종사자 모두 자신들의 직업에 맞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원하였다. 자신들의 업무환경이 얼마나 유해하고 위험한지 연구가 되고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위험하다면 그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현재는 그런 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하였다. 급식실 종사자들은 규정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작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심해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비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쟁 같은 일과를 진행하고 나면 점심시간에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나 현재 있는 휴게실은 전체 인력이 편히 쉴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현재의 업무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은 뒷전이고 음식의 맛이나 미관상 청결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산업안전보건문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적정 수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일 인당 적정한 업무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 급식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인원은 근로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안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이유라고 하였다. 또한, 결원이 생길 때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노동자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창구 필요하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된 이후 본인들의 고용조건과 안전보건관련 관리 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그전에는 자신들의 근무환경 중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렵듯이 짐작은 하였으나 잘 알지 못했고, 요구하지도 못했는데 노조에 가입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작업에 대한 정확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본인들 생각에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작업들을, 아주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근로자 건강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한다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하였다.

안전장치 강화 및 기구의 자동화가 필요하다. 급식실 여성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장치 강화 및 조리기구의 자동화를 요구하였다.

법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콜센터근로자의 경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이 훨씬 감소하였고, 이번보다 많이 보호받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업종사자 보호 규정이 생기며 이런저런 조치들이 취해져 좀 더 보호받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정책개선 방안

1. 정책개선 방안

168

V

정책개선 방안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개선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사업장 확대, 직무분석에 근거한 적정 업무량 책정 및 적정인원 배치, 서비스업 여성 근로자 직무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 평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I국내외 산업안전보건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기존 관련 법 및 제도와 정책은 성별 근로자의 차이점은 재생산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ILO 에서는 성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업장 내에서의 환경을 고려하는 성인직업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ILO 가 제시하는 구체적 10가지 가이드라인의 중심에는 여성 근로자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성별 근로자의 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연구 조사를 활성화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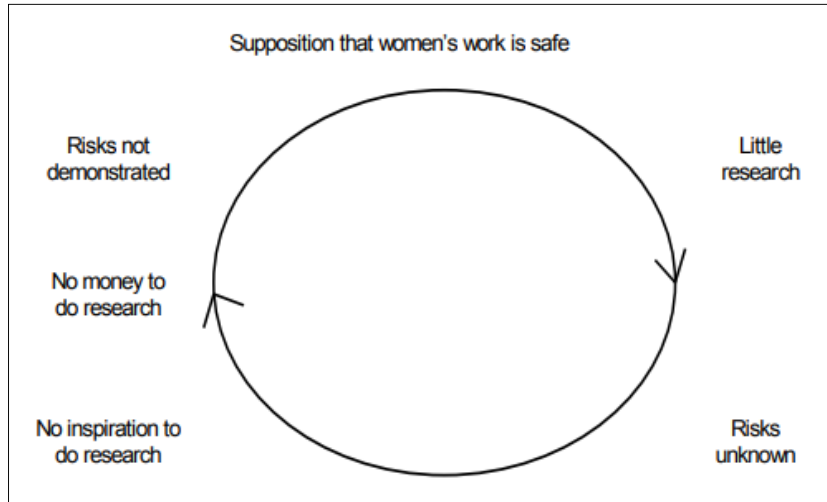
서비스직의 안전보건 현황 및 서비스직 내 다양한 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하였다. 서비스직에서 여성 고령자의 고령 인구가 많은 점과 동 직종의 성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세 이상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7.1%인 반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는 20.1%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사업장 규모가 50명 미만 분포가 87.0%로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특이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서비스직의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단순히 간과 되기 쉬우나, 오히려 여성 서비스직의 고령화라는 특이성을 고려하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재보험패널을 2차 코호트 자료 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재를 경험하고 요양이 끝났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높다는 점이다. 통증을 경험하는 '상당 기간'

이라고 응답한 성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가 '상당 기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7%로 나타난 반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직 산업재해보험 요양 종결자 대상 산재 이후 건강회복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중 아직 건강회복 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가 여성 서비스직 구성원이 남성 서비스직 근로자보다 고령화되어서가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당연하게 간주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러한 점이 여성 서비스직의 특이성으로 고려하고 산업안전보건 예방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1. 정책개선 방안

EU OSHA(2013)는 여성의 직업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가정 때문에 여성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으니 그 작업에서의 위험요인이 밝혀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수단 도입도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였다(그림 V-1).

이러한 양상은 현재 우리 사회 서비스업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에서 그대로 보인다. 그간 여성근로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학교 급식실, 환자를 돌보는 병동,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콜센터 등의 직무환경에 대하여 제대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어떠한 유해인자가 있는지 밝혀내는 작업은 미흡하였다.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한 폐암 문제처럼,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는 순서로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서비스업은 '덜 힘든 일(light work)'이라는 인식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에서도 일부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근로자들과의 인터뷰나 일부 통계 데이터는 이들의 업무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법 규정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량과 배치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출처: EU-OSHA(2013), 58p. 김영택 외(2018).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III):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23쪽 인용

[그림 V-1] 여성과 산업보건에 관한 연구의 악순환

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사업장 확대

이번 인터뷰 대상 중 콜센터 근로자가 속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학교급식 종사자도 ‘교육서비스업’에 속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여러 보호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2020년이 되어서야 학교에서 ‘청소, 시설관리, 조리업무’를 하시는 분은 ‘현업업무 종사자’로 규정되어 보호체계에 포함이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표 V-1). 또한,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도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표 V-2). 그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를 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 제외되는 사업에는 서비스업과 사무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업무를 ‘덜 위험한 일’이라 여기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업종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되고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체제 수립 및 안전보건교육 규정에서 제외된다. 서비스업,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여성근로자가 많이 취업하는 곳으로 이러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업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성인지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업종 간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복임, 2020).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업종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와서, 2020년에는 그간 보호받지 못하던 학교급식 종사자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보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여성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감정노동과 감염성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콜센터가 속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금융업이라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제외 법규정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 및 제30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임대업; 부동산 제외,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은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 제1절·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 제1절·2절, 제3장 및 제5장 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 다만, 다른 규정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 제외),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영업정지의 요청 등에 관한 규정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 연구진 재구성

〈표 V-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
1. 광업 및 유해제조업 2. 기타 제조업 3. 광업 및 제조업 이외 업종(서비스업 등):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사진 처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보건업, 골프장 운영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세탁업 4. 건설업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내용 연구진 재구성

나. 직무분석에 근거한 적정 업무량, 적정인원 배치

서비스업 여성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분석과 직무분석에 근거한 근로자 한 명당 적정 업무량, 적정 업무량에 근거한 적정인원 배치가 필요하다.

간호사, 보육교사, 학교급식 종사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방광염을 호소한다. 근무 시간 동안 제때 화장실에 갈 수 없을 만큼 바쁘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들의 업무를 ‘전쟁’, ‘나를 갈아 넣는다’라고 표현한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제조업도 아닌데, 바빠서 밥을 거르거나, 제때 화장실에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업의 업무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일상적으로 인원이 적게 배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는 적정인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간호사나 보육교사처럼 기준이 있는 직종도 잘 안 지켜지고, 그 기준도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그 업무에 대한 분석 및 한 명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등 그 외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배치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그간 여성근로자가 하는 일, 특히 서비스업 여성근로자가 하는 일을 EU-OSHA(2013)에서 지적한 것처럼 쉽고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일이라고 간주하여 인원이 너무 적게 배치되지 않았는지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정 근로자 수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직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적정 업무량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20대~60대 여성 근로자로서 어느 정도의 직무가 감당 가능한 적정 업무량인지, 해당 사업장에서 하루 요구되는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해당 사업장에 하루 필요한 인력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예산에 맞춰 인력을 뽑고, 대체 인력을 제대로 보충해주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고강도의 업무에 내몰리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 서비스업 여성에 대한 성인지적 위험성 평가 강화

본 연구에서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여성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정확한 유해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인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것이 암까지 유발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자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이유진 등, 2019), 이들 직무의 다양한 유해요인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에 대한 정확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고 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의 초석으로 평가받는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위험성 평가는 아직 사업장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 남성 위주 사업장 중심으로 지침 및 해설서가 마련되어서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적용이 미진하고, 성인지적인 요소가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구미영 등, 2020).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연구(구미영 등, 2019)에 의하면 산업 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장, 즉, 서비스업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유발요인이나 정신적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정도가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지



않고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덜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 적용을 제외시킨 업종, 즉 여러 서비스업종 근로자들의 위험 노출 정도가 절대 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그간 간과되었던 서비스업종의 직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하고, 서비스업에서는 같은 직종이라도 성별에 따라 작업 형태가 다를 것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가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
- 김수지, 이명선, 오영아. 감정노동 여성근로 자의 직종에 따른 직무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수준. 한국위기관리논집, 11(3). 2015.
- 김영택, 김동식, 김인순, 정진주. 한국의 여성건강증진정책 추진 전략을 위한 외국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a.
- 김영택, 이인선, 정진주, 유혜경.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a.
- 김영택, 김동식, 김복태, 김인순, 주영수, 신정기, 주영수, 차지영. 교원 건강 증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2016b.
- 김영택, 김인순, 차지영, 주영수. 이공계 여자대학원생 여성질환 건강검진 지원 방안 연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3b.
- 김영택, 김동식, 김인순, 배호중, 차지영, 김태희. 임신여군 근무개선을 위한 표준지침서 개발. 대한민국 국방부. 2014.
- 김영택, 선보영, 고상백. 서비스직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와 관리방안. 여성정책연구원. 2006.
- 김영택, 양애경, 구미영, 정지연, 천재영, 이경용, 김숙영(2018). 여성의 생애 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III):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택, 이선행, 김숙영.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 고용 여건 개선방안 연구: 여성 다수 직종 중심으로. 2022.
- 구미영, 김영택, 천재영, 김기선, 양승엽.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동법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 구미영, 김영택, 이경용, 전형배, 황수옥, 홍연주.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연구. 울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 이영미, 피영규.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증상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보건학회지. 제26권 제2호, 2016.
- 이현주·윤조덕·이호근·임준·주영수·류한소. 산업안전정책(산재보험)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2017.
- 이복임. 보건관리자 제도의 발전과 전망.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9(4), 219-227. 2020.
- 이유진, 이상길, 서희경, 최보화, 최지형.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
- 전진호, 강동목, 김정연, 정진주, 안명옥. 작업장에서의 임신부 보호방안. 노동부. 2002.
- 정진주, 고경심, 김지용, 조정진, 최인자, 최은희, 전미현. 여성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근로형태가 임신,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병원과 공공부문 근로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부, 2000.
- 홍윤철. 여성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관리방안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 시행일 2020년 1.16일 시행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pdf. 접속일 2022. 12.26.
- 안전보건공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종합) 산안법전면개정 교육교안 (종합본)200116.pdf 접속일 2022. 12.26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접속일 2022.12.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 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Axelsson, G, Rylander R, Molin I. 1989. Outcome of pregnancy in relation to irregular and inconvenient work schedules. Br J Ind Med.;46(6):393-8. 1989 Jun.

- Chen TY et al(2020). Impact of cooking oil fume exposure and fume extractor use on lung cancer risk in non-smoking Han Chinese women. *Sci Rep*2020 Apr 21;10(1):6774. doi: 10.1038/s41598-020-63656-7
- EUOSHA. New risks and trend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men at work: European Risk Observatory Literature review.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홈페이지: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publications/reports/new-risks-and-trends-in-the-safety-and-health-of-women-at-work>. (검색일: 2022.10.14.). 2013.
- EUOSHA. National Strategies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the EU.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홈페이지: https://osha.europa.eu/sites/default/files/National_OSH_Strategies.pdf. 검색일: 2022.10.15.). 2018.
- Eurofound. Six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Overview repor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6.
- Fenster L, Hubbard AE, Windham GC, Waller KO, Swan SH. 1997. A prospective study of work-related physical exertion and spontaneous abortion. *Epidemiology*; 8(1):66-74 1997 Jan.
- Forasteri, V, "SafeWork: International Programme on Safety Health and the Environment." ILO. (홈페이지: www.ilo.org/wcmsp5/groups/.../@safework/.../wcms_146255.pdf. 검색일: 2022.10.4.). 2010.
- Florack El, GA, Pellegrino JE, Rolland R. 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 and the occurrence of spontaneous abortion. *Int J Epidemiol*. 1993 Oct;22(5):878-84. 1993.
- H Taskinen, ML Lindbohm, K Hemminki. Spontaneous abortions among women working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43: 199-205. 1986.



- Jens Peter E Bonde, Kristian Tore Jørgensen, Matteo Bonzini, Keith T Palmer Risk of miscarriage and occupational activ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egarding shift work, working hours, lifting, standing and physical workload. *Scand J Work Environ Health*. Jul 1: 39(4): 325-334. 2013.
- ILO. "10 Keys for Gender Sensitive OSH Practice-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LO. 2013
- Lin, Pei-Chen et. al(2019) Gender differences and lung cancer risk in occupational chefs: analyzing more than 350,000 chefs in Taiwan, 1984-2011. *Int Arch Environ Health*. Jan;92(1):100-109.
- Lin, Pei-Chen et al(2021). Risk of two common glandular cell-type cancers(breast and colorectal cancers) in Chinese Occupational chefs a nationwide study in Taiwan *Int Arch Environ Health*. Aug;94(6):1363-1373.
- RL Zielhuis, A Stijkel, MM Verberk, M Van de Poel-Bot. Health risks to female workers in occupational exposure to chemical agents.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1984.
- Whelan EA, Lawson CC, Grajewski B, Hibert EN, Spiegelman D, Rich-Edwards JW. Work schedule during pregnancy and spontaneous abortion. *Epidemiology*.; 18:350-5. 2007.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Gender-sensiti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Focusing on Female Workers in Service Jobs

Young-taek Kim
Geon Pyo Park
Soukyoung Kim

In the meantime, research on gender-sensitive industrial safety policies has been limited to a few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but actual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have not been made. Occupational safety standards were created centering on th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b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tha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jobs, where women were intensively engaged,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The safety and health situation of female workers in service occupations can become serious considering the small businesses, poor employment conditions and environment that are characteristic of service

occupations, which are female-intensive industries. Accordingly, in this study, gender-sensiti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were reviewed at home and abroad, and policy improvement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cent analysi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us of female workers in service positions. the introduction of Chapter I,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was presented. Chapter III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r female service workers (personal service workers, cooking and food service workers, travel and transportation workers, etc), which are female-dominated occupations. In addition, the employment status and health problems of female service workers after industrial accidents were analyzed. Chapter IV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on female service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recent victimization in term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hapter V propos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or speaking of result. Unlike other occupations, the distribution of people over the age of 60 is high. the rate of female temporary workers in service positions was 28.2%, higher than that of female temporary workers in other occupations. The distribution of female service worker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is 87.0%, which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occupations. Diverse analysis results related to workplace risk exposure status and diseases within service positions identified differences within female service positions. policy impl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olicy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female workers and male workers in service positions. The pain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interfere with life can be influenced by age, the severity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type of accident. However, for that reas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gender-sensiti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that consider such differences rather than recognizing that there may of course be differences between gender workers.

Research areas: Health

Keywords: service workers, women, occupational safety health,
industrial accident



2022 연구보고서(수시과제)-8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2022년 12월 27일 인쇄

2022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인 : 문 유 경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02-313-7593 (代)

ISBN 979-11-6652-111-9 93330

정가 : 16,500원